

연구보고 2010-04

##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김 은 영  
문 무 경  
김 문 희  
박 수 연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 리 말

최근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러한 지원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결혼이주여성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그들의 어린 자녀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둔 경우는 별로 없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60% 이상이 영유아이고, 일부 선행연구가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에서의 부적응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이들이 곧 사회로 진출하여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생각할 때 이들을 위한 연구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정책과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정책전달자인 정부 및 단체 관계자에 대한 면담과 조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와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을 기초로 시사점을 추출하여 행정체계 측면과 지원 내용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의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면담과 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 요 약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는 물론 다양한 정부 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 정책을 내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지원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있음.
- 그 동안 다문화 관련 연구와 정책 지원대상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나,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연구와 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이 필수적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관련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외국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과 사례 고찰, 정책 전달자인 정부 및 단체 관계자에 대한 면담과 조사를 기초로 행정체계 측면과 내용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나. 연구내용

- 다문화 가정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제도 및 정책 분석
- 국외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및 사례 분석
-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 및 인식 분석
-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제안

## 다. 연구 방법

### □ 문헌 연구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 배경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법과 제도를 고찰하고 관련 부처, 기관,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함.

### □ 집단 및 개인 면담

-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의 문제와 요구 및 지원 정책에 대한 행정가와 정책 전달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5개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1회의 집단 면담과 6명을 대상으로 각각 1회의 개인 면담을 실시함.

### □ 조사연구

-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 유아 및 학생 지원 정책 전달체계인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 영유아 지원 정책 전달체계인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행정가와 다문화 가정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지도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희망유아교육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의 방향 설정, 설문조사 문항의 타당성 검토,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3차례 실시함.

## 라. 연구의 범위

- 다문화 가정의 유형은 크게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2. 연구의 배경

### 가. 다문화 가정의 개념 및 유형

- ‘다문화가족’과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정부부처의 정책이나 진행되는 연구에 따라서 혼용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가정이라는 용어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됨.

### 나. 다문화 가정 영유아 현황

#### 연령별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수

- 2010년 5월 현재 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121,935명이며, 그 중 만 6세 이하 영유아 수는 75,776명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하고 있음.

#### 부모 국적별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수

- 전체의 42.2%가 중국계(한국계중국인 포함)이며, 그 다음은 베트남 23,421명, 필리핀 7,471명, 일본 2,759명 순임.

#### 거주지역별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수

- 경기도에 17,616명(23.2%), 서울 11,044명(14.6%), 경남 6,187명(8.2%) 순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절반에 가까운 43.6%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영유아 수 대비 다문화 영유아 비율은 전북이 3.6%로 가장 높고 대구가 1.6%로 가장 낮음.

####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돌봐주는 기관과 인력

-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시설이용률은 전체적으로 57.0%이며,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중 어린이집 이용률이 57.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유치원으로 40.0%이고, 사설학원 등에 보내는 비율은 극히 미미함.

## 다. 선행연구

- 다문화 가정 영유아 및 부모 실태,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추진체계,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 내용을 정리함.

## 라. 시사점

- 행정체계 측면에서는 다른 대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필요성과 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을 제시함.
- 지원 내용 측면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활성화, 외국인 부모 대상 한국어 지도 강화, 다문화 가정 부모 대상의 다양한 자녀양육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교사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제시함.

## 3. 국내 다문화 관련 제도 및 영유아 지원 정책

### 가. 국내 다문화 가정 관련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 관련 국제협약 중 다문화 지원 관련 내용을 고찰함.

### 나.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 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의 배경으로 제 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을 살펴보고, 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봄.
- 지방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과 예산을 살펴보고,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을 부처와 대상별로 분석함.
  - 현재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크게 한국어 교육, 발달 및 학습지도, 문화체험, 유아를 교육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일부는 문화

체육관광부에서도 담당하고 있음.

- 다문화 가정 부모 대상 지원 중 영유아 양육과 교육에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원 정책은 한국어 교육, 임신 및 출산 지원, 육아지원, 부모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상담 등이 있음. 다문화 가정 부모 대상 지원은 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주로 건강 관련 영역을, 여성가족부는 육아 관련 영역을 담당하고 있음.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부모 상담과 지원 및 현장 활용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 육아지원기관 대상 지원을 크게 다문화교육인력양성, 예비교사 다문화 이해교육, 교사대상 다문화 역량 강화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육아지원기관대상 지원은 주로 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인력양성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고, 교사 연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다. 시사점

- 행정체계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 분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일부 사업이 그 대상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과 지역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여 다양한 사업을 연계할 필요를 제시함.
- 지원내용 측면에서 그동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민자 정착과 지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많은 사업이 영유아를 제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함.

### 4. 국외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및 사례

#### 가. OECD 국가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 OECD 국가의 경우 초등학교의 의무교육 이전단계인 유아단계에서의 평균 취학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의 유아교육 취학률은 본국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스웨덴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 유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스웨덴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아를 위하여 유아원 및 유치원(pre-school)에서 스웨덴어뿐만 아니라 모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아일랜드는 보편적인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더불어 교육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예를 들어 취약지역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DEIS(Delivering Equality of Opportunity in Schools, 학교교육 형평성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지역에 있는 만 3세에서 18세까지의 영유아 및 학생을 위해 이들 지역의 학교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노르웨이에서는 보편적인 유아교육 기회 확충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취원율이 낮은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도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정부는 다문화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만 4, 5세 유아를 위한 추가적인 무료 유치원 교육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a pilot project of free core time in day-care centres)을 추진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2000년부터 중앙정부에서 만 2.5세까지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 및 보육(VVE)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음. 또한 2011년까지 취약계층의 유아교육 취원율을 10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진행 상황을 각 지방정부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독일 베를린 주의 경우에는 2005년 도입한 '교육을 통한 통합 달성(Integration through Education)' 정책에 따라 소수 인종의 이민자가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등교육으로의 진학률을 높이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베를린 주에서는 교육지표 중 유아교육과 관련된 지표를 설정하여 소수 인종 출신 이민자 가정의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 및 보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나.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 내용별 사례

### 유아 언어교육 지원

- 덴마크의 경우에는 영유아가 만 3세가 되면 언어발달 진단을 받게 되며, 다문화 가정 배경을 지닌 영유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언어교육 지원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만 3세부터 추가적인 언어교육을 받게 됨.

- 노르웨이에서는 만 4세가 되면 노르웨이어(SPRAK 4)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유아의 모국어에 대해서도 언어발달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됨. SPRAK 4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유아의 경우에는 Language promotion(Sprakloftet)을 통해 추가적인 언어발달 지원을 받게 됨.
- 독일의 Hesse주에서는 지난 2002년 언어 습득 능력 진단 평가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시작하기 1년 전에 독일어 수준에 대한 테스트를 받도록 하며, 테스트 결과 유아가 초등학교에 필요한 독일어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 이들을 무료 유치원 교육(Vorlaufkurse)에 등록하여 초등학교 시작에 필요한 독일어를 습득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추도록 함.
-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Early Language Support(Frühe Sprachförderung)'를 통해 다문화 가정 유아의 본국 언어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 캐나다에서는 유치원 단계에서의 확실한 언어 기반을 다지기 위해 조기 언어 발달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어 유창성이 뒤처지는 다문화 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5~8시간의 추가적인 언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이민자 부모 / 부모-유아 연계 지원 프로그램

- 이민자 배경의 유아를 가진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 교육과 관련된 조언을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HIPPY(The Home Instruction for Parents of Preschool Youngsters)가 있음. HIPPY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이외에도 여러 호주, 칠레, 독일,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터키,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음. 동 프로그램은 2주마다 같은 배경을 지닌 가정교사(tutor)가 이민자 가정을 방문하여 구조화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에게 자녀의 학습 지원을 위한 방법을 지도해 주는 것임.
- 네덜란드의 경우, 'Opstapj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초등학교 교육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 2세에서 4세까지의 유아를 키우고 있는 이민자 부모를 가정 방문을 통해 부모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Samenspel이라는 센터 형태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 유아 및 어머니에게 추가적인 교육지원을 하고 있음.
- 노르웨이의 경우 'the Family Learning Project(가족 학습 프로젝트)'를 통해 소수 언어 사용자를 위한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동 프로젝트에 사용된 부모 지원 연계 유아교육 지원프로그램은 1) 개방 유치원(open

kindergarten) 프로그램, 2) 유치원 교육을 받지 않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참여하여 유아의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3)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4) 도서관, 유치원, 그리고 학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문화 가정 유아에게 다양한 언어로 된 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이민배경을 가진 학생을 위해 '출발점 균등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the Migrant Education Even Start, MEES)'을 통해 주 전체에서 가정 및 학교에서 제공되는 가족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동 교육 프로그램은 이민자 가족에게 부모를 위한 문해력 증대 교육, 부모교육서비스 및 외국인을 위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0세에서 7세까지의 이민자 배경을 가진 유아가 반드시 부모와 함께 참여해야 함.

□ 이민자 학부모 등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

- 네덜란드의 경우 이민자 배경을 지닌 유아교육 및 보육 담당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이민자 부모 중에서 '지역 이민 교육 코디네이터 (Regional Migrant Education Coordinators)'를 뽑아 다문화 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에 고용하여 학교와 다문화 가정, 지역사회간의 파트너십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덴마크의 경우 교육부에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이민자 배경을 지닌 성인 중에서 이중언어 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 덴마크,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몇몇 유럽 국가는 유아교육 및 보육 기회의 보장과 부모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하고 있음.
- 불가리아의 경우에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직장에서의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과 함께 유아를 자녀로 둔 이민자 부모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다. 시사점

- 영유아를 위한 특별 지원과 기타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 가정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지원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지원대상(target group)별 지원프로그램(tailored programmes)을 명확하게 하는 것,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정책 지원은 가정 및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함.

## 5.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 및 인식

### 가.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인 한국어교육, 취·창업교육은 모든 센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특성화 사업 중에서는 방문교육사업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그 다음으로 통번역서비스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예산은 방문교육사업이 평균 167,64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이 평균 23,231천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음. 한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 중 모든 센터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교육은 예산이 평균 14,401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사업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 일반 학생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 및 활용 등의 순으로 많이 하고 있음.
-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활용하는 사업이 평균 156,007천원으로 가장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활용

확대 사업과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사업이 각각 평균 63,750천원과 평균 45,000천원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남.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한국어교육 사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된 방문교육사업, 문화이해교육, 가족통합교육, 상담서비스,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역량 개발, 다국어판 생활·정책정보 가이드북 발간, 보육시설 다문화 프로그램 실시 지원 순으로 많이 하고 있음.
- 예산을 보면, 방문교육사업이 평균 200,568천원으로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다문화 프로그램 실시지원이 평균 198,296천원으로 두 번째로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임.

서비스전달인력

- 지도시는 양육 및 부모자녀 관계 상담, 부모 대상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의 안전교육, 자녀 학습 및 유치원 생활지도 등의 순으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음.
- 희망유아교육시는 자녀 학습 및 유치원 생활지도, 한국 생활문화 정보 제공 및 지도, 다문화가족의 안전교육, 양육 및 부모자녀 관계 상담 등의 순으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음.

## 나.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대한 인식

행정체계에 대한 인식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문화 사업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인력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70% 이상이었으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80% 이상이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함.
- 다른 부처 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0% 이상이고,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100%에 가깝게 나타남. 그러나 실제

연계협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행정기관, 학교와의 연계 협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문화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 협력은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내 타 기관과 중복사업 추진경험은 5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구 단일화시 바람직한 창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응답이 8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지원내용에 대한 인식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업은 한국어교육서비스, 방문교육사업, 취·창업 지원 순이었음.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과가 낮다고 인식하는 사업은 취·창업 지원, 가족교육, 멘토링 및 자원봉사단 사업 순으로 나타남.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업은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순이었음. 한편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효과가 낮다고 인식하는 사업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일반 학생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순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업은 한국어교육, 방문교육사,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문화이해교육 순이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효과가 낮다고 인식하는 사업은 가족통합교육, 문화이해교육,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상담 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영유아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영아의 경우에는 신체발달과 정서발달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에 비해, 유아의 경우에는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모두 높게 나타남. 부모 대상 서비스는 한국어교육, 육아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정서 지원, 부부 및 가족관계 상담 순으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 정책지원 및 개선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적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으로는 '자녀 양육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이해교육', '경제적 지원', '언어발달지원', '보육시

설 부족'등의 순이었음. '자녀 양육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의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영유아 생활전반에 걸친 부모교육, 각 국 언어로 번역된 서적·육아 정보 제공,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 '다문화이해교육'의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다문화 전문가의 연수 필요, 의무적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다문화 관련 사업비 우선 책정, 국가적 차원의 홍보, 보육시설 및 유치원 교사 교육이나 연수 필요, '경제적 지원'의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보육비·양육비 확대 지원, 대상 자격 확대, 생활 여건에 따른 차등지원, 다문화 사업비 내 자녀교육비 예산 확보 등을 제시함.

-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지적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으로는 '체계적 지원 및 관리'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산 부족',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다문화이해교육', '경제적 지원' 등의 순이었음. '체계적 지원 및 관리'의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단일화된 사업 추진기관, 대상자 요구에 따른 개별 맞춤형 지원,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기관 간 협력으로 사업 조정 및 집중화, 구체적 정책을 쉽게 투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예산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예산 증액, 단일화된 추진기관 설립으로 중복 사업 제거, 지역 실태에 맞는 지원,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업무 담당자 연수 및 우수사례 홍보, 자원봉사자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의 개선점으로는 기관 간 연계 강화로 프로그램 공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 편성,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적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이해교육', '체계적 지원 및 관리', '자녀 양육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 '예산 부족' 등의 순이었음.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우수 프로그램 공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결, 다문화 아동 전담 교육시설 운영, 지도사 확보, '다문화이해교육'의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실시, 범국민적인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교사교육 시 다문화이해교육 필수 이수, 보육시설 교사 및 담당자 연수 확대, '체계적 지원 및 관리'의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전달체계의 일원화로 사업의 극대화, 지원체계의 단일화, 업무의 표준화, 지속적인 지원, 개별방문지도 등을 제시함.

## 다. 시사점

- 행정체계 측면에서는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만 여전히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쌍방적인 의사소통, 다문화 지원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와 협력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들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정책 실행에 적합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부모교육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 다문화 가정에게 무조건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함을 제시함.
- 지원 내용 측면에서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 대상으로는 보육·교육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어머니와의 유대감 및 정체성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 부모 대상 한국어교육 및 가족관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다문화 영유아 및 일반 영유아와 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사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

## 6.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 가. 기본 방향

-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지원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다문화 가정과 함께 더불어 가는 지원이 되어야 함.
-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지원하되, 다문화 가정 영유아만 별도로 지원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복지지원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기초하여 중복지원을 줄이고 대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함.
- 정부주도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지역사회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함.

## 나. 세부 추진 방안

### 행정체계의 효율화 방안

- 지원 창구의 일원화 및 포털사이트 구축
- 지역협의체 구성 및 역할 분담
- 지원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
- 지원 인력 및 재정 확보
- 다른 지원 체제와의 연계 및 협력을 제안함.

### 지원내용의 효율화 방안

- 영유아 발달을 위한 포괄적 지원
  -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직접 지원
  - 다문화 가정 학부모에 대한 지원
  - 유치원·보육시설 교원 및 일반인에 대한 지원
- 학교 간 및 지역 간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모범 사례 공유
-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정책 우선순위의 결정
-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부여

# 차 례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	2
3. 연구 방법 .....	3
4. 연구의 범위 .....	10
<b>II. 연구의 배경</b> .....	<b>12</b>
1. 다문화 가정의 개념 및 유형 .....	12
2. 다문화 가정 영유아 현황 .....	15
3. 선행연구 .....	19
4. 시사점 .....	31
<b>III. 국내 다문화 관련 제도 및 영유아 지원 정책</b> .....	<b>33</b>
1. 국내 다문화 가정 관련법 .....	33
2.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	37
3. 시사점 .....	73
<b>IV. 국외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및 사례</b> .....	<b>75</b>
1. OECD 국가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	76
2.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 내용별 사례 .....	86
3. 시사점 .....	93
<b>V.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 및 인식</b> .....	<b>95</b>
1.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 .....	95
2.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대한 인식 .....	111
3. 시사점 .....	166

<b>VI.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b> .....	<b>169</b>
1. 기본 방향 .....	169
2. 세부 추진 방안 .....	170
<b>참고문헌</b> .....	<b>188</b>
<b>부록</b> .....	<b>195</b>
〈부록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용 설문지 .....	197
〈부록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용 설문지 .....	206
〈부록 3〉 지방자치단체용 설문지 .....	214
〈부록 4〉 방문지도사용 설문지 .....	222
〈부록 5〉 희망유아교육사용 질문지 .....	226
〈부록 6〉 시도교육청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및 예산 .....	230
〈부록 7〉 시도청과 시군구청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및 예산 .....	236
〈부록 8〉 연계와 협력 방식 및 다문화 지원사업 담당 기관 .....	248

## 표 차례

〈표 I-3- 1〉 면담 대상자 .....	4
〈표 I-3- 2〉 면담 질문 목록 .....	5
〈표 I-3- 3〉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 응답자 배경 .....	7
〈표 I-3- 4〉 다문화 가정 지원 실무담당 응답자 배경 .....	7
〈표 I-3- 5〉 행정가용 설문지 내용 .....	8
〈표 I-3- 6〉 실무자용 설문지 내용 .....	9
〈표 II-1- 1〉 다문화가족지원법 중 다문화가족 정의 부분 .....	12
〈표 II-1- 2〉 다문화 가정의 유형 .....	14
〈표 II-2- 1〉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2010년) .....	16
〈표 II-2- 2〉 다문화 가정의 국적별 자녀수(2010년) .....	16
〈표 II-2- 3〉 다문화 가정의 지역별 영유아 자녀수 및 비율(2010년) .....	17
〈표 II-2- 4〉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돌봐주는 시설 또는 기관 .....	18
〈표 II-2- 5〉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 .....	19
〈표 III-1- 1〉 다문화가족지원법 중 아동 보육·교육 관련 내용 .....	34
〈표 III-1- 2〉 영유아보육법 중 다문화 가정 영유아 관련 내용 .....	35
〈표 III-1-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중 결혼이민자 및 자녀 관련 내용 .....	36
〈표 III-1- 4〉 UN아동권리협약 중 다문화 가정 아동 관련 내용 .....	36
〈표 III-2- 1〉 제1차 외국인 기본계획 .....	38
〈표 III-2- 2〉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사업 내용 .....	39
〈표 III-2- 3〉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지원사업 내용 .....	40
〈표 III-2- 4〉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 내용 .....	41
〈표 III-2- 5〉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사업내용 .....	43
〈표 III-2- 6〉 ‘임신·출산 지원’ 지원사업 내용 .....	46
〈표 III-2- 7〉 ‘부모의 자녀양육능력 배양’ 지원사업 내용 .....	46
〈표 III-2- 8〉 ‘영유아 보육·교육 강화’ 지원사업 내용 .....	47
〈표 III-2- 9〉 ‘부모·자녀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 .....	48
〈표 III-2-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및 기타사업 .....	49
〈표 III-2-11〉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 추진과제 .....	52

〈표 III-2-12〉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 소요예산('08~'12) .....	52
〈표 III-2-13〉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세부사업내용 .....	54
〈표 III-2-14〉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세부사업내용 .....	55
〈표 III-2-15〉 '다문화 가정 학부모 지원' 세부사업내용 .....	55
〈표 III-2-16〉 '다문화 가정 유아교육지원' 세부사업내용 .....	57
〈표 III-2-17〉 '다문화 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지원' 세부사업내용 .....	58
〈표 III-2-18〉 '다문화교육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 세부사업내용 .....	58
〈표 III-2-19〉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 다문화 가정지원사업과 예산 .....	61
〈표 III-2-20〉 시도교육청의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	62
〈표 III-2-21〉 시도청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63
〈표 III-3- 1〉 유사한 사업 내용에 따른 소관 부처 .....	65
〈표 III-3- 2〉 다문화 가정 영유아 대상 지원 .....	67
〈표 III-3- 3〉 다문화 가정 부모 대상 지원 .....	68
〈표 III-3- 4〉 육아지원기관 대상 지원 .....	71
〈표 IV-2- 1〉 노르웨이 유치원 취원율(전체 유아 대비 다문화 배경 유아 비교) 82	
〈표 IV-2- 2〉 트레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유아의 교육 기회 비교 .....	83
〈표 V-1- 1〉 인력 현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95
〈표 V-1- 2〉 사업시행 현황 및 예산(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96
〈표 V-1- 3〉 지역별 사업시행 현황(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96
〈표 V-1- 4〉 지역별 사업시행 예산(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97
〈표 V-1- 5〉 다문화 주무과 인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97
〈표 V-1- 6〉 다문화 지원과 인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98
〈표 V-1- 7〉 지원사업시행 현황 및 예산(2010):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98
〈표 V-1- 8〉 지역별 지원사업: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99
〈표 V-1- 9〉 지역별 지원사업 예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100
〈표 V-1-10〉 다문화 주무과 인원: 지방자치단체 .....	101
〈표 V-1-11〉 다문화 지원과 인원: 지방자치단체 .....	102
〈표 V-1-13〉 지원사업시행 현황 및 예산(2010): 지방자치단체 .....	102
〈표 V-1-14〉 지역별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	103
〈표 V-1-15〉 지역별 지원사업 예산: 지방자치단체 .....	103
〈표 V-1-16〉 지도사의 소지자격 및 배경(복수응답) .....	104

〈표 V-1-17〉	지도사의 담당 가정 수 .....	104
〈표 V-1-18〉	지도사의 담당 영유아수 .....	105
〈표 V-1-19〉	방문교육지도사의 주당 1가정 방문 횟수 .....	105
〈표 V-1-20〉	방문교육지도사의 1회당 지도 시간 .....	106
〈표 V-1-21〉	언어지도사의 주당 지도 횟수 .....	106
〈표 V-1-22〉	언어지도사의 1회당 수업 시간 .....	106
〈표 V-1-23〉	지도사의 보수교육 경험 .....	107
〈표 V-1-24〉	지도사의 연간 보수교육 횟수 .....	107
〈표 V-1-25〉	희망유아교육사의 담당 가정 수 .....	108
〈표 V-1-26〉	희망유아교육사의 담당 영유아 수 .....	108
〈표 V-1-27〉	희망유아교육사의 주당 수업 횟수 .....	109
〈표 V-1-28〉	희망유아교육사의 1회당 수업 시간 .....	109
〈표 V-1-29〉	희망유아교육사의 연수 경험 .....	110
〈표 V-1-30〉	희망유아교육사의 연수 횟수 .....	110
〈표 V-1-31〉	지도사 및 희망유아교육사의 제공 서비스 .....	111
〈표 V-2- 1〉	인력규모의 적절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12
〈표 V-2- 2〉	적절한 인력규모에 대한 인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12
〈표 V-2- 3〉	인력의 경력 및 자격 적절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13
〈표 V-2- 4〉	다문화 담당 인력의 충분성: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114
〈표 V-2- 5〉	다문화 담당 인력의 충분성: 지방자치단체 .....	114
〈표 V-2- 6〉	다른 부처/기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서비스 인지 정도 .....	115
〈표 V-2- 7〉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의 필요 정도 .....	115
〈표 V-2- 8〉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 구성 여부 .....	116
〈표 V-2- 9〉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연계·협력 정도 .....	117
〈표 V-2-10〉	지역 내 타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연계·협력 방식 .....	118
〈표 V-2-11〉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 도움 정도 .....	119
〈표 V-2-12〉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 연계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20
〈표 V-2-13〉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 연계 내용: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121
〈표 V-2-14〉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 연계 내용: 지방자치단체 .....	122
〈표 V-2-15〉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	124
〈표 V-2-16〉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 .....	124

〈표 V-2-17〉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 네트워크의 역할 .....	125
〈표 V-2-18〉	지역 내 타 기관과 중복사업 추진경험 유무 .....	127
〈표 V-2-19〉	지역 내 타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기준(복수응답) .....	128
〈표 V-2-20〉	다문화 지원 서비스 창구 단일화시 바람직한 창구(복수응답) .....	128
〈표 V-2-21〉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담당해야 할 기관(복수응답) .....	130
〈표 V-2-22〉	역점 사업 및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복수응답) .....	131
〈표 V-2-23〉	효과적인 사업 및 효과가 낮은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복수응답) .....	132
〈표 V-2-24〉	효과가 낮은 사업의 이유 및 개선방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33
〈표 V-2-25〉	역점 사업 및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복수응답) .....	135
〈표 V-2-26〉	효과적인 사업 및 효과가 낮은 사업: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복수응답) .....	137
〈표 V-2-27〉	효과가 낮은 사업의 이유 및 개선방안: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138
〈표 V-2-28〉	역점 사업 및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지방자치단체(복수응답) .....	139
〈표 V-2-29〉	효과적인 사업과 효과가 낮은 사업: 지방자치단체(복수응답) .....	140
〈표 V-2-30〉	효과가 낮은 사업의 이유 및 개선점: 지방자치단체 .....	141
〈표 V-2-31〉	지원대상이 요구하는 서비스(복수응답) .....	142
〈표 V-2-32〉	필요한 영아 대상 서비스(복수응답) .....	142
〈표 V-2-33〉	필요한 유아 대상 서비스(복수응답) .....	143
〈표 V-2-34〉	필요한 부모 대상 서비스(복수응답) .....	145
〈표 V-2-35〉	필요한 보육시설·유치원 대상 서비스(복수응답) .....	147
〈표 V-2-36〉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추진 중 어려운 점과 개선방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49
〈표 V-2-37〉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추진 중 어려운 점과 개선방안: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150
〈표 V-2-38〉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추진 중 어려운 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	152
〈표 V-2-39〉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	158
〈표 V-2-40〉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가정과 경험한 갈등 .....	160

〈표 V-2-41〉 다문화 가정과 갈등 시 지원과 상담 .....	160
〈표 V-2-42〉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61
〈표 V-2-43〉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163
〈표 V-2-44〉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 지방자치단체 .....	164
〈표 V-2-45〉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 지도사 .....	165
〈표 V-2-46〉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 희망유아교육사 .....	165

## 그림 차례

[그림 III-2-1]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목표 및 방향 .....	44
[그림 III-2-2]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과제 .....	45
[그림 III-2-3]	'10년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	53
[그림 III-2-4]	다문화교육 지원체제도 .....	59
[그림 IV-2-1]	네덜란드의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요 .....	84
[그림 VI-2-1]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의 효율화 방안 .....	170
[그림 VI-2-2]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지원내용의 효율화 방안 .....	177

## 부록 표 차례

〈부표 Ⅲ-2-1〉 시도교육청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및 예산 .....	230
〈부표 Ⅲ-2-2〉 시도청과 시군구청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및 예산 .....	236
〈부표 V-2-1〉 지역 내 타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연계·협력 방식 .....	248
〈부표 V-2-2〉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담당해야 할 기관 .....	250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개방화,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와 학계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가 75,776명으로 전체의 62.1%로 60%를 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0).

일부 선행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발달수준이 뒤처지며, 학교에서 높은 중도탈락률, 부적응, 낮은 성적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서현·이승은, 2007; 오성배, 2007; 이재분·김혜원·오성배, 2009; 전해정, 2008; 조영달, 2006). 7만명이 넘는 다문화 가정의 취학 전 자녀는 곧 학교에 진학을 할 것이고, 이어 사회로 진출을 하게 될 것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연구와 정책 지원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다문화 관련 연구와 정책 지원대상은 주로 국제결혼가정, 특히 이주여성 가정 등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며, 다문화 가정에서의 자녀를 부분적으로 다루기는 하였으나, 다문화 가정의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이들이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용 대비 가장 큰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는 물론 다양한 정부 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 정책을 내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지원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이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문화 정책 지원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방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정부 지원 기관, 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인노동자상담소 등의 민간기구 및 단체 등이 다문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중

양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등을 통해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협력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선 그동안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관련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부족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며, 외국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과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더불어 정책 전달자인 정부 및 단체 관계자에 대한 면담과 조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와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행정체계 측면과 지원내용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 가. 다문화 가정 관련 선행연구 분석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그동안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방향과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다문화 가정 영유아 실태와 지원, 다문화 가정 부모 실태와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추진체계를 고찰하였다. 선행 연구결과 분석을 통해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에서의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 나.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제도 및 정책 분석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전반적인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의 배경을 알아보았다. 더불어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중 영유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 다. 국외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및 사례 분석

국외 선진국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및 사례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지원 정책에서 적용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라.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 및 인식 분석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의 실태와 인식을 정부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다문화 가정 지원 실무자 대상의 면담과 설문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며, 가장 시급한 지원 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의 지원 정책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다문화 가정 영유아 정책 지원의 효율성을 검토해 보고 앞으로 정책 지원의 방향 및 세부적인 방안 제안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 마.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제안

다문화 가정 관련 선행연구 분석, 국내외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제도, 정책, 사례 분석,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의 문제점과 요구 분석,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재정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기초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3. 연구 방법

## 가. 문헌연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 배경과 동향, 다문화 가정의 유형 및 지원 요구, 다문화 가정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법과 제도를 고찰하고 관련 부처, 기관,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외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인터넷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 나. 집단 및 개인 면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의 문제와 요구 및 지원 정책에 대한 행정가와 정책 전달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5개 집단별로 1회의 집단 면담과 6명을 대상으로 1회의 개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집단면담은 같은 행정라인에 있는 관계자를 통해 각 행정라인별 문제점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개별면담은 2가지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민간단체의 특성과 사업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를 통해 그 지역의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실태와 함께 지역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 1) 면담 대상

집단면담은 여성가족부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행정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가, 희망교육사, 방문지도사의 5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한 그룹당 3명에서 7명까지 집단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총 26명이 참여하였다.

개인면담은 한국다문화센터, 외대다문화연구센터, 어울림 등의 민간단체와 부산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6명이 참여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표 1-3-1>과 같다.

<표 1-3-1> 면담 대상자

집단면담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전달 체계 행정가
	2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 가정 지원 전달 체계 행정가
	3	보건복지부 다문화 가정 지원 전달 체계 행정가
	4	지도사
	5	희망유아교육사
개인면담	1	한국다문화센터
	2	외대다문화연구센터
	3	어울림
	4	부산시 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부산시교육청
	6	부산시 다문화교육센터

## 2) 면담 질문

면담 질문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진이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2인의 검토를 받아 확정하였다. 면담 질문 목록은 <표 I-3-2>와 같다.

<표 I-3-2> 면담 질문 목록

행정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지방)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지원하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li> <li>2. 다른 부처 혹은 단체의 지원 정책을 알고 계십니까? -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은 없는지요? -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3. 다문화 가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특히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li>4. 지원 정책 집행 시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li> <li>5.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유아에 대한 직접 지원 - 어머니 혹은 가족을 통한 지원</li> <li>6.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경로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ol>
교육사 및 지도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사(지도사)로서의 어려움이 있는지요? 있다면 무엇입니까?</li> <li>2. 교육사(지도사)로서 활동하면서 어떤 면에서의 지원이 가장 절실했는지요?</li> <li>3. 영유아 자녀는 주로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요?</li> <li>4.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머니가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li>5. 다문화 가정에서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이 있습니까? 혹은 받았던 지원이 있습니까? -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li>6. 어떤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느끼는지요?</li> <li>7. 정부에서 영유아 양육과 교육 관련하여 어떤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아에 대한 직접 지원 - 어머니 혹은 가족을 통한 지원책은 어떤 경로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ol>

### 3) 면담절차

집단면담에서 행정가의 경우 우선 지역을 다양하게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의 행정가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참여 허락을 받고 공문을 발송하였다. 희망유아교육사는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섭외하였고, 지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섭외하였다. 집단면담은 2010년 5월 31일~6월 15일에 각 대상별로 5차례 실시하였다. 그룹당 90분에서 120분 정도 토의가 이루어졌다.

개인면담에서 민간단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목록을 정리하였고, 그 중 몇 군데에 전화하여 허락을 받은 곳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민간단체 중 부산지역에 위치한 기관을 방문하여 면담하였으며, 지역의 네트워크를 알아보기 위하여 같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다문화교육센터를 함께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다. 개인면담은 2010년 6월 21일~25일에 이루어졌으며, 60분에서 80분 정도 면담을 하였다. 집단면담과 개인면담의 모든 내용은 녹음하고 전사하였다.

### 4) 면담자료 분석

공동연구자들이 전사한 내용을 읽으면서 1차로 모든 토론 내용의 핵심어를 뽑아 정리하였으며, 2차로 이러한 핵심어를 중심으로 비슷한 내용을 묶어 범주화하였다. 3차로 핵심어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인용문을 선별하였다. 4차로 설문분석 결과와 관련이 있는 곳에 연결하여 내용을 제시하였다.

## 다. 조사연구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설문조사 대상

본 설문조사의 대상은 정부 부처, 정부 지원 기관의 정책 실무 담당자이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 유아 및 학생 지원 정책 전달체계인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 영유아 지원 정책 전달체계인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행정가와 다문화 가정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지도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희망유아교육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경우 전수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 171부, 199부, 249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지도사는 171개 센터의 방문지도사와 언어지도사 각 1명씩 3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희망유아교육사는 시도교육청에 의뢰하여 다문화 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교육사 명단 172명을 확보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38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158부, 지방자치단체 139부, 지도사 282부, 희망유아교육사 92부로 총 809부였으며, 발송한 설문지 대비 71.4%이다. 설문분석의 대상자 배경은 <표 I-3-3>, <표 I-3-4>와 같다.

<표 I-3-3>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 응답자 배경

단위: %(명)

	배경변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지역 규모	도시지역	26.8(37)	32.2(49)	40.9(56)
	도농복합지역	39.1(54)	21.7(33)	29.2(40)
	농어촌지역	34.1(47)	46.1(70)	29.9(41)
설립연도	2004~2006년	12.4(17)	-	-
	2007~2008년	38.7(53)	-	-
	2009~2010년	48.9(67)	-	-
등록인원	200명 미만	27.1(35)	-	-
	200~400명 미만	33.3(43)	-	-
	400명 이상	39.5(51)	-	-
1일 이용 인원	30명 미만	30.0(39)	-	-
	30~60명 미만	44.6(58)	-	-
	60명 이상	25.4(33)	-	-

<표 I-3-4> 다문화 가정 지원 실무담당 응답자 배경

단위: %(명)

	배경변인	지도사	배경변인	희망유아교육사
지역 규모	도시지역	35.3( 98)	도시지역	53.5(46)
	도농복합지역	27.7( 77)	도농복합지역	18.6(16)
	농어촌지역	37.1(103)	농어촌지역	27.9(24)

	배경변인	지도사	배경변인	희망유아교육사
경력	1년 미만	32.2( 88)	6개월 미만	17.6(16)
	1~2년 미만	26.0( 71)	6~12개월 미만	41.8(38)
	2~3년 미만	33.7( 92)	12~18개월 미만	20.9(19)
	3년 이상	8.1( 22)	18개월 이상	19.8(18)
연령	35세 미만	16.9( 46)	34세 이하	23.5(20)
	35~40세 미만	18.0( 49)	35~39세	30.6(26)
	40~45세 미만	25.0( 68)	40세 이상	45.9(39)
	45~50세 미만	25.7( 70)	-	-
	50세 이상	14.3( 39)	-	-
역할	한국어교육지도사	43.9(118)	-	-
	아동양육지도사	33.1( 89)	-	-
	언어지도사	22.7( 61)	-	-
	한국어+아동양육	0.4( 1)	-	-

## 2) 설문조사 도구

설문지는 선행 연구(김승권 외, 2010; 김춘화, 2009; 김태훈, 2008; 문무경·조혜주, 2008; 서혜정·구현아·이현주, 2009; 심인선, 2008; 정귀자, 2008; 양영주, 2010; 유정임, 2009; 이재분·강순원·김혜원·이해영·서유미, 2008; 조영달·박윤경·이정우·이경수·성경희·이소연·이은영, 2008)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연구진이 구성하였다. 구성된 질문지는 전문가 2인, 관련 행정가 6인과 방문지도사 2인, 희망유아교육사 2인 총 12인에게 서면 자문을 받아 수정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표 I-3-5>, <표 I-3-6>과 같으며, 설문지 내용은 <부록 1> ~ <부록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I-3-5> 행정가용 설문지 내용

구분	문항내용
일반 배경	· 지역
	· 설립연도(센터) / 다문화 담당과 및 인력(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 등록 인원 수, 1일 평균 이용 인원(센터)
사업 예산	· 2008-2010년 사업 총 예산
	· 2008-2010년 운영비
	· 2008-2010년 사업별 예산
인력	· 인력의 구성 및 직위
	· 인력의 소지자격

구분	문항내용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 여부</li> <li>· 사업의 필요도</li> <li>· 사업의 효과</li> <li>· 부모,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대상 필요한 서비스</li> </ul>
지원 기관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부처 및 기관 사업 인지도</li> <li>· 네트워크 필요도</li> <li>· 네트워크 구성 여부, 도움 정도, 연계 및 협력 현황</li> </ul>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분담 기준</li> <li>· 서비스 단일화 창구</li> </ul>
정책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 및 누락을 피하기 위한 방안</li> <li>· 정책적 지원 방안</li> <li>· 정부 정책의 개선점</li> </ul>

〈표 1-3-6〉 실무자용 설문지 내용

구분	문항내용
일반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li> <li>· 경력, 연수 및 보수 교육 경험 시간</li> <li>· 담당 가정 및 영유아 수, 수업 횟수 및 시간</li> <li>· 소지자격</li> </ul>
지도 대상 유아 및 가정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 연령</li> <li>· 외국인 부모 국적, 한국어 수준, 연령</li> <li>·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li> <li>· 어머니 취업 여부</li> </ul>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대상이 요구하는 서비스, 역점 서비스</li> <li>·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li> <li>· 어려운 점</li> <li>· 부모와 영유아 대상 필요한 서비스</li> </ul>
지원 기관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부처 및 기관 사업 인지도</li> <li>· 네트워크 필요도</li> <li>· 네트워크 구성 여부, 도움 정도, 연계 및 협력 현황</li> </ul>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분담 기준</li> <li>· 서비스 단일화 창구</li> </ul>
정책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 및 누락을 피하기 위한 방안</li> <li>· 정책적 지원 방안</li> <li>· 정부 정책의 개선점</li> </ul>

### 3) 설문조사 연구절차

최종 수정된 질문지는 8월 20일~30일에 관련 부처의 협조공문과 본 연구의 취지, 설문대상, 회신일자 및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함께 동봉하여 설문조사 대상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희망유아교육사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얻어 명단을 확보하고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내고 이메일로 회수하였다.

### 4) 설문조사 자료분석

수거된 설문지는 SPSS 12.0(Window용)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집단 간 비교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본배경과 주요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설문지 문항 분석을 위해 빈도를 산출하고,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 라.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는 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자문회의는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하였고, 2차 자문회의는 설문조사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3차 자문회의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4. 연구의 범위

다문화 가정의 유형은 크게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서혁, 2007).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이유는 국제결혼 가정의 영유아는 대부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로 영유아 지원에 초점을 맞추되 영유아의 특성 상 영유아의 양육의 주체인 부모에 대한 지원과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및 그 기관의 교사를 일정 부분 함께 다루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정책 분석

에 있어서는 영유아 지원에 초점을 맞추되 좀 더 포괄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하였다.

더불어 '효율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의 지원 정책을 정리하는 작업과 함께 각 지원사업의 역점 사업과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효과가 있는 사업과 낮은 사업 등을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행정체계 측면과 내용 측면에서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II. 연구의 배경

### 1. 다문화 가정의 개념 및 유형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광의의 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하는 한편, 협의의 개념은 단순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 한명이 국적을 취득해 구성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모선희·이인화·이선행·김성운, 2008).

‘다문화가족’과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정부부처의 정책이나 진행되는 연구에 따라서 혼용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족’과 ‘가정’의 개념이 사회적 단위로써 같은 개념으로 쓰이지만 사전적 의미로 가정[家庭]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또는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활 공동체를 의미한다. 반면에, 가족[家族]은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의미한다. 즉 ‘가정’은 가족의 생활공동체로써 환경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가족’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속한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가족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할 때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나 어머니만을 언급할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이라고 표현은 불가능하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라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이재분·김혜원·변종임·채재은, 2009).

또 다른 의미에서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가족원 가운데 법적인 의미의 한국인이 포함된 좁은 의미의 다문화가족, 국제결혼 가족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최소한 한사람의 가족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한정한다.

#### 〈표 II-1-1〉 다문화가족지원법 중 다문화가족 정의 부분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여 '다문화 가정'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의 '다문화가족'의 의미가 실제 학교 현장과는 맞지 않아, 보다 넓은 의미의 다문화 가정 개념이 필요해 다문화 가정 학생교육지원 정책대상에 근거해, 국제결혼 가정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개념은 법률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니다. 그동안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아메라시안(Amerasian)'이라 부른 것과 1960~1970년대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라이다이한(Lai Daihan)'이라 부르는 것에서 시작하여, 1990년 이후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우리나라 사람 간의 결혼을 통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인(Korean)과 아시아인(Asian)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합성어인 '코시안(Kosian)' 또는 '혼혈아'라고 부르며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코시안 가족, 혼혈인 가족 등으로 지칭하여 왔다. 그러나 '혼혈아'라는 단어는 '우리와 혈통이 다른'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한국인과 아시아인의 합성어인 '코시안'이라는 말도 애초에 만들어진 의도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에서 다룸으로써 또 다른 차별의 의미를 담게 되었다(이명자, 2009).

이후 2004년 4월, 3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를 추방하고 대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 2세'로 부르자고 제안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 가정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용어의 사용이 제안되자,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의 홈페이지의 뉴스레터,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부산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홈페이지 등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운동화, 2009). 따라서 다문화 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6).

이와 같은 개념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유형을 범주화하면 <표 II-1-2>와 같다.

〈표 II-1-2〉 다문화 가정의 유형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li> <li>·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li> <li>·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자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 이주한 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자 출신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li> <li>·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에 입국 후 한국의 여성 또는 남성과 결합하여 이룬 가정</li> </ul>

자료: 서혁(2007).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재구성.

## 가. 국제결혼 가정

국제결혼 가정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사회 전체의 고학력화 추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로 인한 결혼 연령 상승의 만혼화(晩婚化) 현상 속에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빈약한 남성, 특히 농어촌 지역 남성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운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최선화, 2009). 거기에 더하여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결혼을 택하는 외국인 여성의 수가 늘어나면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와 달리 최근에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유학이나 해외파견 등의 이유로 중상류층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유형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나. 외국인 근로자 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은 1987년 이후 국내 노동인력의 임금상승과 3D업종 기피로 인하여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을 동반하여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한 경우를 말한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외국인 근로자인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과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자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 이주한 가정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 다. 새터민 가정

새터민이란 휴전 이후 다양한 동기에서 북한 체제와 사회를 떠나 남한 사회에 정

착하고, 공식적으로 남한 주민등록을 취득한 북한지역출신 주민을 칭하는 용어이다. 새터민 가정의 첫 번째 유형은 탈북자출신의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다. 1994년 이후 북한 체제가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고 북한주민의 주거지 이동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증하였다. 현재 입국자의 47.0%가 가족단위로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탈북자 출신이다. 최근에는 조선족과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와 함께 입국한 후 북한 이탈주민으로 신고하고 남한에 정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황범주, 2008). 두 번째 유형은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의 여성 또는 남성과 결합하여 이룬 가정이다. 세 번째 유형은 탈북자 출신으로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다.

## 2. 다문화 가정 영유아 현황

연령별, 부모 국적별, 거주지역별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현황과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돌봐주는 기관과 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연령별 다문화 가정 영유아 수

<표 II-2-1>에 제시된 행정안전부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 5월 현재 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121,935명이다. 그 중 만 6세 이하 영유아 수는 75,776명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0-2세 영아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나. 부모 국적별 다문화 가정 영유아 수

다문화 가정의 국적별 자녀수를 살펴보면 전체의 42.2%가 중국(한국계중국인 포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베트남 23,421명, 필리핀 7,471명, 일본 2,759명 순이며,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이 속한 동남아시아는 34,604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2-1〉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2010년)

단위 : 명(%)

구분	전체	결혼이민자의 자녀			한국인부모)
		소계	외국인-한국인 부모	외국인부모	
자녀수	121,935	105,502	98,531	6,971	16,433
(비율)	(100.0)	(86.5)	(80.8)	(5.7)	(13.5)
소계	75,776	73,572	69,390	4,182	2,204
0세	15,248	15,001	14,209	792	247
1세	15,377	15,096	14,367	729	281
2세	14,448	14,120	13,321	799	328
3세	9,871	9,572	9,048	524	299
4세	7,912	7,613	7,153	460	299
5세	7,026	6,667	6,180	487	359
6세	5,894	5,503	5,112	391	391

자료: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 결과.

〈표 II-2-2〉 다문화 가정의 국적별 자녀수(2010년)

단위 : 명

구분	전체	결혼이민자의 자녀			한국인부모
		소계	외국인-한국인 부모	외국인부모	
합계	75,776	73,572	69,390	4,182	2,204
중국	16,505	15,893	14,810	1,083	612
중국 (한국계중국)	15,472	14,945	12,623	2,322	527
대만	398	384	352	32	14
일본	2,759	2,736	2,672	64	23
몽골	1,312	1,278	1,245	33	34
베트남	23,421	22,907	22,663	244	514
필리핀	7,471	7,229	7,118	111	242
태국	1,046	1,016	992	24	30
인도네시아	329	321	317	4	8
캄보디아	2,135	2,085	2,063	22	50
미얀마	64	62	61	1	2
말레이시아	33	33	33	0	0
홍콩	38	36	34	2	2
남부아시아	843	801	721	80	42

- 1) 여기서 한국인 부모의 자녀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재혼 등의 이유로 다문화 가정이 되었을 경우 다문화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자녀를 말함.

구분	전체	결혼이민자의 자녀			한국인부모
		소계	외국인-한국인 부모	외국인부모	
중앙아시아	1,662	1,627	1,588	39	35
미국	522	492	476	16	30
러시아	450	438	417	21	12
기타	1,316	1,289	1,205	84	27

자료: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 결과.

### 다. 거주 지역별 다문화 가정 영유아 수

다문화 가정의 거주 지역별 영유아 자녀수를 살펴보면, 경기도에 17,616명(23.2%), 서울 11,044명(14.6%), 경남 6,187명(8.2%) 순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절반에 가까운 43.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체 영유아 수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전북이 3.6%로 가장 높고 대구가 1.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3〉 다문화 가정의 지역별 영유아 자녀수 및 비율(2010년)

단위 : 명, %

구분	전체 영유아 수	다문화 가정 영유아 수	다문화 가정 영유아 비율
합계	3,179,865	75,776	2.4
서울	618,761	11,044	1.8
부산	186,467	3,511	1.9
대구	152,272	2,484	1.6
인천	179,986	4,378	2.4
광주	108,251	1,806	1.7
대전	109,059	1,800	1.7
울산	78,077	1,793	2.3
경기	880,665	17,616	2.0
강원	93,098	2,510	2.7
충북	99,168	3,045	3.1
충남	133,881	4,648	3.5
전북	109,316	3,898	3.6
전남	108,912	4,951	4.5
경북	158,936	5,244	3.3
경남	217,226	6,187	2.8
제주	42,895	861	2.0

참고: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 결과.

통계청(2007). 장래 추계 인구.

## 라.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돌봐주는 기관 및 인력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시설이용률은 전체적으로 57.0%이다.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중 어린이집 이용률이 57.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유치원으로 40.0%였고, 사설학원 등에 보내는 비율은 극히 미미했다. 지역별로 기관이용률은 광주지역이 62.7%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52.0%로 가장 낮았다. 유치원 이용률은 전남이 47.2%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30.0%로 가장 낮았다. 어린이집 이용률은 제주가 68.6%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50.8%로 가장 낮았다.

〈표 II-2-4〉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돌봐주는 시설 또는 기관

단위 : %(명)

구분	시설 이용률		보내는 시설 또는 기관*				계(수)
	(분석대상)	이용률	유치원	어린이집	사설학원	기타	
전국	(50,167)	57.0	40.0	57.4	1.2	1.4	100.0(28,281)
서울	( 7,731)	60.5	39.0	57.2	1.7	2.2	100.0( 4,631)
부산	( 2,395)	55.0	42.4	55.2	1.3	1.1	100.0( 1,309)
대구	( 1,838)	57.9	37.9	60.1	1.0	0.9	100.0( 1,055)
인천	( 2,953)	52.0	38.7	59.1	1.0	1.2	100.0( 1,528)
광주	( 1,220)	62.7	39.4	58.1	0.7	1.8	100.0( 762)
대전	( 1,258)	56.8	42.1	56.3	0.7	1.0	100.0( 711)
울산	( 1,167)	48.2	39.6	57.1	0.7	2.5	100.0( 555)
경기	(10,736)	55.6	41.8	54.8	1.5	1.9	100.0( 5,910)
강원	( 1,782)	53.3	42.6	55.9	1.1	0.4	100.0( 933)
충북	( 1,859)	55.8	41.5	57.5	0.6	0.4	100.0( 1,022)
충남	( 3,453)	60.8	34.1	64.2	1.0	0.8	100.0( 2,076)
전북	( 2,529)	60.8	42.9	55.4	0.9	0.8	100.0( 1,517)
전남	( 2,950)	60.7	47.2	50.8	1.1	0.8	100.0( 1,774)
경북	( 3,522)	55.8	35.2	63.1	0.8	0.9	100.0( 1,938)
경남	( 4,128)	54.1	38.9	58.6	1.0	1.5	100.0( 2,207)
제주	( 646)	55.1	30.0	68.6	0.6	0.8	100.0( 353)

출처: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99.

주: \*는 시설에 보내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다문화 가정 영유아가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돌보는 사람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82.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기타 가족이 10.8%였으며, 돌보는 사람 없이 자녀 혼자 지내는 경우도 4.1%나 되었다. 지역별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돌본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87.5%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74.9%였다. 한편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6.6%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충남으로 2.1%였다.

〈표 II-2-5〉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

단위 : %(명)

구분	돌보는 사람 없음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가족	과출부 · 도우미	이웃 · 친구	기타	계(수)
전국	4.1	82.3	10.8	0.6	0.4	1.7	100.0(18,577)
서울	3.2	79.3	13.0	1.3	0.5	2.5	100.0( 2,598)
부산	2.9	85.1	10.9	0.2	0.1	0.8	100.0( 945)
대구	4.0	81.8	12.4	0.3	0.4	1.0	100.0( 675)
인천	4.3	79.5	12.4	0.5	0.3	2.9	100.0( 1,270)
광주	5.6	79.7	10.6	0.8	0.3	3.0	100.0( 395)
대전	2.9	85.7	8.6	0.2	1.0	1.6	100.0( 489)
울산	4.6	84.6	9.1	0.6	0.0	1.2	100.0( 519)
경기	5.0	80.3	11.7	0.8	0.4	1.8	100.0( 4,079)
강원	4.2	83.0	10.6	0.8	0.3	1.0	100.0( 706)
충북	5.7	80.1	12.5	0.7	0.0	0.9	100.0( 680)
충남	2.1	87.5	7.8	0.1	0.5	2.1	100.0( 1,200)
전북	4.2	86.9	7.7	0.1	0.2	0.8	100.0( 854)
전남	4.6	86.6	6.7	0.1	0.3	1.7	100.0( 987)
경북	4.7	83.2	10.1	0.5	0.5	1.1	100.0( 1,306)
경남	3.6	84.0	10.3	0.5	0.4	1.2	100.0( 1,647)
제주	6.6	74.9	15.0	0.9	0.0	2.6	100.0( 227)

출처: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09.

주: \*는 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 3. 선행연구

최근 몇 년간 다문화 가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나, 다문화 가정 영유아와 관련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본 절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 중 다문화 가정 영유아와 관련된 연구를 다문화 가정 영유아 및 부모 실태,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행정추진체계, 다문화 가정 영유아 및 부모지원 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가. 다문화 가정 영유아 및 부모 실태

다문화 가정 지원 서비스 내용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발달 및 적응, 부모의 양육태도 및 실태 등에 관한 내용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 1) 다문화 가정 영유아 실태

#### 가) 영유아 발달 수준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발달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전해정 등(2008)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영유아는 일반 영유아에 비해 언어발달은 늦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재분 등(2009)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 이들의 핵심역량 수준이 언어능력과 사회정서능력이 일반가정의 유아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구수연(2007)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사회적 발달은 일반가정 아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박경자와 김송이(2007)의 연구에서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3, 4, 5세 다문화 가정 유아의 경우 남아는 교실 내에서 위축된 경향을 보였으나, 나머지 유아는 전반적으로 사회·정서적 적응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안정애착 비율(53.8%)이 서울 중·상류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비율(79.3%)보다는 낮았으나, 동일지역 내 일반 가정 유아(60.5%)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 교사 대상 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교사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와 일반가정 영유아 간의 발달상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문무경·조혜주, 2008), 다문화 가정 유아의 발달이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 생활 영역의 발달 수준은 모두 중간 점수 이상을 보여 일반 가정 유아와 비교적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현경·서현·김동례, 2009).

#### 나)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변인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과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몇몇 연구가 수행되었다. 김현경·이상은·조윤아(2009)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유아의 자아

개념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다문화 가정 유아의 자아개념은 유아의 성별과 월평균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성별 여하에 따른 개인적 수용과 관심, 성취에 대한 인정 혹은 실패에 대한 격려 등의 교육적 배려가 뒤따라야 하고, 다문화 가정의 내외적인 환경 맥락과 연계되어서 개별적 관심과 이해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현경 등(2009)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유아의 발달수준이 모든 영역에 있어 유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남아보다는 여아가, 선행 교육경험이 많은 유아일수록 발달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연령이 많을수록, 어머니 국적이 베트남보다는 일본이나 중국인 유아, 그리고 어머니 학력이 2년제 대졸 이상인 유아가 다른 영유아 보다 모든 발달 영역에 있어 발달 수준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 다) 영유아의 또래관계와 적응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도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구수연(2007)의 연구에서는 놀이나 또래 관계에 있어 다문화 가정배경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다문화 가정 아동은 학교에서 또래관계에 문제를 경험하고(보건복지부, 2005), 유아교육 기관에서 혼자놀이를 하거나 교실을 배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김병순, 2007; 김희태·권영덕, 2007; 박미경, 2006).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또래관계와 관련된 변인을 파악한 김현경, 이상은, 조윤아(2009)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 출생순위, 부학력, 모학력, 모취업, 월평균 소득 등에 따라 다문화 가정 유아의 또래관계에 있어 차이를 보여, 유아의 발달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유아의 자아개념과 또래관계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둘 간의 관계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가정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고취가 무엇보다도 다문화 가정의 유아기에 가정과 시설에서 고취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한다.

한편,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적응에 관한 연구도 일부 수행되었는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육아지원기관에서 사회적 적응양상을 살펴본 윤갑정과 고은경(2006)의 연구를 보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적응양상은 문화적 배경이나 국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계 호주 유아의 경우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는 반면, 인도네시아와 페루계 유아는 또래 집단의 인정을 받기 위해 또래가 좋아하는 것에 자신을 맞추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적 관계 형성 양상은 문화적 배경이나 국적에 의한 차이점 보다는 개인적인 성격이나 변인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가정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육아

지원기관 적응에 미치는지 영향을 알아본 김희태와 권영덕(2007)의 연구에서는 처음에는 한국어로 의사표현도 서투르며 일반아동과의 관계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면서 또래집단에 의해 더 잘 수용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유아기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이 중요하며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적응과 관련하여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가 있다. 서현과 이승은(2007)의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의 유아가 부모의 양육태도, 자신의 외모로 인한 정체성 혼란, 가정 내 언어자극 부족으로 인한 언어문제, 발달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표출을 회피하며, 가난한 나라에서 온 어머니와 불쌍한 아이라는 주변의 편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오재연과 송미선(2009) 연구에서도 외국인 어머니를 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행동의 개인적 기술행동, 환경적응행동,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이중 국적으로 인한 생활양식의 차이, 문화경험의 차이, 이중언어 사용 등의 상대적 어려움에서 오는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국인 어머니를 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가정에서의 외국인 부모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위해 한국어수준과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사는 외국인 어머니를 둔 가정의 이중 국적으로 인한 생활양식의 차이, 문화경험의 차이, 이중언어 사용 등의 상대적 어려움을 인식하여 외국인 어머니를 둔 가정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2) 다문화 가정 부모 실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태도를 살펴본 연구(김영옥·임진숙·정상녀, 2008; 정기선 외, 2007)를 보면, 이들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머니의 개인변인 중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 시 어머니 자신의 모국어 보다는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 양육태도가 더 자율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문혁준 외, 2009). 임진숙(200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학력, 연령, 직업, 국적, 결혼만족도, 의사소통수단 등)에 따라 양육태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 양육태도와 자녀의 언어능력,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앞서 살펴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태

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녀와 의사소통 시 한국어를 사용하는 어머니가 모국어를 사용하는 어머니보다 양육태도가 좀 더 자율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최나야·우현경, 2009)도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적응 상에 문제가 아닌, 상대적인 성격, 즉 다른 가정, 다른 어머니, 다른 한국 아이와의 비교에서 나오는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 불안감 등이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자녀 양육의 주된 책임을 맡는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의 복지 뿐 아니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가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과 교육과 관련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와 사회적 지지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과 공적기금 활용한 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양육 관련 변인을 살펴본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김현경(2009)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격차 인식은 연령, 국적, 체류기간, 월평균수입, 부부동거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문화적응에 있어서 문화적응 하위요인인 '통합'에서는 학력 변인에 따라, '동화'에서는 국적과 월평균수입, '분리'에서는 국적과 체류기간, 부부동거여부, '주변화'에서는 국적과 월평균수입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양육효능감은 연령, 국적, 월평균수입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연령, 문화적응의 '통합'수준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출신국의 문화정체성만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리'수준은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한국 사회 통합과 문화적응을 돕는 것이 유아교육기관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지지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실태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이진숙, 2007). 이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어머니가 다문화 가정 영아의 주양육자이며, 대체적으로 만 3세 이후에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육아정보는 주로 남편과 가족으로부터 얻으며,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녀의 한국어교육 지도는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거나 부부가 함께 하며,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으나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일상적인 양육보다는 주로 교육이나 놀이 활동에 참여하며, 학력이 낮을수록 농업이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양육참여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만 3세미만 영아가 가정에서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가정 내 양육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제결혼 가정 부모의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느끼는 학습지도의 어려움을 도와 줄 수 있는 지원체계와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위해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주여성은 가족과 양육방식의 차이가 있을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녀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르칠 것인지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가지게 할 것인지를 두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으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은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주여성과 자녀의 상호작용방식은 직접적 지도(학습지도, 놀이 등)보다 신체접촉을 통한 애정표현이 더 많았으며, 대화보다는 표정이나 몸짓으로 자녀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부모역할은 ‘자녀가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자녀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르칠 것인지,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가지게 할 것인지를 두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다(송미경 등, 2008). 이삼식 등(2008)에 의하면, 유아기 다문화 가정 자녀는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출신 어머니와 생활하는 관계로 언어발달 지체를 보이거나 문화부적응이 나타나거나 취업을 우선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많은 까닭에, 어머니됨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며, 그 결과 자녀교육 등에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양육방법에 차이가 존재, 일종의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경 외, 2008; 이재분 외, 2009; 전해정 외, 2008).

## 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추진체계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추진체계의 효율성 및 추진주체 간 협력 관련 내용, 서비스 제공자로서 추진체계의 하위에서 직접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지도하는 교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 1) 추진체계의 효율성 및 추진주체 간 협력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다문화 정책 전문가(사회학 및 행정학), 실무자(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문화 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문화 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성 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3.3%가 효율성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여 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구자들은 컨트롤 타워 설립방안으로 ‘이민 및 사회통합청’ 신설,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문화 정책의 효율성 확보와 사업의 중복성 방지를 위해 부처 간 논의 기구 활성화, 외국인 정책 실무위원회 실질화, 지방자치단체-대학-민간단체 협력체계 또는 외국인주민센터 설치와 같은 민관협력네트워크 활성화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한승준 외, 2009).

이 연구(한승준 외, 2009)에서 제시된 추진주체 간 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간의 협력 수준은 41.7%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25.0%는 협력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과 낮다는 의견이 각각 25.0%로 나타났으며, 중앙부처간 협력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부처와 민간단체 간 협력의 수준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다문화 정책은 그 특성상 광범위한 부처와 연관되어 있으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이들 주체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 수준에서 다양한 인종이 통합된 사회를 향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이주민과 소수집단의 고유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민간부문은 다문화 사업의 집행, 협력, 정부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불법체류외국인 지원, 국가 주도의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주변화되고 불이익을 받는 이주민 집단에 대한 지원,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에 전달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에서 중복 수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민간 부문이 주

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정부와 민간 단체의 관계는 상호호혜적인 수평 관계가 될 필요가 있고 민간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배치나 공간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한승준 외, 2009).

## 2) 서비스 제공자(영유아 교사)의 인식 및 지도

교사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인식과 지도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명희·홍순옥(2009)은 다문화교육에 관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인식 및 실태의 차이를 교사의 배경변인(학력, 경력, 소속기관 유형)에 따라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첫째,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지정도는 낮은 반면,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문화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다문화 교육자료 부족과 다문화 관련 교사 연수, 워크숍 부족이었다. 둘째, 다문화교육의 실태에 있어 유아교육기관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교육 경험은 부족하였으며 경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교육 경험이 많았다.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교사가 다문화 가정 유아를 지도할 기회가 더 많았다.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다문화 가정 유아가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비율이 높아 다문화교육이 다문화 가정 유아에게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성애 등(2006)은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비교하였는데, 유치원 교사(56%)보다 초등학교 교사(83%)가 다문화교육 경험이 더 많으며,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교육 내용의 중요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유치원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보다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개방성과 융통성',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등을,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감소'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교육 실시 시기에 있어서 유치원은 지도서와 연결하여 연중 실시하고 '다양한 민족, 인종, 직업에 관한 책' 이 제공되는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교과목 관련 시간(예, 사회교과)에만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책' 이나 '다양한 민족이나 인종, 직업을 나타내는 소품' 등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보다 다문화교육 활동을 현장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치원 교사는 '원장 및 동료 교사의 지지체계 부족'을, 초등학교 교사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윤갑정·고은경(2006)등은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지도방식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유치원교사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립

심 함양에 초점을 둔 반면, 보육교사는 보다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아동을 돌보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경숙, 안은영, 이영성(2008)은 다문화 가정 유아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의 관점을 통해 유치원에서 다문화 가정 유아에 보이는 행동특성과 이들을 위한 교수활동에 대해 탐색하였다. 교사들은 일반 유아를 가르칠 때 적용하는 교육원리를 적용, 다문화 가정 유아의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간주되는 의사소통, 또래 상호작용, 문제행동, 자존감 증진 등에 개별 교수의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교사는 시간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각 유아의 개별지도의 어려움과 유아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한 가정과 유치원 연계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다문화 가정 유아는 다른 유아와 동등하게 대하고 그들의 부모와 밀접한 상호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다문화 가정 유아의 발달 및 학습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 개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기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 유아와 일반유아 모두에게 다문화 교육을 제공, 유아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부모의 문화 모두를 배우고 이해하여 유아 속에 두 가지 다른 문화가 통합되어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유아교사가 다문화사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태도와 자질을 습득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예비유아교사교육과 현직유아교사연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정대현(2009)은 유아교사의 인적 변인과 다문화교육 신념이 교수 실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교사의 학력, 다문화교육경험, 다문화 가정유아와의 생활 경험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신념 변인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문화교육에서 다문화 가정 유아와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유사한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 가정 유아의 일상생활에 대한 맥락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심층적인 파악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한석실(2007)은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이행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문화 교육을 수행해야 할 유아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사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다문화교육에 있어 교사역할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한다. 둘째, 예비교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편견을 명확히 깨닫도록 한다. 셋째 예비교사 교육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처하며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넷째, 다문

화교육이 전체 교사교육과정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교육을 위해 교사 스스로 교수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한다. 여섯째, 다문화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끝으로, 교사의 일상적인 행동과 태도가 다문화교육 내용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 다.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을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정리하였다.

### 1)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내용

#### 가) 영유아 지원 방안 및 정책

다문화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영유아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 정책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연구 모두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취학 전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분 등(2009)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유치원 아동일 경우 핵심역량 수준이 언어능력과 사회정서능력이 일반가정의 유치원 아동보다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차이 분석 결과, 다문화가족의 유치원 아동 중 농·산·어촌보다 중소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의 거주하는 아동이 언어 능력과 사회정서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다문화가족 핵심 역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화 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 개개인을 위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학습자 상황과 요구에 맞게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민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이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업성취 면에서 이민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뒤처지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특히 한국어교육에 있어 유아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이선 등(2009)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 대상에 따른 세부적 접근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과 같이 자녀교육에 있어 결정적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각종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사각지대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초지자체, 학교, 병설유치원 등을 통해 관련 기관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다국어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발달 초기단계에서부터 방문서비스 등 각종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삼식 등(2008)은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교육 및 보육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인구자질은 물론 사회통합성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가와 사회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보육과 유아교육, 학교교육 등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즉, 다문화가족 자녀세대의 보육과 교육 및 양육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에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학교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방과 후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나)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 관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정희(2006)는 다문화 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대구·경북 지역 결혼이민자의 한글구사 능력과 자녀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교사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교육 지도방법에 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기초학습능력을 증진하고 정체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과 일반 유아 및 초등학생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분석·보완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현장적용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범 대상 보육시설과 유·초등 교사, 대학 및 관계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적용사례 소개를 비롯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조정서 등(2007)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으로 유아교사를 위한 교수자료와 다문화에 대한 일반가정 학부모의 이해 증진 및 수용적인 태도 함양을 위하여 부모용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활동은 일반가정, 다문화 가정 유아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가정 유아의 다문화 가정 이해 증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개발되었다. 또한 자료집의 모든 내용을 CD-ROM 으로 만들어 교사가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송은(2008)은 어머니 나라와 한국문화를 비교·학습하는 문학 활동을 통해 다문화 가정 유아가 어머니 나라 문화나 특정인종, 국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문학 활동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 2) 다문화 가정 부모 지원 내용

### 가) 자녀양육 지원

선행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자녀양육 지원에 관한 제안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가 원하는 자녀양육 지원의 내용은 자녀와의 대화 및 과제지도로 나누어진다(김유경 외, 2008; 설동훈 외, 2005; 이순형, 문무경, 최연실, 2006). 이순형 등(2006)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과 교육 지원 정책으로 산모도우미 파견, 출신국 언어로 된 자녀양육 매뉴얼 제공,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설, 농촌형 보육 프로그램 개발, 자녀공부방, 학습도우미 파견 등을 제안하였다. 김유경 등(2008)은 다문화가족 부모에게는 다국어로 된 보육·양육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지원기관에서는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재분 등(2008)은 학생의 측면에서 제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 지원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가 자녀교육 지원과 함께 핵심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이선 등(2009)은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역량과 관련된 기존의 정책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과제를 예측, 발견하고 과제 해결을 위해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대응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관련 역량을 증진하고 자신감을 획득하며 나아가 문제의 구조적 요인에 대안까지 모색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학교 관련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사와 더욱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학부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부모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자녀교육 과정에 한국인 배우자, 즉, 아버지의 참여를 확보하여 아버지 자녀교육 참여 모델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장기간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유경 등(2008)은 다문화가족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다문화 가정의 보육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나) 결혼이민자 한국어 지도

대다수의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들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언어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영달 등(2006)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직이나 고소득층 가정은

자녀교육문제에 어려움이 없지만 농촌지역, 특히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는 우리말 능력이 낮은 수준이며 심각한 학습 부진과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재분 등(2009)이 실시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도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이 우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조영달 등(2009)도 취학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조영달 등(2009)은 아동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초등학교 입학 이전 시기에 그 기초가 형성되는데, 자녀 언어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머니가 외국인일 경우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는 언어발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유경 등(2008)도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특히 부모와 함께하는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단계별로 한국어 학습교재를 개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개인변인 중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 시 어머니 자신의 모국어 보다는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 양육태도가 더 자율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문혁준 외, 2009).

## 4.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 본 다문화 가정 영유아 현황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와 지원 내용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행정체계 측면에서의 시사점

첫째, 향후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서는 다른 대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 중 영유아는 60%가 넘고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므로, 이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문화 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문화 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성 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3.3%가 효율성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나. 지원내용 측면에서의 시사점

첫째,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는 자신의 외모로 인한 정체성 혼란, 가정 내 언어자극 부족으로 인한 언어문제,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가난한 나라에서 온 어머니와 불쌍한 아이라는 주변의 편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어머니를 둔 가정 유아 부모의 이중 국적으로 인한 생활양식의 차이, 문화경험의 차이, 이중언어 사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도 보고된다. 따라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발달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며 잘 적응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가 요구된다.

둘째, 외국인 부모 대상 한국어 지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어머니가 외국인일 경우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는 언어발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 시 어머니 자신의 모국어 보다는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셋째, 다문화 가정 부모 대상의 다양한 자녀양육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들은 다국어로 된 자녀양육 매뉴얼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자녀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농촌형 보육 프로그램 개발, 자녀공부방, 학습도우미 파견, 자조모임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다문화 가정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직접 보육·교육하는 교사에 대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 스스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깨고, 유아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유아 속에 두 가지 다른 문화가 통합되어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교사 스스로 다문화 교육을 위한 보육·교육 자료 개발 능력을 함양하도록 교사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 Ⅲ. 국내 다문화 관련 제도 및 영유아 지원 정책

#### 1. 국내 다문화 가정 관련법

본 절에서는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 가정 아동의 교육과 보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보육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처우를 명시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 가정의 아동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협약인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3월 제정되어 2009년 9월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법의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주요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사회적응·직업·가족교육 등 교육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6조). 또한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가족생활교육 실시 및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8조), 산전·산후 건강관리(제9조),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제10조)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가 지원(제11조)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제12조).

총 1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다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제시하여 아동이 평등하게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학교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지원과 언어발달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표 III-1-1〉 다문화가족지원법 중 아동 보육·교육 관련 내용

**제10조(아동 보육·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관한 사항은 제26조, 제28조에 제시되어 있다. 동법 제26조 1항은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에 대해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의 우선권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8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표 III-1-2〉 영유아보육법 중 다문화 가정 영유아 관련 내용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0.9, 2010.1.18>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2)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제1항 제5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 1.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4.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로 2007년 5월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12조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조기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국익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기본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 III-1-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중 결혼이민자 및 자녀 관련 내용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상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라. 다문화가족 관련 국제협약**

다문화가족 관련 국제협약으로 「UN아동권리협약」이 있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를 명시한 국제협약으로 유엔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선언과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했음을 인정한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하였으며, 그에 따라 「UN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4〉 UN아동권리협약 중 다문화 가정 아동 관련 내용

**제2조**

- ① 협약의 당사국(이후 '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 ②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 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아동이나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이나 출국 신청을 했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청이 신청자와 그 가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 ② 부모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협약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과 그 부모가 본국을 비롯한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이 권리의 제한은 협약이 인정하는 다른 권리와 부합되는 범위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때에만 가능하다.

**제29조**

- ①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다. 자신의 부모와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적인 문명에 대한 존중
- ② 이 조 제1항에 대한 준수와 교육기관의 교육이 국가가 설정한 최소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 하에,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떤 조항도 개인 및 단체의 교육기관 설립·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30조**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 아동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과 함께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

## 2.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본 절에서는 정부의 다문화 지원 정책을 제 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 부처별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지방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 중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을 부처와 대상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가. 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 1) 제 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 가) 추진 배경

체류외국인의 출신국가·민족·취업분야·체류기간 등이 다양해지면서 정책 대응이 복잡한 문제와 2002년 이후 급증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본격적으로 취학연

령에 도달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자녀의 교육 문제 등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정책문제에 대한 대응 및 외국인정책의 국가 전략적 활용을 위해 2008년 12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 4월 「2010년 시행계획안」을 최종 마련하였다. 이 정책은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 나) 기본방향과 비전 및 목표

외국인 정책 위원회는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을 기본 방향으로 「제1회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국가'를 외국인 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옹호'를 4대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13대 중점과제를 확정하였다.

〈표 III-2-1〉 제1차 외국인 기본계획

정책 목표	중점 과제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li> <li>·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li> <li>·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li> </ul>
질 높은 사회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li> <li>·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li> <li>·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li> <li>·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조성</li> </ul>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li> <li>·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관리 및 외국인 정보 관리</li> <li>·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li> </ul>
외국인 인권 옹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보호</li> <li>·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보장</li> <li>· 선진적 난민 안정 지원 시스템 구축</li> </ul>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2010).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0년 중앙부처시행계획.

#### 다) 2010 중앙부처 시행계획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0 중앙부처 시행계획」 중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이 포함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적극적인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수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충분한 능력발휘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의사소통, 민원처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외국인을 위한 교통·주거 환경 및 복지·의료 환경을 개선하며, 외국인을 위한 교육환경과 문화·여가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있다. 그 중, 자녀가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은 문화·여가 환경 개선 부분에서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에게 문화향유 기회와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여행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밀집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설립함으로써 문화관련 정보 취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표 III-2-2〉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사업 내용

사업 내용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사회의 한국어 교육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li> <li>- 국내 한국어 전문교원 양성 및 파견</li> <li>-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방문학습자료 개발</li> <li>- 한국어 학습 매체별 콘텐츠 개발</li> <li>- 주한 외국인 참여형 한국어 학습활동 발굴</li> </ul> </li> </ul>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시설의 다양성 부족 등 완화: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연                              &lt;새로운 문화의 바람, 아시아를 만나다&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각국의 음악과 춤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주민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장 마련</li> <li>- 국립국악원 연주단이 직접 찾아가는 공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시설의 다양성 부족 등 완화: 다문화 가정 밀집지역 다문화자료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내공간, 열람공간, 모임공간, 서가 등을 포함한 통합공간으로 조성 및 도서, PC 등 적정 소요 물자 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관련 정보 취득 어려움 해소: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개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정보서비스의 중심인 도서관에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 등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전용자료실 설치</li> <li>- 다양한 생활정보와 문화관련 정보 제공 기회 확대</li> <li>- 언어권별 아동서(외국도서) 구입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독서 진흥 콘텐츠 개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외국인의 여가환경 개선 : 취약계층 복지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가족 등의 국내여행 경비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외국인의 여가환경 개선: 다문화 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어울림 교실, 생활체육 어울림 캠프 운영 등 생활체육활동 지원</li> </ul> </li> </ul>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2010).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0년 중앙부처시행계획.

## (2) 질 높은 사회 통합: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질 높은 사회통합을 목표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이 공존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통해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이민자를 실질적인 사회주체로 인정하는 시민의식의 함양과 일반 국민과 이민자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사회관계의 형성을 통해 상호 간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이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 및 소통을 강화하는 지원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유치원교육과정에서 다문화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 이해 관련 교재 등을 발간하는 지원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일반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원만히 생활을 하는데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I-2-3〉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지원사업 내용

사업 내용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 유치원 다문화교육 실시</li> <li>- 개발된 유아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유아대상 다문화교육 실시</li> <li>- 유치원 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관련주제에 맞추어 다문화 이해 교육 포함하여 추진</li> </ul>	교육과학 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초·중등 교사 등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li> <li>- 교원 자격연수에 ‘다문화이해’ 과정을 포함하도록 ‘교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다문화 이해’ 과목을 신설</li> <li>- 초등교원 양성대학 등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li> </ul>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초·중등 교사 등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li> <li>- 유·초·중등학교 교사대상 다문화 이해 연수 프로그램실시</li> <li>- 결혼이주여성 등을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 교육·문화현장 파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문화이해 제고를 위한 외국문화체험 전시회</li> <li>-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 전시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문화교육·다문화 전시</li> <li>-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b>다문화자녀</b> 등 대상, 다문화이해를 위한 생활 문화 전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자료 등 기획·운영</li> </ul>	보건복지 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li> <li>- ‘다문화축제’를 ‘지역 다문화프로그램’으로 개선, 축제 외에 생활문화, 전시·공연, 콘텐츠 생산 등 프로그램 유형 다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어판 정보매거진 발간·배포: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제공 등</li> <li>- 언어소통 문제로 각종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민자를 위한 다국어 정보 제공</li> </ul>	

사업 내용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용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생활·정책 정보 매거진 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교육 강사 확충 : 다문화강사양성과정 확대</li> <li>- 다문화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실시가 가능한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광고·방송프로그램 등 추진: 공익광고·다문화인식제고</li> <li>-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존중 및 다문화가족 또한 우리 이웃이라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공익광고·방송프로그램 또는 다문화 인식제고 행사 등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광고·방송프로그램 등 추진: 다문화포용 분위기 확산을 위한 행사</li> <li>- 방송·언론매체 등과 협력하여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li> </ul>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광고·방송프로그램 등 추진: 내국인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li> <li>- 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인식 개선과 다문화 의식 증진을 위한 다문화 공익광고 및 캠페인 등 추진</li> </ul>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li> <li>-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li> </ul>	법무부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2010).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0년 중앙부처시행계획.

주: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됨.

(3) 질 높은 사회 통합: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국제결혼의 증가로 국내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가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한국에서의 생활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생활과 가족·사회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부족은 각종 차별·인권침해에 대한 방어능력 부족과 자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므로 입국 초기부터 체계적·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I-2-4〉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 내용

사업 내용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생활정보 등 제공: 지자체 홈페이지 다국어 지원</li> <li>-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외국인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다국어 지원 기능 제공 추진</li> </ul>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방문교육서비스</li> <li>-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방송교육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실시</li> </ul>	보건복지가족부*

사업 내용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한국문화 이해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적인 통·번역 핫라인 시스템 구축: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li> <li>-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li> <li>- 통·번역 전담 인력 채용·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활성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li> <li>- 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등 다문화가족 전체 대상 상담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활성화: 정신건강검진·상담서비스 활성화</li> <li>- 결혼이민자에 대한 무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li> <li>-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정신건강검진·정신건강 전화상담 및 대면 상담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 아동양육지원서비스 확대</li> <li>-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 출산을 앞둔 결혼 이민자에게 산전 준비 및 산후아동 양육에 필요한 출산 후 서비스 제공</li> <li>-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한국생활에 적응 하지 못한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 지역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li> <li>- 전국 1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상담·정보제공 등 다문화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One-stop 으로 제공</li> </ul>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및 연계강화: 다문화교육 및 초청 프로그램</li> <li>- 결혼이민자 대상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육 및 초청 프로그램 등 운영</li> </ul>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2010).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0년 중앙부처시행계획.  
주: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됨.

#### (4) 질 높은 사회 통합: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본격적으로 취학연령에 도달함에 따라 이민자 자녀는 다른 외모·문화·말씨, 집단 따돌림 등에 따른 심리적 소외감과 정체성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엄마의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기초학습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민자 자녀의 학습부진과 학교생활 부적응 예방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이민자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고 이민자 자녀 학부모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지원과,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를 위한 지원 정책은 이중언어교육환경조성, 취학 전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발달 지원 등이 있다.

〈표 III-2-5〉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사업내용

사업 내용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언어교육환경 조성</li> <li>-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 개발</li> </ul>	교육과학 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언어교육환경 조성: 아동복지교사 운영 지원</li> <li>-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 등 우수자를 아동복지교사로 채용하여 방과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파견 지원</li> <li>- 방과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중언어 프로그램 적극 지원</li> </ul>	보건복지 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 능력 발달 지원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교육지원</li> <li>-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 이하 자녀 중 언어발달 진단을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다문화자녀에 대해 센터 자체 프로그램 또는 보육시설 파견 등 언어발달 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 능력 발달 지원화: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li> <li>- 다문화 가정 유아가 확산됨에 따라 발달 격차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지원 필요</li> <li>- 기관 미이용 유아 및 유치원 유아 중 발달지연 유아에게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 지원</li> </ul>	교육과학 기술부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2010).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0년 중앙부처시행계획.  
 주: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됨.

## 2)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

### 가) 목표 및 방향

2008년 10월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보건복지가족정책 전체를 포괄해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2010년 3월로 여성가족부에 이관되었으며, 그 전체적인 골격은 유지한 채 시행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열린 다문화사회’라는 정책 비전 아래 4대 정책목표와 3대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III-2-1 참조).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그림 III-2-1]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목표 및 방향

#### 나) 세부 추진 과제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는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강화기로 나누어진 생애주기별로 세부추진과제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해체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한부모 가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가족해체기를 별도로 구분하였으며,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전(全)단계에 걸친 세부추진과제도 별도로 구성하였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의 각 주기별에 따른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는 <그림 III-2-2>와 같다.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그림 III-2-2]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과제

#### 다) 자녀양육기 세부 지원사업

생애 주기별로 구성되어있는 지원 정책 중에 다문화 가정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양육기’는 직접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가 수혜대상이 된다. 이에 ‘자녀양육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지원사업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양육기 단계에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서는 출산을 앞둔 출산예정자를 찾아가 건강관리와 출산 준비, 양육방법 등을 교육하는 임신 출산 방문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산후 돌봄을 위한 도우미서비스와 건강의

취약계층인 임신부와 영유아(만 6세 미만)를 대상으로 영양지원 및 영양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표 III-2-6 참조).

〈표 III-2-6〉 ‘임신·출산 지원’ 지원사업 내용

세부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출산 방문 지원 서비스 실시(기존)</li> <li>- 대상 : 출산을 1~2개월 앞둔 출산예정자</li> <li>- 내용 : 임신 중 건강관리, 출산준비, 양육 방법 등을 교육·지원하는 임신·출산 지원 방문서비스 제공(07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확대·강화)</li> <li>- 대상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산모·신생아</li> <li>- 내용 :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산후 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방문 서비스 실시(06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계획 : 지원대상을 중산층 가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10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추진(확대·강화)</li> <li>- 대상 : 임신부, 영유아(만 6세 미만)</li> <li>- 내용 : 월 1회 이상의 영양지원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제공(05년~)</li> </ul>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부모의 자녀양육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실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육아정보 나눔터를 설치하여 양육정보 교환의 장으로써 자녀양육 시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하고 자녀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자녀의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남편의 육아참여 필요성 및 육아법 등을 교육하는 아버지 육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표 III-2-7 참조).

〈표 III-2-7〉 ‘부모의 자녀양육능력 배양’ 지원사업 내용

세부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양육 지원 방문교육 효율화(확대·강화)</li> <li>- 내용 : 결혼이민여성의 양육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아동발달주기와 가정환경을 고려한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도 방법 등 교육(07년~)</li> <li>- 추후계획 : 지역별 수요 및 사업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사업비 차등 지원(09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내 육아정보 나눔터 설치</li> <li>- 목적 : 자녀양육 시 문제 해결 능력 증진, 자녀양육 스트레스 해소 지원</li> <li>- 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양육정보 교환의 장을 만듦(08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자녀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 실시</li> <li>- 목적 : 자녀가 엄마(아빠)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부모-자녀간의 유대 강화</li> <li>- 내용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09년)</li> </ul>

세부사업내용

- 아버지 육아교육 실시(신규)
  - 대상 : 다문화가족 남편
  - 내용 : 다문화가족 남편 육아참여 필요성 및 육아법 등을 교육하는 육아교육 프로그램 운영('09년)
    - \* 배우자교육 프로그램에 내용 포함 또는 개별 워크숍 실시
    - \* 교육콘텐츠 개발, 아버지 수첩 등 보급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영유아 보육·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만 5세 이하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보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 대상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일반아동 대상 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영유아지도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육시설에서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표 III-2-8 참조).

〈표 III-2-8〉 ‘영유아 보육·교육 강화’ 지원사업 내용

세부사업내용

-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검토(신규)
  - 목적 : 다문화가족의 보육료 부담 완화를 위해
  - 내용 : 일정소득 이하의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 검토('10년)
  - 추후계획 : '10년부터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만 5세 이하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 검토
-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사업 실시(신규)
  - 내용 :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소규모보육 시범지역을 지정('09년)
    - \*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보육교사 파견
- 보육시설에서의 다문화 프로그램 강화(확대·강화)
  - 내용 : 다문화 가정 아동 대상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일반아동 대상 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 영유아지도 프로그램 등 개발('08년)  
다문화프로그램 이수 보육교사 양성('09년)  
보육시설에 한국어교사, 치료사 등 파견('10년~)
- 아이돌보미 사업 연계 강화(확대·강화)
  - 내용 : 일시·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07년) 및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중 다문화관련 내용을 심화하여 아이돌보미의 다문화이해 제고('09년)  
수요자 이용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과 연계 및 홍보 강화('08년)  
아이돌보미 사업기관 미분포 지역의 경우 비영리법인·단체를 활용하는 등 사업 시행지역을 확대해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1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부모·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의료 취약계층인 여성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게 병원 입원비 등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표 III-2-9 참조).

〈표 III-2-9〉 ‘부모·자녀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

세부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 건강검진사업 추진(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의료취약계층인 여성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증진을 위해</li> <li>- 내용 : 무료 건강검진 및 건강행태조사 실시('07년~)</li> <li>- 방법 : 대상자 밀집 거주 지역 출장검진, 혹은 한국건강관리협회 15개 시·도지부 건강검진센터 내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실시(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적 미 취득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li> <li>- 내용 : 병원 입원비 등 진료비 지원('05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실시(확대·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다문화 가정</li> <li>- 내용 : 보건소 등록관리 및 방문서비스 실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예방접종률 제고(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예방접종 관련 필수정보를 8개 국어로 제작·배포('07년~)</li> </ul> </li> </ul>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 3) 부처별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여러 부처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보다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정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은 국제결혼중개업 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이주여성보호 및 폭력 피해 예방,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자녀의 양육·교육 지

원 정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시·군·구에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문화교육, 가족교육·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 및 다문화인식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 및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7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처음 개소된 이후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였으며, 2008년 12월 관리기관이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되었으며, 2010년 현재 전국 17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주요사업에는 필수사업으로 기본사업, 기타사업 나누어진 센터사업이 있으며, 그 외에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서비스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중언어교실 등이 있다.

(1) 센터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본사업은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가족 및 개인상담, 취·창업교육이며, 기타사업은 통번역 자조모임, 다문화인식개선사업, 홍보,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강화 등이다. 기본사업과 기타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표 III-2-10>과 같다.

<표 III-2-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및 기타사업

	사업 내용
기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교육</li> <li>-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li> <li>- 결혼이민자 대상 수준별 반편성을 통한 단계별 한국어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사회 이해교육</li> <li>- 결혼이민자가 가정, 지역사회 및 한국생활 전반에 대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li> <li>* 결혼이민자 대상 우리나라의 법률 및 인권, 결혼과 가족의 이해, 다문화가족 생활교육 등을 강의·체험방식 등을 병행하여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교육</li> <li>- 의사소통 미숙 및 부재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구성원 교육을 통해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개인상담</li> <li>-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정서적 지원</li> </ul>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부모·자녀·성·경제문제 등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정서적 지원 및 정보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창업지원</li> <li>-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등 맞춤형 취·창업 지원</li> </ul>
기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번역서비스 자조모임</li> <li>- 서비스 수요분석에 기반 하여 센터 내 기존 프로그램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멘토 양성·활동</li> <li>* 센터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 가사도우미 등 서비스 영역별로 지역 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구성·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링, 자원봉사단</li> <li>- 결혼이민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의식 함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인식개선사업</li> <li>- 결혼이민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의식 함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li> <li>- 지역 사회 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제공기관 연계</li> </ul>

자료: 여성가족부(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 (2)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및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대상으로 한국어 지도사 혹은 아동양육지도사가 대상가정을 주 2회 2시간씩 방문하여 지원하고 있다.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지원, 임신·출산지도 서비스로 나누어져있으며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은 다문화가족의 언어소통 문제로 한국생활의 조기정착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지도사를 파견하는 맞춤형 서비스이며 다문화가족 아동양육지원은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족통합 서비스이다. 임신·출산 지도 서비스는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 산전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간의 출산 전후 서비스이다.

### (3) 통·번역서비스 사업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결혼이민자를 통·번역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9년 5월 전국 38

개 센터에서 58명의 통번역사가 활동 중이며 그 수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통·번역사의 주된 역할은 결혼이민자 입국초기 상담과 정보제공, 임신·출산·양육 등에 대한 생활정보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것이며 가족 간 의사소통을 지원, 가정통신문 번역, 학교 상담이나 행정·사법기관, 병원진료 등 필요시에 통역사로 파견되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 발달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로 센터에 방문한 자녀를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전문 인력인 다문화언어지도사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지만, 센터 인근 보육시설로 다문화언어지도사를 파견하여, 보육시설 원아인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5) 이중언어교실 운영

이중언어교실은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의 언어수업을 통해 초등 및 미취학 아동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로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등을 유치원, 초등학교 재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2010년 52개 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다.

나) 교육과학기술부

(1) 이명박정부의 교육복지대책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5월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소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08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명박정부의 교육복지대책’을 마련하였고, 최근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및 사회의 다문화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복지대책 안에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방안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향후 5년간(‘08~’12)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4대 정책 과제와 14개 세부과제를 구성하였다(표 III-2-11 참조).

〈표 III-2-11〉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 추진과제

추진과제	세부사업내용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기초학력 향상	·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 능력 방달 지원 · 취학 후 한국어 등 기초학습능력 향상 · 기초학력 미달 학생 맞춤형 지도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 가족단위 한국어·정보화 교육 강화 · 학부모용 학교생활 안내 책자 발간 · '다문화 가정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 자원봉사 통역도우미 운영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 지도교사, 관리직 교원 연수 강화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실시 · 교대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 · 다문화요소를 반영한 교과서 집필
다문화이해 제고 및 확산	· 학교 내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 다문화 이해 촉진 영상물 제작 · '다문화교육 체험 공모전' 실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이명박정부 교육복지대책.

이와 같은 지원방안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문화 가정학생의 한국어·기초학력 향상'에 276.3억원,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에 218.5억원, '다문화 교육기반 구축'에 122.4억원, '다문화이해 제고 및 확산'에 141.8억원 등 '08년부터 5년간 약 75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연도별, 부담별 소요예산은 <표 III-2-12>와 같다.

〈표 III-2-12〉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 소요예산('08~'12)

단위: 억원

과제명	재원	'08	'09	'10	'11	'12	합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 확대	국고	4	8	17.3	15.7	15	60
	지방비 (특교제외)	44	82.5	135.3	143.1	146.5	551.4
	특별교부금	10	41.4	44.8	38.8	12.6	147.6
	합계	58	131.9	197.4	197.6	174.1	75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이명박정부 교육복지대책.

## (2) 2010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은 2009년부터는 '이명박정부의 교육복지대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2009년도에는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교대에 '다문화교육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학생의 멘토링 지원 및 맞춤형 다문화교육지원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다문화 가정 유아, 중도입국자녀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해 빠른 적응을 돕고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함께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다문화 가정 학생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b>비전</b>	<b>배움과 이해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구현</b>
<b>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li> <li>■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사회적 역량 강화</li> <li>■ 다문화교육 기반 강화 및 다문화이해 확산</li> </ul>
<b>추진 전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단계별·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li> <li>■ 유아, 동반·중도입국 자녀 등 취약 분야 교육 지원 확대</li> <li>■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지역 내 관련기관 간 연계 강화</li> <li>■ 다문화 가정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원 활성화</li> </ul>
<b>추진 과제</b>	
<b>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li> <li>·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학교 지원</li> <li>·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li> <li>· 국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li> </ul>
<b>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 교·사대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li> <li>· 사립 교원양성대학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유도</li> <li>·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li> </ul>
<b>다문화 가정 학부모 지원 활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li> <li>·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요원으로 양성·활용</li> <li>· 학부모 대상 '문해교육 강사요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li> </ul>
<b>다문화 가정 유아교육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li> <li>·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li> <li>·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아 교사 연수</li> <li>·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 활용 확대</li> </ul>
<b>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li> <li>·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지원</li> <li>·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li> <li>· 역량 있는 학부모의 교육 지원·활용</li> <li>·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li> </ul>
<b>다문화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li> <li>·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li> <li>·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역량 강화</li> <li>·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li> </ul>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10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그림 III-2-3] '10년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2010년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계획의 추진 과제는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다문화 가정 학부모 지원 활동, 다문화 가정 유아교육 지원,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지원, 다문화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이며, 23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그림 III-2-3 참조).

먼저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은 다문화 가정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습지도, 상담 등을 실시하여 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력증진을 지원하며,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부모 출신국 이해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내용은 <표 III-2-13>과 같다.

<표 III-2-13>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 등이 참여하는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 가정학생의 한국어· 기초학습, 문화 이해, 학교 생활관련 상담</li> </ul> </li> <li>- 교대생 등을 활용한 멘토링</li> <li>- 소요예산 : 총 24.75억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학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학생 다수 재학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의 한국어 교육, 교과학습지도 등 지원</li> <li>- 소요예산 : 총 6억원 (60개교×10백만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학 중 집중캠프를 통해 학기 중 멘토링이 어려운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특기 적성, 문화체험 활동 등 진행</li> <li>- 소요예산 : 총 3.5억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지도자 육성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자녀의 부모 출신국 이해 및 리더십 등 역량강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li> <li>- 소요예산 : 총 1.5억원 (광주·전남교육청, 광주교대 지원)</li> </ul> </li> </ul>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10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는 교대 및 사립교원양성기관 등에서 다문화 이해를 위한 강좌를 개설하여 예비교사의 다문화이해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문화 가정 학생 지도교사 및 전문직 교원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다문화 인식 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제고 과제와 관련한 세부사업내용은 <표 III-2-14>와 같다.

〈표 III-2-14〉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교대 및 사범대학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li> <li>- 교대, 국립 사범대학 등에 ‘다문화교육’ 관련 강좌 개설 사업 공모 및 지원</li> <li>-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후 21개교 지원</li> <li>- 교원 양성대학 재학생 등의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링 참여 등을 지원하여 교육 활동과의 체계적인 연계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 교원양성대학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유도</li> <li>- 사립대학의 사범대학·교직과정, 유아교육과 등에 ‘다문화교육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li> <li>- 교원양성기관이 예비교사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관련 내용 반영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li> <li>- (중앙)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연수과목을 개설, 교장·교감 및 대학 업무 담당자의 다문화 인식 개선 유도</li> <li>-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 초·중등교사 연수, 전문교원 연수과정을 개설, 교장·교감,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li> <li>- (지방) 교대·교육청에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관련 직무연수 과정 개설</li> <li>- 소요예산 : 3.22억원(특별교부금)</li> </ul>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10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표 III-2-15〉 ‘다문화 가정 학부모 지원’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지원</li> <li>-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학부모교육 지원</li> <li>* 한글·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가족 단위 학습 지원</li> <li>* 일반 학부모와 다문화 가정 학부모가 이해·공존할 수 있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li> <li>- 다문화 가정 학부모 대상 자녀 교육 상담 지원</li> <li>* 교육지원청별로 부모상담 활동, 캠프 등을 통해 자녀교육관련 정보 습득, 공유 지원</li> <li>* 취학 대상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취학·학교생활 설명회, 자녀 진단 및 멘토링 등을 통해 초기 학교 적응 지원</li> <li>- 소요예산 : 2.7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요원으로 양성·활용</li> <li>- 한국어·모국어 등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 선발·교육</li> <li>- 한국어·출신국 언어, 교수-학습 지도법, 교육실습 등을 포함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li> <li>- 소요예산 : 7천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대상 ‘문해교육 강사요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li> <li>- 다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li> <li>- 소요예산 : 1.9억원</li> </ul>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10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다문화 가정 학부모 지원’은 한글·정보화 교육 등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가족 단위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학부모와 다문화 가정 학부모 등이 ‘자녀교육’ 등을 매개로 상호 이해하고 교육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을 확산하며, 대졸 이상 고학력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우수인력 양성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 학생·학부모의 자긍심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 가정 학부모 지원 과제 세부사업내용은 <표 III-2-15>와 같다.

‘다문화 가정 유아교육 지원’은 다문화 가정의 취학 전 자녀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적응 및 성취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이 미흡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0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추진과제이다. 다문화 가정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사 연수를 실시함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현장활용 확대를 세부사업으로, 취학 전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언어·문화적 경험 및 상호작용을 적기 제공하여, 조기 적응 및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 가정 유아교육 지원의 자세한 세부사업내용은 <표 III-2-16>과 같다.

「10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에서 처음 수립된 「다문화 가정 유아교육 지원 방안」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가 증가하면서 취학 전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다문화 가정의 취학 전 자녀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만 3~5세 다문화 가정 유아 23,058명 중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는 약 4,200명으로 18.2%에 그치는 등 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점과, 다문화 가정 유아는 전반적으로 인지·언어·사회발달 수준이 다소 낮은 편이며 부모는 학습·생활지도 등의 도움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언어·문화적 경험 및 상호작용을 적기에 제공하여, 조기 적응 및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까지 다문화 가정 유아의 교육을 위해 시행되었던 지원은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인지·정서·사회 발달 진단 프로그램과 다문화 가정 엄마-유아 대상으로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희망유아교육사를 파견하여 다문화 가정 유아의 발달 진단 및 교육을 지원하였다. 2010년 다문화 가정 유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업은 다문화 가정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유아 교사 연수를 실시하며,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을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표 III-2-16> ‘다문화 가정 유아교육지원’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유아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li> <li>- 다문화 가정 유아교육 지원 관련 정보 제공 강화</li> <li>-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치원 교육 접근성 제고</li> <li>- 유아교육 등 관련 전공 대학생을 활용한 유아교육 활동 지원</li> <li>- 소요예산 : 7.5천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li> <li>- 다문화 가정 유아교육을 위한 신규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및 기초역량·정서함양 프로그램 개발·보완 추진</li> <li>- 지역단위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연계, 특색사업분야로 ‘다문화 가정 유아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도 및 지원</li> <li>- 소요예산 : 7.5천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사 연수 실시</li> <li>- 유치원 교사의 다문화 가정 유아지도를 위한 매뉴얼 개발</li> <li>- 유치원 교사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현행 교원 연수에 관련 내용 반영 및 수준별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li> <li>- 소요예산 : 1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 활용 확대</li> <li>- 한국어·출신국 언어를 구사하는 인적자원을 선발, 집중교육을 통해 유치원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양성</li> <li>- 과정 이수자는 평가 후 다문화 가정 유아가 많은 유치원 등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용</li> <li>- 소요예산 : 2.5억원</li> </ul>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10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다문화 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교육 지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동반·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출생·성장하여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거의 없고, 학령을 넘긴 자녀는 가족해체, 학습공백 등으로 학교생활과 상급 학교 진학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교·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취학 전 예비 과정을 지원하고,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을 지원함과 더불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지원하는 등의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III-2-17>과 같다.

‘다문화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는 다수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 및 감수성 제고를 위해 학교교육 및 방과 후 등에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중앙부처의 정책 조정 및 연계 노력이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정책 추진 역량 및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사업내용은 <표 III-2-18>과 같다.

〈표 III-2-17〉 '다문화 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지원'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li> <li>- 중도입국 자녀 등 한국어 지원이 필요한 자녀를 위해 한국어·문화 등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대학생 등을 1:1 연계 지원</li> <li>- 다문화 가정 자녀가 많은 지역(수도권 등) 및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등을 중심으로, 취학 전 예비과정 운영</li> <li>- 대안교육 위탁 기관 지정 및 운영</li> <li>- 민간에서 추진 중인 예비교육기관 등과 연계</li> <li>- 소요예산 : 중도입국 자녀 1:1 지원 5천만원 (100명 대상) 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 4천만원 (3-4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지원</li> <li>- 단기간에 학교 적응이 어려운 중도입국 자녀 등을 위해 학교 내에 특별학급을 구성, 일반학급과의 협력학습 지원</li> <li>- 특별학급 담당교사 외에 이중언어·상담 등이 가능한 교육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원활한 수업 진행 지원</li> <li>- 소요예산 : 5천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li> <li>- 일반학교 진학 및 적응이 어려운 중도입국 자녀 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li> <li>- 유치원 교사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현행 교원 연수에 관련 내용 반영 및 수준별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량 있는 학부모의 교육 지원·활용</li> <li>-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로 추가 양성·배치하여, 중도입국 자녀교육 지원</li> <li>- 외국어에 능통한 중도입국 자녀의 강점을 활용하면서 교우·교사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 관련 동아리 활동 등 지원</li> <li>- 소요예산 : 이중언어 강사, 동아리 지원 2.7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li> <li>- 중도입국 자녀 대상 직업·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 등 추진</li> <li>- 직업교육기관과 연계한 직업·진로교육 지원</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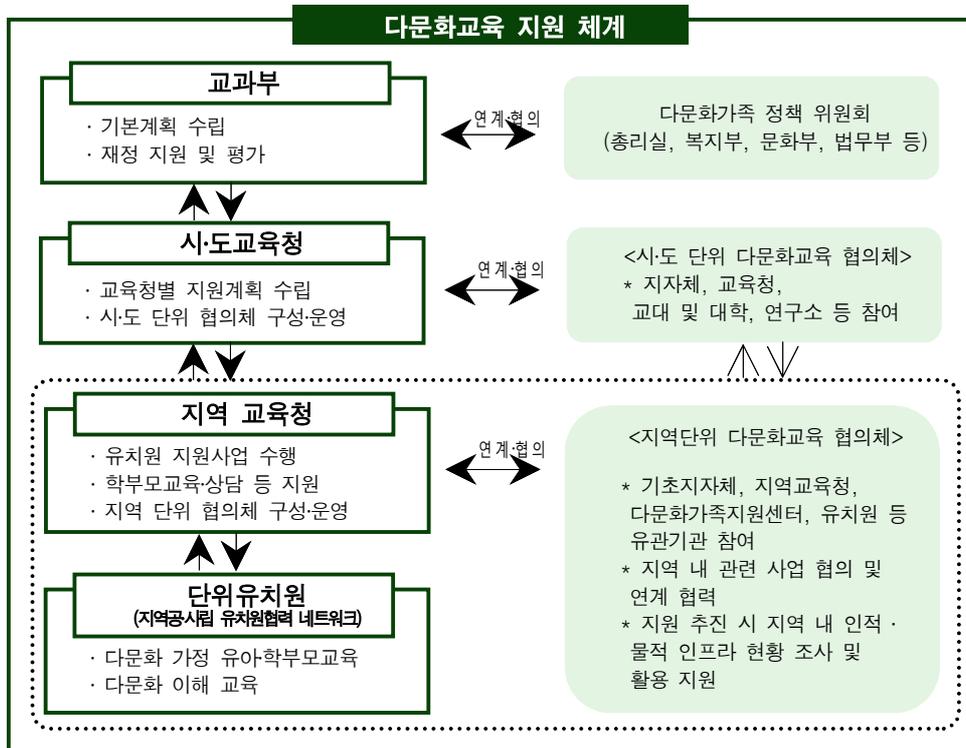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10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표 III-2-18〉 '다문화교육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li> <li>- 학교의 교과교육 및 재량·특별활동에 '다문화이해교육'강화 및 학교·교실의 다문화적 환경 구성 지원</li> <li>- 다문화 가정 학부모, 외국인 등이 본인 출신국 언어·문화에 대한 교육·수업 등에 강사로 참여 가능하도록 지원</li> <li>- 수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콘텐츠를 개발, 학교 등에 보급하여 다양한 형태의 활동 유도</li> <li>- 학교교육과정, 방과 후 교육 등을 통해 다문화 이해교육이 활성화 된 학교 지정 및 지원</li> <li>- 소요예산 :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2.88억원 다문화 이해교육 콘텐츠 개발 7.5천만원</li> </ul>

세부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li> <li>- 교과부, 교육청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과제를 수행하고, 과정·결과에 대해 현장 전문가의 환류 실시</li> <li>- 소요예산 : 3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역량 강화</li> <li>-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및 일반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자체적인 정책 추진 역량 강화</li> <li>- 다문화 이해교육 콘텐츠 등은 공동 활용하되, 시·도교육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사업 개발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li> <li>- 다양한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li> <li>-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관할하는 교육청·지자체, 사업 관련 기관, 지역 민간기관 등으로 다문화교육 협의회 구성</li> </ul>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10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다문화 가정 유아 교육 지원 방안.

[그림 III-2-4] 다문화교육 지원체계도

이 밖에 보건복지부는 ‘아이사랑플랜’에서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위한 지원은 수요자 맞춤형육 추진과제의 세부사업내용으로 수립되어 있다.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보육료전액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보육료 지원 강화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의 홍보를 강화하여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 제고 방안 계획을 세웠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문화적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에 다문화가족 영유아보육프로그램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문제행동 경감을 위한 애니메이션 보급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 관련 지원 정책은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중에 우리문화의 위상 제고 과제의 세부과제인 미래 사회 적응기반 구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다문화 되어가는 변화는 우리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개발을 목표로 다름을 포용하는 다문화 이해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세부내용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다문화 가정 한국어학습교재 개발 및 한국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아리랑TV를 통한 이주민의 긍정적 이미지를 조명하는 등 젊은 세대의 글로벌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자국 문화 소개 및 쌍방향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악 뮤지컬 순회공연 등 다문화지원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다문화 영화제, 연극제’ 등 쌍방향 교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4) 지방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먼저 교육청과 시도청의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표 III-2-19>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은 총 900억 정도이며, 교육청보다는 시도청 지원사업의 예산이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체적으로 경기, 대전, 충남, 전남, 경북, 서울 순으로 예산이 많았다. 교육청의 경우는 서울, 부산, 경북, 충남, 경기, 경남 순이었고, 시도청의 경우는 경기, 대전, 전남, 충남, 경남, 경북 순이었다.

<표 III-2-19>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 다문화 가정지원사업과 예산

단위 : 천원

지역	교육청	시도청	계
서울	2,389,266	5,330,000	7,719,266
부산	2,076,904	2,045,000	4,121,904
대구	246,745	2,060,000	2,306,745
인천	472,585	2,837,000	3,309,585
광주	512,013	840,000	1,352,013
대전	356,905	9,935,000	10,291,905
울산	202,154	1,470,000	1,672,154
경기	1,024,715	12,188,000	13,212,715
강원	239,004	5,158,000	5,397,004
충북	446,070	2,933,000	3,379,070
충남	1,443,350	7,702,000	9,145,350
전북	438,186	2,112,000	2,550,186
전남	476,620	8,452,000	8,928,620
경북	1,627,688	7,012,000	8,639,688
경남	517,110	7,110,000	7,627,110
제주	92,810	219,000	311,810
계	12,562,125	77,403,000	89,965,125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선택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은 <표 III-2-20>과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2-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은 다문화 이해교육이며, 그 다음은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이다. 더불어 학부모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며,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이 밖에 다문화 지원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및 교육, 특별학급 운영, 학교 적응 및 활동 지원도 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을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연구학교 운영이나 교과교육 연구회를 통해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적인 지원 이 외에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캠프와 결연 활동을 하며, 다문화 사랑방을 운영하는 교육청도 있었다.

〈표 III-2-20〉 시도교육청의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구분	다문화 이해교육	교육지원	학교 적응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기반 구축	네트워크 구축
서울	○	○				
부산	○		○	○	○	
대구	○	○			○	
인천	○	○		○	○	
광주	○			○		○
대전	○	○				
울산	○	○				
경기		○				
강원	○	○		○	○	
충북	○	○		○		
충남	○	○	○			○
전북		○		○		○
전남	○					
경북	○			○	○	
경남	○	○				
제주	○	○			○	○
구분	교직원 역량 강화	연구학교 운영	교과교육 연구회	한국어 교재 개발 및 교육	특별학급 운영	교과, 재량, 특별활동
광주	○	○	○			○
울산		○		○		
경기					○	
충북	○					
충남	○			○		
전북		○				
전남				○	○	
경북				○		
구분	홈페이지 운영	문화캠프	결연 활동	다문화 사랑방		
광주	○		○			
울산		○		○		
전북		○		○		
전남				○		

시도청의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은 <표 III-2-21>과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군구청 사업까지 자세한 내용은 <부록 7>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6개 시도청은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하고 있다. 더불어 많은 시도청에서 외국인 본인 및 배우자 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일부 시도청에서는 국제다문화 포럼, 소식지 발간, 보건 및 영양 지원, 다문화 지원 인력 양성과 교육, 상담 및 정서지원을 하고 있다.

〈표 III-2-21〉 시도청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구분	실태조사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지원	본인 및 배우자 교육	다문화 이해	직능교육 및 취업지원	행사 및 축제
서울	○	○	○		○	○
부산				○		
대구		○	○		○	○
인천		○	○			○
광주		○				○
대전	○	○	○			○
울산		○		○		
경기		○	○	○	○	○
강원	○	○	○	○		○
충북		○	○		○	
충남				○		
전북		○		○		○
전남		○	○			○
경북		○				○
경남					○	
제주	○	○	○			○
구분	자녀교육	통번역 서비스	국제 다문화 포럼	소식지	보건 및 영양	다문화 지원 인력 양성·연수
부산					○	
대구	○			○	○	
인천	○	○	○			
광주						
대전	○	○	○			
울산						
경기	○	○		○		
강원	○	○				○
충북		○		○		○
충남	○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구분	결연사업	책 보내기 운동	자조집단 육성	상담 및 정서지원	컴퓨터 운영	국제교류 센터
서울			○	○		
대구	○	○				
인천				○		
대전					○	
울산						○
경북				○		
구분	다문화 리더스쿨	사회 봉사단	복지 스쿨	다문화 통합교실	다문화 보육시설	생활코디 네이터
서울				○	○	○
부산				○		
대구	○	○	○	○		
구분	국제결혼 프로그램	네트워크	문화체험	가족 캠프	워크숍	모국 방문 지원
경기	○	○	○	○		
강원					○	○
전남			○			
경남				○		
제주		○		○		
구분	지역참여 확대	포털사이트 운영	생활의 길잡이 책자	공부방 운영	다문화 연구학교	
충남		○	○			
경북				○		
경남					○	
제주	○					

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2010).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0년 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 나.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분석

앞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을 전체적인 다문화 가정 지원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정책을 영유아 지원 정책 중심으로 부처별로 중복되는 지원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들을 포함하는 정책 위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 다음은 대상별로 다문화 가정 영유아 대상 지원 정책, 다문화 가정 부모 대상 지원 정책, 다문화 지원 기관 및 인력 대상 지원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 1) 부처별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추진해 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차 외국인 기본계획」의 사업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각 부처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부처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어와 문화 이해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공연 등을 주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주로 다문화 가정 성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에 속한 학생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비슷한 사업을 몇 개의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지원대상이나 내용이 일정 부분 겹칠 수가 있다.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사업내용에 따라 담당하고 있는 부처를 정리하면 <표 III-3-1>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문화 교육자료 개발 및 발간 사업은 그 대상이나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문화 전문가 양성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가 나름대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연 및 전시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수행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지원대상자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반인 대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 및 홍보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4개 부처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표 III-3-1> 유사한 사업 내용에 따른 소관 부처

사업	사업 내용	소관부처
다문화 교육자료 개발 및 발간	·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방문학습자료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어 학습 매체별 콘텐츠 개발 · 언어권별 아동서(외국도서) 구입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독서 진흥 콘텐츠 개발	
	·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생활·정책 정보 매거진 발간 · 통·번역 전담 인력 채용·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 전문가 양성	· 국내 한국어 전문교원 양성 및 파견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사업 내용	소관부처
	· 결혼이주여성 등을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 교육·문화현장 파견	교육과학기술부
	· 다문화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실시가 가능한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양성	보건복지가족부
	·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공연 및 전시회	· 국립국악원 연주단이 직접 찾아가는 공연	문화체육관광부
	·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 전시회	교육과학기술부
	·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자녀 등 대상, 다문화 이해를 위한 생활문화 전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자료 등 기획·운영	
다문화 가정 지원대상자 교육	· 개발된 유아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유아대상 다문화 교육 실시	교육과학기술부
	·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방송교육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실시	보건복지가족부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한국문화 이해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의 초등학교 이하 자녀 중 언어발달 진단을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다문화자녀에 대해 센터 자체 프로그램 또는 보육시설 파견 등 언어발달 교육 실시	
	· 다문화 가정 유아가 확산됨에 따라 발달 격차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	교육과학기술부
	· 기관 미이용 유아 및 유치원 유아 중 발달지연 유아에게 기본학습능력발달	
일반인 대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 및 홍보	· 유치원 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관련주제에 맞추어 다문화 이해 교육 포함하여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존중 및 다문화가족 또한 이웃이라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공익광고·방송프로그램 또는 다문화 인식제고 행사 등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 방송·인론매체 등과 협력하여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법무부
	· 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인식 개선과 다문화 의식 증진을 위한 다문화 공익광고 및 캠페인 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주: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은 2010년 3월 여성가족부로 이관 됨.

## 2) 대상별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

### 가) 다문화 가정 영유아 대상 지원

현재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크게 한국어 교육, 발달 및 학습지도, 문화체험, 유아를 교육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일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담당하고 있다.

〈표 III-3-2〉 다문화 가정 영유아 대상 지원

지원 영역		지원 내용	담당부처
한국어 교육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 능력 발달 지원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교육지원	·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 이하 자녀 중 언어 발달 진단을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다문화자녀에 대해 센터 자체 프로그램 또는 보육시설 파견 등 언어발달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발달 및 학습지도	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	· 다문화 가정 자녀가 많은 지역(수도권 등) 및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등을 중심으로, 취학 전 예비과정 운영 · 대안교육 위탁 기관 지정 및 운영 · 민간에서 추진 중인 예비교육기관 등과 연계	교육과학기술부
	취학 전 유아의 기본학습 능력 발달 지원화: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 다문화 가정 유아가 확산됨에 따라 발달 격차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지원 필요 · 기관 미이용 유아 및 유치원 유아 중 발달지연 유아에게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 지원	
	보육시설에서의 다문화 프로그램 강화(확대·강화)	· 다문화 가정 아동 대상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일반아동 대상 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 영유아지도 프로그램 등 개발('08년) 다문화프로그램 이수 보육교사 양성('09년) 보육시설에 한국어교사, 치료사 등 파견('10년~)	여성가족부
다문화 이해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개발된 유아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교육 실시 · 유치원 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관련주제에 맞추어 다문화 이해 교육 포함하여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영역		지원 내용	담당부처
교육을 위한 정책 지원	다문화 사회의 한국어 교육진흥	·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방문학습자료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 가정 유아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 다문화 가정 유아교육 지원 관련 정보 제공 강화 ·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치원 교육 접근성 제고 · 유아교육 등 관련 전공 대학생을 활용한 유아교육 활동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 가정 유아교육을 위한 신규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및 기초역량·정서함양 프로그램 개발·보완 추진 · 지역단위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연계, 특생가업분야로 '다문화 가정 유아교육 프로그램' 유도 및 지원	

#### 나) 다문화 가정 부모 대상 지원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보다 부모에 대한 지원이 훨씬 다양하다. 여기서는 이러한 지원 중 영유아 양육과 교육에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원 정책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지원은 한국어 교육, 임신 및 출산 지원, 육아지원, 부모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상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다문화 가정 부모 대상 지원은 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주로 건강 관련 영역을, 여성가족부는 육아 관련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부모 상담과 지원 및 현장 활용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표 III-3-3〉 다문화 가정 부모 대상 지원

지원 영역		지원 내용	담당부처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 결혼이민자 대상 수준별 반편성을 통한 단계별 한국어교육 실시 ·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방송교육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임신 및 출산 지원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 출산을 앞둔 결혼 이민자에게 산전 준비 및 산후이동 양육에 필요한 출산 후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지원 영역		지원 내용	담당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출산을 1~2개월 앞둔 출산예정자</li> <li>- 내용 : 임신 중 건강관리, 출산준비, 양육 방법 등을 교육·지원하는 임신·출산 지원 방문서비스 제공('07년~)</li> </ul>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추진(확대·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임산부, 영유아(만 6세 미만)</li> <li>· 내용 : 월 1회 이상의 영양지원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제공('05년~)</li> </ul>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산모·신생아</li> <li>· 내용 :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산후 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방문 서비스 실시('06년~)</li> <li>· 추후계획 : 지원대상을 중산층 가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10년~)</li> </ul>	
육아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07년) 및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중 다문화관련 내용을 심화하여 아이돌보미의 다문화이해를 제고('09년)</li> <li>- 수요자 이용 확대를 위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과 연계 및 홍보 강화('08년)</li> <li>· 아이돌보미 사업기관 미분포 지역의 경우 비영리법인·단체를 활용하는 등 사업시행지역을 확대해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10)</li> </ul>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내 육아정보 나눔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자녀양육 시 문제 해결 능력 증진, 자녀양육 스트레스 해소 지원</li> <li>· 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양육정보 교환의 장을 만들('08년)</li> </ul>	여성가족부
	자녀의 예방접종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예방접종 관련 필수정보를 8개 국어로 제작·배포('07년~)</li> </ul>	보건복지부
부모교육	부모-자녀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자녀가 엄마(아빠)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부모-자녀간의 유대 강화</li> <li>· 내용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09년)</li> </ul>	
	아버지 육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다문화가족 남편</li> <li>· 내용 : 다문화가족 남편 육아참여 필요성 및 육아법 등을 교육하는 육아교육 프로그램 운영('09년)</li> <li>- 배우자교육 프로그램에 내용 포함 또는 개별 워크숍 실시</li> <li>- 교육콘텐츠 개발, 아버지 수첩 등 보급</li> </ul>	여성가족부

지원 영역		지원 내용	담당부처
한국문화 · 다문화 이해교육	한국문화 이해교육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한국문화 이해교육 실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및 연계강화: 다문화교육 및 초청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대상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육 및 초청 프로그램 등 운영	문화체육 관광부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 결혼이민자가 가정, 지역사회 및 한국생활 전반에 대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결혼이민자 대상 우리나라의 법률 및 인권, 결혼과 가족의 이해, 다문화가족 생활교육 등을 강의·체험방식 등을 병행하여 진행	여성 가족부
	가족교육	· 의사소통 미숙 및 부재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구성원 교육을 통해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 결혼이민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의식 함양	
상담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활성화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정신건강검진·정신건강 전화상담 및 대면 상담 서비스	여성 가족부
	아동양육지원서비스 확대	·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 가족부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지원	·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학부모교육 지원 - 한글·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가족 단위 학습 지원 - 일반 학부모와 다문화 가정 학부모가 이해·공존할 수 있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가정 학부모 대상 자녀 교육 상담 지원 - 취학 대상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취학·학교생활 설명회, 자녀 진단 및 멘토링 등을 통해 초기 학교 적응 지원	교육과학 기술부

지원 영역		지원 내용	담당부처
부모를 위한 정책 지원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 지역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상담·정보제공 등 다문화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One-stop 으로 제공	여성가족부
	다문화 사회의 한국어 교육 진흥	-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국내 한국어 전문교원 양성 및 파견 - 한국어 학습 매체별 콘텐츠 개발 - 주한 외국인 참여형 한국어 학습활동 발굴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 활용 확대	· 한국어·출신국 언어를 구사하는 인적자원을 선발, 집중교육을 통해 유치원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양성 · 과정 이수자는 평가 후 다문화 가정 유아가 많은 유치원 등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용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지역 사회 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제공 기관 연계	여성가족부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 다양한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관할하는 교육청·지자체, 사업 관련 기관, 지역 민간기관 등으로 다문화교육 협의회 구성	교육과학기술부

다) 육아지원기관 대상 지원

육아지원기관 대상 지원을 크게 다문화교육인력양성, 예비교사 다문화 이해교육, 교사대상 다문화 역량 강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육아지원기관대상 지원은 주로 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인력양성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고, 교사 연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표 III-3-4〉 육아지원기관 대상 지원

지원 영역		지원 내용	담당부처
다문화 교육	다문화교육 강사 확충 :	· 다문화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실시가 가능한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양성	여성가족부

지원 영역		지원 내용	담당부처
인력 양성	다문화강사양성과 정 확대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	· 결혼이주여성 등을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 교육·문화현장 파견	문화체육 관광부
예비교사 다문화 이해 교육	국립교대 및 사범대학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	· 교대, 국립 사범대학 등에 '다문화교육' 관 련 강좌 개설 사업 공모 및 지원 ·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후 21개교 지원 · 교원 양성대학 재학생 등의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링 참여 등을 지원하여 교육 활 동과의 체계적인 연계 강화	교육과학 기술부
	사립 교원양성대학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유도	· 사립대학의 사범대학·교직과정, 유아교육 과 등에 '다문화교육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 교원양성기관이 예비교사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 기관평가에 관련 내용 반영 추진	
교사 대상 다문화 역량 강화	다문화교육 인력강화	· 유·초·중등학교 교사대상 다문화 이해 연수 프로그램실시 · 결혼이주여성 등을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 교육·문화현장 파견	교육과학 기술부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 (중앙)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연수과목을 개설, 교장·교감 및 대학 업무 담당자의 다문화 인식 개선 유도 ·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 초·중등교사 연수, 전문교원 연수과정을 개설, 교장·교감,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 (지방) 교대·교육청에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관련 직무연수 과정 개설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사 연수 실시	· 유치원 교사의 다문화 가정 유아지도를 위한 매뉴얼 개발 · 유치원 교사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현행 교원 연수에 관련 내용 반영 및 수 준별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유·초·중등 교사 등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 유·초·중등학교 교사대상 다문화 이해 연수 프로그램실시	문화체육 관광부
	유초중등 교사 다문화 교육역량 강화	- 교원 자격연수에 '다문화이해' 과정을 포함 하도록 '교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 다문화 이해' 과목을 신설 - 초등교원 양성대학 등에 '다문화교육 강 좌' 개설 지원	교육과학 기술부

### 3. 시사점

국내 다문화 관련 제도 및 영유아 지원 정책을 살펴본 것을 기초로 행정체계 측면과 지원 내용 측면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행정체계 측면에서의 시사점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효율화를 위해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처별로 추진해 온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지원 정책에 대한 역할분담을 하고 있고, 정부 부처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정기적인 협의회를 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일부 사업은 그 대상과 내용이 중복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영유아의 연령이나 속해 있는 기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및 학습자료 개발, 다문화 관련 강사 양성 등 유사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 영유아 대상 사업은 기관을 다니는지 여부, 어떤 기관을 다니는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지원이 달라진다. 따라서 지원대상, 지원 내용,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여 다양한 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국내 다문화 지원 정책은 여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전달체계, 다양한 민간단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이름과 대상,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따라서 지원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여 지원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 내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관련 기관과 단체의 협의체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서로 연계하며, 단일화된 창구에서는 정책 지원대상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나. 지원내용 측면에서의 시사점

첫째, 그동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민자 정착과 지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리고 그 역할을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이제 막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해서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이므로 이들이 영유아 양육과 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의 많은 사업이 영유아를 제외하고 있다. 2010년도 사업부터 유아를 일정 부분 포함시키고는 있으나, 지금까지 운영했던 사업에서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가 소외되어 왔다. 물론 대상별로 사업이 차별화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생 멘토링의 경우 효과가 있다는 평이 많은데, 이러한 사업은 초중등 학생에게만 한정되어 온 게 사실이다. 영유아기에도 유아교육이나 보육 전공 학생을 멘토로 활용하여 봉사학점과 연계시켜 영유아 보육과 교육 지원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활성화되고 효과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 IV. 국외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및 사례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은 많은 OECD 국가는 사회통합 뿐만 아니라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최선의 정책 대안으로 채택하고 있는 교육정책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EU (European Union)의 경우 지난 해 발표한 이민이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청사진인 「이민과 이동 : 유럽연합 교육시스템에 대한 도전 및 기회」(European Commission 2009, Migration and Mobilit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EU Education Systems)에서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지원을 다문화 아동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회원국에게 제안하고 있다<sup>3)</sup>.

더불어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가정환경 변인이 서로 다른 학생 간의 지속적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저소득층, 소수 인종 및 사회·언어적 소외 계층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OECD, 2001).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이들 소외계층 유아가 초등단계에서 그들보다 나은 가정환경 출신의 학생과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즉 초등학교교육 준비도 (school readiness)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이들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출신 유아의 인지능력, 언어, 문해력 및 수리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대상 아동의 연령, 프로그램의 집중 정도, 질적 수준 등에 있어서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OECD 국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은 근래 증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장에서는 다문화 가정 유아에 대한 OECD 국가의 육아지원 정책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이들 정책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

3) EU에서 제시한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를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 확대, 언어 학습 기회 제공, 멘토링과 튜터링, 문화 간 이해교육,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 학교 간 분리 방지 및 이민학생 집중 학교 (ghetto school) 일반화, 모든 학교의 교수 및 리더십과 관련된 질적 기준 고도화.

## 1. OECD 국가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OECD 국가의 경우 초등학교의 의무교육 이전단계인 유아단계에서의 평균 취원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이민 배경 등 가정환경 배경에 따라 유아교육에 대한 취원율이 차이를 보이는 등 가정환경 변인이 다른 모든 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취원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의 유아교육 취원율은 본국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장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아기에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를 가지게 되면 유아기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높은 교육적 및 사회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학교교육에 있어 가장 높은 취약성을 보일 개연성이 높은 유아와 가족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활발하고 다양한 부모의 참여기제를 마련하고, 교사에 대한 철저한 능력 개발 및 계속교육, 체계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이 충족되어야만 효과적인 유아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높은 질적 수준의 유아 교육 및 보육 경험은 학교 단계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유아에게 효과적이고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학교교육 성과 및 사회성 발달에 있어 가장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OECD 국가는 교육법에 명시된 '모든 아동을 위한 양질의 교육 제공에 대한 국가적 의무'에 따라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의 형평성, 통합성 및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OECD 다문화 국가의 경우, 학교교육을 통한 형평성 제고의 일환으로서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추가적인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OECD 국가의 경우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 기회는 본국 또래 집단의 유아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다문화 등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의 차이로 인한 유아교육 기회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유아가 지닌 경제·사회적 문화적 가정환경 배경의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다문화 가정 유아를 포함한 모든 유아에게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

아의 취원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IRLS 2006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한 국가 중 캐나다의 앨버타 및 브리티시 컬롬비아 주, 헝가리, 이스라엘,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유아의 문화·언어적 배경, 사회·경제적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유아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가지게 된다. 또한, 네덜란드 및 영국에서의 같이 의무교육을 만 5세 유아부터 적용하게 되면 적어도 유치원 교육은 유아의 가정환경 변인과 관계없이 모든 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모든 유아에게 유아교육 기회를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설 등 공급적인 제약이 뒤따를 수 있고, 과도한 국가적 재정 부담이라는 한계로 인해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는 차선택으로 다문화 가정 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 유아를 위한 특별 지원(additional targeted support)을 실시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는 유아교육을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제공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유아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다음은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베를린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유아 단계에서 모든 유아에게 유아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법적·제도적 실태 및 다문화 가정 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유아교육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스웨덴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평등 및 복지 사회 모형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이야말로 복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근간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스웨덴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부모에게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목적은 유아의 발달과 학교교육 준비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1960년대부터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학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모를 위해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pre-school activities)'과 '방과후 보육(after-school services)'을 제공해 오고 있다.

스웨덴의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법 및 1998년의 유치원 교육과정(Lpfö 98)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두 가지의 규정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및 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2년의 교육개혁 조치에 따라 직업을 가진 부모만이 아니라 직업이 없이 실업 상태에 있거나 육아 휴직 중인 부모를 지닌 유아

라 하더라도 유아교육에 대한 접근은 모든 유아에게 보편적인 권리(universal right)로 주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스웨덴에서는 모든 유아가 만 4세가 되면 무료의 유아교육(적어도 연간 525시간)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등 유아의 교육 기회에 대한 법적 권리 부여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유아에게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을 시작한 6세 아동에게도 적어도 연간 525시간의 무료 pre-school class(방과후 보육의 일종)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 시설에 참여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지내는 유아를 위해서는 '개방 유치원(open pre-school)'을 운영하고 있다. 개방 유치원의 경우에는 부모와 유아가 함께 참여하게 되며, 특히 이민자 가정(다문화 가정)의 유아 및 부모에게 스웨덴에서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좋은 단초가 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다문화 가정 유아 및 부모를 위한 개방 유치원(special language pre-school groups)'을 설치하여 이민자 부모와 유아에게 스웨덴어뿐만 아니라 모국어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유아교육 비용은 지방정부의 책임이며,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방정부의 세입 및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충당된다. 재정적 한계로 인한 유아교육에의 접근성에 제약성을 지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아교육 비용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는 한편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유아교육비 책정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의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 기회 제공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전체 영유아 단계(만 1-5세) 및 학교교육을 통합하여 교육과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스웨덴은 유아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1996년 만 1-5세 영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 초등교육의 12세까지의 방과후 보육을 보건사회부 소관에서 교육과학부 소관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 학습, 발달을 통합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기회의 제공을 위한 유아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 유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웨덴에서는 유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Lpfö 88)를 통해 정부(유아교육의 책무는 지방정부에 있음)는 스웨덴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아를 위하여 유아원 및 유치원(pre-school)에서 스웨덴어뿐만 아니라 모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의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는 스웨덴어로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

을 뿐만 아니라 모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리(Mother Tongue Support)를 가지고 있다. 스웨덴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모국어 능력 향상 지원을 받을 기회 (Mother Tongue Support)' 제공은 초중등학교의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추가 교육 지원을 받을 권리<sup>4)</sup>, 즉 '모국어 학습 권리 (Mother Tongue Tuition)' 및 '제2국어로로서의 스웨덴어 이수 권리 (Swedish as a Second Language)'<sup>5)</sup>와 연계하여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에게 모국어 (mother tongue, first language)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경우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의 15%와 가정에서 보육 중인 만 1-5세 유아 중 5%가 스웨덴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가정 유아인데, 이들 다문화 가정 영유아 중 약 14%만이 모국어 능력 향상 지원을 받을 기회(Mother Tongue Support)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한 스웨덴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모국어 학습지원 비율은 낮은 편이나, 2000년 이후 그 비율이 매년 증대되어 오고 있다(Skolverket, 2006).

#### 나. 아일랜드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아일랜드는 '모든 학생에게 포괄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교육 목표 아래 1990년대 이후부터 모든 학생을 위한 형평성 제고, 통합 교육 실시, 교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정책과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일랜드의 초등학교에는 만 4-5세 유아를 위한 Junior infant class와 Senior infant class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만 5세 유아가 초등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유아교실에 등록하여 체계적인 유아교육을 제공받고 있으며, 만 4세 유아의 경우에도 절반 정도가 초등학교 부설 유아교실에 등록하여 유아교육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2009년 4월에는 만 3세 유아를 위한 보편적인 유아교육 제공을 위한

4) 스웨덴의 의무교육법(The Compulsory School Ordinance)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3가지 추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제2국어로로서의 스웨덴어 이수(Swedish as a Second Language)이며, 두 번째는 모국어 학습권(Mother Tongue Tuition)이며, 세 번째는 다양한 과목에 대해 모국어로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Study Guidance)이다.

5) 스웨덴의 초중등학교의 다문화 가정 학생은 정규 이수과목인 '스웨덴어'(Swedish) 대신에 '외국어로로서의 스웨덴어'(Swedish as a Second Language)를 이수할 수 있는데, 후자는 스웨덴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을 위해 개발된 스웨덴어 교과로서, 다문화 가정 학생이 이를 이수하게 되면 스웨덴어를 이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민자가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학교에서 개설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모국어(예: 터키어 등)를 제2외국어 중의 하나로 신청하여 이수할 수도 있다.

정책(Free Pre-school Year for all)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만 3세 유아를 수용하기 위한 충분한 시설이 뒤따르지 못하면 유아교육 접근기회에 대한 법적 보장은 그 효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더불어 교육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취약지역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DEIS(Delivering Equality of Opportunity in Schools, 학교교육 형평성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지역에 있는 만 3세에서 18세까지의 영유아 및 학생을 위해 이들 지역의 학교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취약지역을 규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실업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임대 주택 비율, 편부모 비율, 집시(travellers) 비율, 대규모 가게 비율, 무상교과서 수혜학생 비율 등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학교의 경우에는 DEIS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취약하고 있는 소외계층 학생의 비율에 따라 프로그램 적용 범위가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취약지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다문화 가정 비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민자의 경우 초기 정착을 대부분 정부(지방정부) 소유의 임대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민 1세대 영유아 및 아동의 경우에는 DEIS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유치원 또는 학교에 취학할 개연성이 높다.

DEIS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이 재학하는 학교에 제공되는 추가적인 지원은 교사 지원, 급식 지원, 중도탈락 방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러한 추가적인 지원 중 영유아를 위한 지원으로는 'the Early Start Programme'이 있다. 동 프로그램은 만 3세에서 4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약지역의 영유아에게 학교교육(infant class 포함) 준비를 지원하는 1년 과정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다. 즉, 만 3, 4세의 취약계층 유아를 위해 만 4세부터 시작하는 초등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유아교실(infant class)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한 학급이 15명 이내로 구성된 유아 특별프로그램을 오전 및 오후의 2부제로 제공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한 교실에는 초등학교 교사 한명과 자격을 갖춘 유아 보육전담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은 Early Start Programme을 개설한 초등학교의 이사회(Board of Management)에서 임명한다.

동 프로그램의 핵심 중의 하나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사는 프로그램 운영 중에 학부모의 참여를 요청하고, 부모가 번갈아 가면서 유아교실에 나오게 된다. 부모의 학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Home School Community Liaison(HSCL) coordinator<sup>6)</sup>가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게 된다. Early Start Programme의 커리큘럼은 언어, 인지 능력, 사회성 및 인성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구조화된 놀이 활동을 통해 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다. 노르웨이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교육의 형평성 제고는 노르웨이 교육정책의 기저를 지키는 최종 목표이며, 모든 교육 정책에 적용되는 원칙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최근에 단행된 교육개혁(예를 들어 2008년 발표한 Knowledge Promotion 등)의 목표도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학생의 기초 교육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적 지원은 노르웨이 교육정책에 있어 추가 지원대상 그룹의 하나로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 기조에 따라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재정 투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편적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기회 제공은 노르웨이에서 유아를 위한 법적인 권리(legal right of universal access)로 간주되고 있다. 2009년부터 노르웨이 정부는 유아를 유아원 또는 유치원에 취학시키고자 하는 부모를 위해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 투자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교육의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교육 분야의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유아교육 취원율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유아교육 및 보육 접근율은 본국 또래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다문화 영유아를 위한 추가 지원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표 IV-2-1 참조).

---

6) 아일랜드 도심 지역의 취약 지구 학교에 배정하는 특별 교사의 일종으로 취약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이들 학생을 위해 가정, 지역사회 등과의 연계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이다. HSCL Coordinator는 학교수업은 담당하지 않고 이들 학생을 위한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HSCL Coordinator는 한 개의 학교에 근무할 수도 있고, 2개 학교를 담당할 수도 있다. 2009학년도 기준으로 아일랜드에는 450개의 HSCL Coordinator 자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초등 370개교, 중등 281개교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표 IV-2-1〉 노르웨이 유치원 취원율(전체 유아 대비 다문화 배경 유아 비교)

단위: %

연령	영유아 전체 취원율	다문화 가정 영유아 취원율
1	59	25
2	79	43
3	92	72
4	95	86
5	96	90
1-5	84	63

자료: 노르웨이 통계청(2007/08).

노르웨이에서는 유아를 위한 보편적인 유아교육 제공을 위해 유아교육 시설 확충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을 위한 부모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월 유치원 교육비 부담 최고액을 설정하여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의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월간 유치원 교육비의 최고액은 2,330NOK로 이 비용은 전체 유치원 교육비의 22~3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유아교육 기회 확충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취원율이 낮은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다문화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만 4, 5세 유아를 위한 추가적인 무료 유치원 교육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a pilot project of free core time in day-care centres)을 추진하고 있다.

## 라. 네덜란드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네덜란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과 함께 트래킹 시스템(tracking system)을 시행하고 있는 OECD국가 중의 하나이다. 네덜란드의 학생은 10세가 되면 자신이 취학하게 될 중등교육의 유형을 결정하게 되는데, 특히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특히 서구 국가이외의 국가로부터 이민을 온 다문화 가정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후 낮은 단계의 중등교육 트랙(실업 교육 위주의 현장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유아의 경우에도 다문화 가정출신의 유아는 영유아기의 교육 및 보육 접근 기회가 본국 배경의 또래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는 만 5세 유아부터 의무교육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만 4세 유아의 경우에도 거의 100%에 가까운 유아가 유아교육을 받고 있다.

<표 IV-2-2>는 트레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유아교육 참가율 등을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의 만 4세 유아의 경우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접근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만 3세까지 유아의 경우에는 터키 및 모로코 출신의 이민자 가정 유아의 교육 접근율이 본국 출신의 또래 유아에 비해 매우 낮아 이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IV-2-2> 트레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유아의 교육 기회 비교

국가명	인구의 90% 이상이 취학하고 있는 연령대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연령	4세 유아 중 유아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	15세가 되었을 때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유형의 수
오스트리아	5-16	6	84%	4
벨기에	3-17	6	100%	4
독일	4-17	6	94%	4
네덜란드	4-17	5	99%	6

자료: Shewbridge, C., Moonhee Kim, Wurzburg, G. and Hostens, G. (2010). OECD Reviews of Migrant Education: Netheralnds.

특히, 2007년 3월부터 기존에 사회 및 고용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보육이 교육·문화·과학부로 이관되면서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만 2-5세까지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영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VVE)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만 2-4세까지의 영유아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유아원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만 4세부터 5세 유아 대상 특별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다.

2006년 8월부터는 영유아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지방정부로 변경되었으며,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영유아를 위한 특별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만 4세 이전의 영유아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에서 만 4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프로그램은 단위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림 IV-2-1]은 네덜란드의 영유아 및 초등학교 단계의 아동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에서는 유치원 및 유아교육의 일부를 초등학교에 부설하여 제공하고 있다.

	유아교육	초등 교육	
0세 ~ 2.5세 이하	2.5세 이상 ~ 4 세 이하	4세 이상 ~ 6세 이하	6세 이상 ~ 12 세 이하
유치원 및 유아원 준비 프로그램	유치원 (preschool) 유아원(playgroups)	초등 1학년 및 2학년	초등 3학년부터 8학년까지
	유치원 및 유아교육 (VVE)		

자료: Broekhof, K. (2006). Preschool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Sardes Educational Service, SARDES, Utrecht.

[그림 IV-2-1] 네덜란드의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요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 접근율에 있어 본국 영유아와 다문화 가정 영유아 간에 심한 격차를 보이는 연령대는 2.5세 이하와 2.5세부터 3세까지 유아의 경우이다. 예를 들어 2.5-3세 영유아의 약 63%가 영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으며, 이들 연령대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이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부모가 유아교육 기관에 자녀를 취학시키고 있고, 그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터키, 모로코 등의 국가로부터 이민을 온 다문화 가정의 유아의 경우에는 취원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에서는 이들 취약계층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11년까지 이들 취약계층의 유아교육 취원율을 100%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즉, 다문화 가정 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의 접근 기회 확대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특별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진행 상황을 각 지방정부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the Landelijke Monitor Voor-en Vroegschoolse Educatie* National Monitor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이러한 정책 목표아래 각 지방정부는 2006년, 2008년, 2010년에 목표치로 제시한 접근 기회 확충 및 질적 수준 달성에 대한 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각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는 취약계층 유아의 선정 기준<sup>7)</sup>, 이들 유아의 교육 및 보육 참가율, 프로그램 내용, 교사 교육 및 재교육 등이다. 2007년에 실시한 중간 평가 결과 특별 지원대상 영유아 중 2.5세에서 4세까지의 53%, 4세 이상 5세

7) 각 지방정부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기회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목표 설정 하에 이러한 정책 목표에 의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될 대상 유아를 특정 기준에 의해 선정하게 되며, 이러한 취약계층 유아의 선정 기준은 각 지방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대체로 사회 경제적인 여건을 중심으로, 네덜란드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등 다문화 가정 배경 등이 포함된다.

이하 아동의 67%가 유아교육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1년까지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100% 유아 교육 및 보육 기회 제공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마. 독일 베를린주의 영유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독일에서는 만 3세에서부터 6세 이전까지의 유아가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다. 유치원은 자선 단체 (*Verbände der Freien Wohlfahrtspflege*) 또는 지방정부 (local authorities) 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는 민영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 정부에서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초등교육 준비를 위한 유아교실 (*pre-school classes, Vorklassen*)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독일의 유아교육 및 보육 시스템은 각 주별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베를린 주의 경우에는 2005년 도입한 '교육을 통한 통합 달성(Integration through Education)' 정책에 따라 소수 인종의 이민자가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등교육으로의 진학률을 높이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이민자 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예를 들어 학교운영위원회(school councils)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한 통합 달성을 위한 교육지표(educational indicators)를 설정하고 이들 지표의 성취 여부를 기준으로 통합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특히, 베를린 주에서는 이들 교육지표 중 유아교육과 관련된 지표를 설정하여 소수 인종 출신 이민자 가정의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즉, 주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지표의 예로는, 1) 초등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소수 인종 출신의 다문화 가정 유아는 적어도 2년 이상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2) 초등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소수 인종 출신의 다문화 가정 유아는 충분한 수준의 독일어 유창성을 구비하여야 하며 학교생활에 필요한 독일어 사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GERMAN PLUS*라는 언어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2.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 내용별 사례

### 가. 유아 언어교육 지원

다문화 가정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국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본국 언어 습득 및 언어 유창성 확보이다. 특히, 부모가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인 이민자를 위한 언어교육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부모의 정착국 언어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언어 유창성 정도를 시민권 취득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스웨덴 등의 경우에는 성인 이민자를 위한 추가적인 언어 지원 프로그램(Swedish for Immigrants)을 통해 부모의 스웨덴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1) 유아기의 언어발달 수준 진단

다문화 가정 배경을 지닌 유아의 학교교육 준비도를 향상시키고, 학교교육 단계에서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아단계에서의 언어발달 수준에 대한 적절한 진단(screening or assessment of young children)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영유아 단계에서의 언어발달 수준에 대한 진단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 의료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영유아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진단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초기에 정책 개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구체적인 진단 방식 및 실행 조건은 각 국가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많은 OECD 국가는 영유아를 위한 초기 단계의 언어발달 진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유아가 만 3세가 되면 언어 진단을 받게 된다. 이러한 언어 진단평가는 모든 유아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다문화 가정 배경을 지닌 영유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언어발달 수준을 진단하여 추가적인 언어교육 지원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만 3세부터 추가적인 언어교육을 받게 된다. 전문가에 의해 추가적인 언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다문화 가정 유아는 추가 언어교육을 받을 의무를 가지게 된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언어 평가에 필요한 도구 및 자료를 무료로 지방정부에게 제공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도 덴마크와 유사한 언어 진단 평가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노르웨이

에서는 만 4세가 되면 노르웨이어(SPRAK 4)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유아의 모국어에 대해서도 언어발달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된다.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진단 시에 유아가 지닌 언어발달의 문제인지 인지능력 발달의 문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러한 진단 평가는 노르웨이어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민자가 사용하는 모국어로도 제공하고 있다. SPRAK 4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유아의 경우에는 Language promotion(Sprakloftet)을 통해 추가적인 언어발달 지원을 받게 된다.

독일의 Hesse 주에서는 지난 2002년 언어습득능력 진단 평가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시작하기 1년 전에 독일어 수준에 대한 테스트를 받도록 했다. 만일 테스트 결과 유아가 초등학교에 필요한 독일어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들 유아는 무료 유치원 교육(Vorlaufkurse)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초등학교 시작에 필요한 독일어를 습득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추도록 했다.

## 2) 유아기의 언어발달 지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언어교육 지원의 경우에는,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유아를 위한 언어교육 지원을 하는 경우와 언어발달이 부족한 유아를 위한 추가적인 언어교육 지원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Early Language Support(Fröhe Sprachförderung)'를 통해 다문화 가정 유아의 본국 언어(독일어)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언어교육 지원은 다문화 가정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언어발달이 뒤처지는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오스트리아에서는 유아원 및 유치원에서 유아를 위한 초등교육 준비 및 독일어 습득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언어발달 상태를 측정·분석하여 만약 언어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유아에 대해서는 유치원에서 120시간의 추가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물론 이 경우 부모가 이러한 추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의무는 아니며, 추가 언어교육의 참가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추가 언어교육 대상 유아의 부모는 정부로부터 'Language Ticket'을 받게 되고 이 티켓을 유치원에 제출하여 추가 언어교육 비용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모든 국민을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더불어 이민자를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유치원 단계에서의 확실한 언어 기반을 다지기 위해 조기 언어 발달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어 유창성이 뒤처지는 다문화 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일

주일에 5~8시간의 추가적인 언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유치원에서 다문화 가정의 유아는 스웨덴어뿐만 아니라 모국어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노르웨이에서도 유아단계에서의 언어발달에 강력한 정책적인 고려를 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의 교육 정책 방향을 유아를 위한 언어교육 발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유치원에서 노르웨이어만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유아의 모국어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런 유아단계에서의 언어교육 지원은 초중등단계에서의 언어교육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모든 단계별 교육 간에 독일어 및 다른 이민국가의 모국어를 위한 지속적인 언어발달 프로그램인 'FörMig' Programme를 운영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학생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간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부모, 도서관, 지역 보건센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 나. 이민자 부모 / 부모-유아 연계 지원 프로그램

이민자 가정에서 모국어를 일상생활 언어로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민자 가정의 유아가 가정에서 부모와의 자연스런 대화를 통해 본국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는 이민자 가정의 유아만이 아니라 그 부모를 대상으로 본국 언어 습득, 교육 시스템 등에 관한 교육 정보 제공 등을 하는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학부모 지원을 위한 접근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본국 언어 습득 지원, 본국의 생활 및 교육시스템 관련 정보 제공, 바람직한 부모 역할(parenting)을 위한 조언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정부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만 3세 이하의 영유아 및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방문(home visiting)'을 통해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다. 유아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질에 대한 신뢰 부족 또는 문화적인 관념 (몇 살에 유아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 등)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이민자 가정의 영유아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참여가 지체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가정방문 프로그램이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부모 및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 기회를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민자 배경의 유아를 가진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 교육과 관련된 조언을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HIPPY(The Home

Instruction for Parents of Preschool Youngsters)를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시작된 학부모 지원 정책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학부모에게 향후 자녀가 참여하게 될 학교생활과 관련된 교육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책이다. HIPPY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이외에도 여러 OECD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호주, 칠레, 독일,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터키,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2주마다 같은 배경을 지닌 가정교사(tutor)가 이민자 가정을 방문하여 구조화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에게 자녀의 학습 지원을 위한 방법을 지도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 'Opstapj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 자녀가 초등학교교육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 2세에서 4세까지의 유아를 키우고 있는 이민자 부모를 가정 방문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이민자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체계적인 학습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가정 방문을 통해 이러한 지원을 수행하는 사람은 방문대상 이민자와 문화·언어적 배경이 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활동 영역은 이민자 자녀의 인지능력, 사회 및 신체적 발달 및 네덜란드어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이민자 부모가 유아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이민국에서의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OECD 국가는 부모에게 이민국 언어에 대한 이중언어교육 지원을 유아에 대한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경우 이민자 가정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유아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유아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부모를 위한 이민국 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유아가 재원하는 유치원 또는 인근의 지역사회 학교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Samenspel이라는 센터 형태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 유아 및 어머니에게 추가적인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8). 동 프로그램은 놀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두 명의 교사(각각 네덜란드어, 모국어 사용)가 유아 및 어머니에게 언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이민자 부모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위해 여러 가지 모델을 개발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모듈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경우 'the Family Learning Project(가족 학습 프로젝트)'를 통해 소수 언어 사용자를 위한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 프로젝트에 사용된 부모 지원 연계 유아교육 지원프로그램은 1) 개방 유치원(open kindergarten)<sup>8)</sup> 프로그램, 2) 유치원

교육을 받지 않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참여하여 유아의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3)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4) 도서관, 유치원, 그리고 학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문화 가정 유아에게 다양한 언어로 된 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이다. 이들 프로그램 중 개방 유치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스웨덴에서도 운영되고 있는데, 스웨덴의 개방 유치원은 유아 교육기관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와 부모가 참여하여 사회성 개발 및 교육적인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이민배경을 가진 학생을 위해 '출발점 균등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the Migrant Education Even Start, MEES)'을 통해 주 전체에서 가정 및 학교에서 제공되는 가족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낙오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22개 이민 교육 지역의 332개 장소에서 제공하고 있다. 동 교육 프로그램은 이민자 가족에게 부모를 위한 문해력 증대 교육, 부모교육서비스 및 외국인을 위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의 특징은 0세에서 7세까지의 이민자 배경을 가진 유아가 반드시 부모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교사 및 보조자가 가정 방문을 통해 이민자 부모와 유아에게 부모교육과 유아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학교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부모와 유아가 학교 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영어 및 모국어에 대한 문해교육, 부모를 위한 교육, 유아교육 및 유치원 준비도 향상 교육 등을 받게 된다(자료: <http://www.cde.ca.gov/sp/me/mt/mess.asp>).

그 외에 많은 국가가 이민자, 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 유아와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1964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가정환경의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아의 학습 준비도, 사회성 발달, 감성 발달 등의 결점을 보충하고, 학교생활에서의 공평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공동협력 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유아의 언어교육 등 교육 지원, 건강, 의료, 영양, 부모참여, 사회봉사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

8) Open kindergarten(노르웨이어로는 åpen barnehage)은 유아와 어머니가 함께 만나질 정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놀이,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을 한다. 통상 일주일에 3~4번 정도 오픈하며, 오전 9시 내지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2시 반에 끝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대상 프로그램으로는 '부모 교사 프로그램(PAT: Parents as Teachers)'을 들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은 미국, 독일 벨리즈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아 부모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다. 0세에서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가진 부모를 위한 자발적 부모 참여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영유아기의 초기부터 학습에 있어서의 부모의 참여와 관심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기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인식 지원, 전반적인 아동 발달, 언어 발달 촉진, 인지능력 향상, 부모-자녀 간 관계 강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가정방문, 그룹 미팅,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및 지역 학습 자원과의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참가한 유아가 그렇지 않는 유아에 비해 초등학교 입학 후에 학업 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이민자 학부모를 교육 자원으로 활용

다문화 가정 영유아 및 이들의 부모를 위한 지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관계의 구축이다. 특히, 가정방문 등의 면대면 접촉의 경우에는 문화적·언어적으로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주관하게 되면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높을 수 있다. 또한, 같은 언어적 배경을 지닌 사람을 통한 지원을 받게 되면 언어적 장벽에서 오는 이민자 부모의 자녀 교육 참여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많은 OECD 국가는 다문화 가정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 이민자 배경을 지닌 유아교육 및 보육 담당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OECD, 2001). 이민자 배경을 지닌 교사 채용을 통해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이민자 부모 중에서 '지역 이민 교육 코디네이터(Regional Migrant Education Coordinators)'를 뽑아 다문화 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에 고용하여 학교와 다문화 가정, 지역사회간의 파트너십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더 나아가 이중언어가 가능한 이민자 부모 중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중언어 교사로 채용하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교육부에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교사 채용에 있어 이민자 배경을 지닌 성인 중에서 이

중언어 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코펜하겐의 경우 이들 교사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부여하는 체계를 도입하였다. 즉, 다문화 가정은 지원의 대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자원을 제공하는 원천이기도 한 것이다.

많은 OECD 국가가 다문화 가정 부모를 활용하는 보다 보편적인 방법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다문화 가정 부모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정 부모가 가진 인적자원을 학교에 활용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다문화 교육 이해를 높이고 교육지원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아동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되고, 본국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다문화 이해에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같은 배경을 지닌 상급학교(주로 대학 재학생) 학생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정 아동은 자신에게 필요한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찾아 미래 성공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 대학생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덴마크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 배경을 지닌 교사양성을 위해 다문화 가정 배경을 지닌 학생의 교육대, 사범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 네덜란드 등 많은 OECD 국가는 이민자 배경을 지닌 학생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언어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고등학생 및 성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라.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많은 경우에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환경을 지닐 확률이 높다. 특히, 본국에 정착한 지 오래되지 않은 이민가정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들을 위해서는 우선 빈곤에서 탈출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이민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덴마크,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 수당만으로는 빈곤의 세대 간 승계를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몇몇 유럽 국가는 유아교육 및 보육 기회의 보장과 부모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하고 있다. 특히, 많은 OECD 국가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다문화

가정 영유아는, 특히 본국에 정착한 지 오래되지 않은 이민가정의 경우,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영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패키지를 다문화 가정에 적극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직장에서의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및 유아를 자녀로 둔 이민자 부모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예: 불가리아)을 하는 국가도 있다.

### 3.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OECD 국가의 이민자 및 소수민족 가정의 영유아에 대한 정책 지원 사례는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경험을 겪으면서 축적된 정책적 교훈을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첫째,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정책 대상자를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즉, 이들 영유아를 위한 특별 지원과 기타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 가정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지원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점차 다문화 가정 영유아만을 위한 특별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다른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전체 영유아를 위해 유치원 이전 단계에서의 영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유아에 대한 정책지원과 학교교육에 대한 정책 지원간의 연계, 관련 행정 조직의 통합 등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다문화 교육정책에 오랜 경험을 지닌 이런 국가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명확한 정책 대상자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지원대상(target group)별 지원프로그램(tailored programmes)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 단계에서의 언어 및 발달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추가적인 본국 언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한 가정환경에서 오는 영유아의 언어발달 지연을 보완해 주고 있다.

셋째, 이러한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정책 지원은 가정 및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 관련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NGO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추진 효과를 증대해 나가고 있다.

## V.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 및 인식

본 장에서는 국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설문조사 결과와 면담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

####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 인력<sup>9)</sup>

<표 V-1-1>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평균 인력은 7.1명이며,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순으로 많았다. 세 지역 모두 5~9명 사이인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도시는 10~14명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도농복합 및 농어촌은 5~9명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V-1-1> 인력 현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분	1~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계	단위: %(기관), 명	
						$\chi^2(df)$	평균
전체	25.4	53.8	11.5	9.2	100.0(130)		7.1
도시	22.2	33.3	25.0	19.4	100.0( 36)		9.5
도농복합	24.5	61.2	10.2	4.1	100.0( 49)	13.210(6)	6.3
농어촌	28.9	62.2	2.2	6.7	100.0( 45)		6.0

##### 2) 시행 사업 및 예산

<표 V-1-2>는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행한 사업과 예산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센터의 기본사업인 한국어교육, 취·창업교육은 모든 센터에서 시행되고 있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는 지침상 2명이며, 그 이외의 인력은 방문교육사업 담당자, 통번역사, 언어발달지도사 등 별도 배치 인력임.

으며, 특성화 사업 중에서는 방문교육사업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그 다음으로 통번역서비스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예산은 방문교육사업이 평균 167,64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이 평균 23,231천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센터사업 중에는 한국어 교육과 취·창업 지원이 모든 센터에서 시행되었으며, 한국어교육은 예산이 평균 14,401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사업시행 현황 및 예산(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위: %, 천원

사업의 종류		시행 비율	평균 예산
방문교육사업		93.9	167,642
통번역서비스 사업		77.1	21,62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55.7	23,231
이중언어교실 운영		36.6	4,278
센터사업	한국어 교육	100.0	14,401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99.2	4,428
	가족교육	97.7	5,377
	가족개인상담	93.1	2,637
	취·창업 지원	100.0	5,140
	통번역서비스 자조모임	73.4	2,280
	멘토링, 자원봉사단	84.7	3,429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96.9	4,008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93.9	2,526

〈표 V-1-3〉 지역별 사업시행 현황(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위: %

구분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방문교육사업	93.9	97.2	92.2	93.2	
통번역서비스 사업	77.1	69.4	86.3	72.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55.7	61.1	62.7	43.2	
이중언어교실 운영	36.6	41.7	45.1	22.7	
센터사업	한국어교육	100.0	100.0	100.0	100.0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99.2	100.0	98.0	100.0
	가족교육	97.7	100.0	96.1	93.7
	가족개인상담	93.1	100.0	94.1	86.4
	취·창업 지원	100.0	100.0	100.0	100.0
	통번역서비스 자조모임	73.4	61.1	86.3	86.4
	멘토링, 자원봉사단	84.7	86.1	86.3	81.8

구분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96.9	100.0	96.1	95.5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93.9	97.2	92.2	93.2

〈표 V-1-4〉 지역별 사업시행 예산(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위: 천원

구분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방문교육사업	167,642	133,386	177,770	180,470	
통번역서비스 사업	21,627	17,826	26,298	18,02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23,231	25,689	24,504	18,634	
이중언어교실 운영	4,278	5,423	4,016	3,313	
센터 사업	한국어교육	14,401	15,351	18,297	9,063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4,428	3,273	5,306	4,203
	가족교육	5,377	3,901	5,995	5,583
	가족개인상담	2,637	2,575	3,566	1,466
	취·창업 지원	5,140	5,379	7,199	3,302
	통번역서비스 자조모임	2,280	2,473	3,052	1,177
	멘토링, 자원봉사단	3,429	3,042	4,994	1,375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4,008	3,669	4,656	3,447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2,526	1,775	3,741	1,414

## 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1) 인력

〈표 V-1-5〉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다문화 주무과 인원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다문화 주무과 인원이 1명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V-1-5〉 다문화 주무과 인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기관), 명

구분	1명	2명	계	$\chi^2(df)$	평균
전체	92.1	7.9	100.0(152)		1.1
도시	95.7	4.3	100.0( 47)		1.0
도농복합	93.8	6.3	100.0( 32)	3.415(2)	1.1
농어촌	89.6	10.4	100.0( 67)		1.1

<표 V-1-6>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다문화 지원과 인원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다문화 지원과 인원이 1명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도농복합의 경우는 1명인 경우가 100%를 차지했다.

<표 V-1-6> 다문화 지원과 인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기관), 명

구분	1명	2명	계	$\chi^2(df)$	평균
전체	90.6	9.4	100.0(32)		1.1
도시	90.0	10.0	100.0(20)		1.1
도농복합	100.0	0.0	100.0( 6)	14.042(2)	1.0
농어촌	90.0	20.0	100.0( 5)		1.2

## 2) 시행 사업 및 예산

<표 V-1-7>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 및 활용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활용하는 사업이 평균 156,007천원으로 가장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활용 확대 사업과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사업이 각각 평균 63,750천원과 평균 45,000천원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7> 지원사업시행 현황 및 예산(2010):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기관), 천원

구분	시행비율	예산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72.2	32,366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	68.4	28,155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50.6	28,776
국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5.1	36,916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61.4	14,258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82.3	8,234

구분	시행비율	예산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활용	25.3	156,007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20.3	43,369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9.5	38,470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위한 유아 교사 연수 실시	16.5	10,197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 활용 확대	9.5	63,750
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	5.7	8,333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지원	13.9	13,474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	1.9	45,000
역량 있는 학부모의 교육 지원/활용	10.8	2,569
진로/직업 교육지원 강화	8.9	5,400
일반 학생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67.1	11,519
시·도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18.4	43,911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역량 강화	18.4	12,943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38.6	17,432
계	100.0(158)	100.0( 49)

<표 V-1-8>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원사업을 지역별로 살펴본 것이다.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활용,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사업의 경우는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의 순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사업의 경우에는 도농복합, 도시, 농어촌의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사업의 경우는 도시, 농어촌, 도농복합의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표 V-1-8> 지역별 지원사업: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기관)

구분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72.2	73.5	69.7	71.4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	68.4	71.4	69.7	65.7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50.6	53.1	54.5	45.7
국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5.1	8.2	6.1	2.9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61.4	75.5	54.5	52.9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82.3	85.7	72.7	85.7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활용	25.3	30.6	24.2	22.9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20.3	30.6	9.1	15.7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9.5	14.3	12.1	2.9

구분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위한 유아 교사 연수 실시	16.5	22.4	12.1	14.3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 활용 확대	9.5	18.4	6.1	5.7
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	5.7	8.2	3.0	4.3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지원	13.9	22.4	12.1	8.6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	1.9	6.1	0.0	0.0
역량 있는 학부모의 교육 지원/활용	10.8	10.2	15.2	8.6
진로/직업 교육지원 강화	8.9	12.2	9.1	5.7
일반 학생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67.1	73.5	63.6	62.9
시·도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18.4	28.6	12.1	11.4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역량 강화	18.4	26.5	18.2	10.0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38.6	42.9	45.5	30.0
계	100.0(158)	100.0( 49)	100.0( 33)	100.0( 70)

<표 V-1-9>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을 나타낸 것이다.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 활용 확대 사업과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사업은 도시지역에서만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두 사업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은 시·도 다문화교육센터 운영지원사업(평균 43,911천원)이며 지역별로는 도시, 농어촌, 도농복합이 각각 평균 82,943천원, 28,800천원, 3,500천원의 순으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 활용하는 사업이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용 예산이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도시 22.2%, 농어촌 33.3%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V-1-9> 지역별 지원사업 예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구분	단위: 천원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32,366	76,756	8,723	13,383
다문화 가정 학생교육 거점학교 지원	28,155	29,405	15,322	34,523
다문화 가정 학생대상 방학 집중캠프	28,776	79,670	5,203	7,821
국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36,916	44,500	0	6,580
현직 교사 연수지원 강화	14,258	29,088	2,784	5,911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지원	8,234	19,752	5,108	3,529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활용	156,007	336,477	7,133	33,961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43,369	57,797	1,250	6,720
다문화 가정 유아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38,470	58,272	1,000	0

구분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위한 유아교사 연수	10,197	14,728	2,000	2,774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활용 확대	63,750	63,750	0	0
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	8,333	3,500	0	18,000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지원	13,474	15,132	22,600	4,040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	45,000	45,000	0	0
역량 있는 학부모의 교육 지원/활용	2,569	4,960	1,250	0
진로/직업 교육지원 강화	5,400	12,250	1,000	750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11,519	22,489	10,188	4,652
시·도 다문화교육센터 운영지원	43,911	82,943	3,500	28,800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정책 추진역량 강화	12,943	9,600	10,000	13,581
지역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강화	17,432	52,480	7,657	9,094

## 다. 지방자치단체

### 1) 인력

<표 V-1-10>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주무과 인원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다문화 주무과 인원이 1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명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평균인원은 농어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 지역이 2.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도농복합 지역이 1.5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0> 다문화 주무과 인원: 지방자치단체

단위: %(기관),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계	$\chi^2(df)$	평균
전체	67.8	19.0	6.6	3.3	3.3	100.0(121)		2.1
도시	70.0	16.0	8.0	2.0	4.0	100.0( 50)		2.0
도농복합	62.9	25.7	5.7	5.7	0.0	100.0( 35)	na	1.5
농어촌	70.6	14.7	5.9	2.9	5.9	100.0( 34)		2.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할 수 없음.

<표 V-1-11>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지원과 인원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다문화 지원과 인원이 1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명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평균인원은 농어촌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 지역이 1.4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도농복합 지역이 1.2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1〉 다문화 지원과 인원: 지방자치단체

단위: %(기관), 명

구분	1명	2명	3명	5명 이상	계	$\chi^2(df)$	평균
전체	71.4	20.0	5.7	2.9	100.0(35)		1.4
도시	85.7	7.1	0.0	7.1	100.0(14)		1.4
도농복합	77.8	22.2	0.0	0.0	100.0( 9)	na	1.2
농어촌	45.5	36.4	18.2	0.0	100.0(11)		1.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할 수 없음.

## 2) 시행 사업 및 예산

<표 V-1-13>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예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한국어교육 사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된 방문교육사업, 문화이해교육, 가족통합교육, 상담서비스,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역량 개발, 다국어관 생활·정책정보 가이드북 발간, 보육시설 다문화 프로그램 실시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산을 보면, 방문교육사업이 평균 200,568천원으로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다문화 프로그램 실시지원이 평균 198,296천원으로 두 번째로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3〉 지원사업시행 현황 및 예산(2010): 지방자치단체

단위: %(기관), 천원

구분	시행비율	예산
한국어교육	92.0	54,013
방문 교육 사업	88.4	200,568
문화이해교육	72.5	24,964
가족통합교육	66.7	23,322
상담 서비스	65.9	34,952
다국어관 생활·정책정보 가이드북 발간	21.7	27,631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63.0	36,211
보육시설 다문화 프로그램 실시 지원	13.0	198,296
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역량 개발	23.2	17,923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46.4	41,779
계	100.0(138)	100.0( 55)

<표 V-1-14>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지역별로 살펴본 것이다.

모든 사업의 경우에 도농복합의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가족통합교육과 방문 교육 사업의 경우만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지원하는 비중이 높았고 나머지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 농어촌 지역보다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4〉 지역별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단위: %(기관)

구분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한국어교육	92.0	90.9	95.0	90.2
방문 교육 사업	88.4	76.4	97.5	95.1
문화이해교육	72.5	69.1	85.0	65.9
가족통합교육	66.7	61.8	75.0	65.9
상담 서비스	65.9	69.1	75.0	56.1
다국어판 생활·정책정보 가이드북 발간	21.7	27.3	30.0	7.3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63.0	60.0	77.5	53.7
보육시설 다문화 프로그램 실시 지원	13.0	12.7	20.0	7.3
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역량 개발	23.2	25.5	32.5	12.2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46.4	47.3	52.5	41.5
기타	48.6	43.6	50.0	51.2
계	100.0(138)	100.0( 55)	100.0( 40)	100.0( 41)

〈표 V-1-15〉 지역별 지원사업 예산: 지방자치단체

단위: 천원

구분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한국어교육	54,013	72,171	65,589	18,303
방문교육사업	200,568	259,517	233,079	106,213
문화이해 교육	24,964	30,395	32,763	8,517
가족통합교육	23,322	28,053	28,165	12,213
상담 서비스	34,952	55,946	29,097	1,710
다국어판 생활·정책 정보 가이드북 발간	27,631	34,121	23,304	6,000
의사소통 지원을위한 통·번역서비스	36,211	41,529	38,316	16,438
보육시설 다문화 프로그램 실시지원	198,296	130,540	266,186	129,600
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역량개발	17,923	29,265	7,958	3,985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41,779	42,007	60,962	21,058

## 라. 서비스 전달 인력

### 1) 지도사

#### 가) 배경 및 담당업무

<표 V-1-16>은 지도사 소지 자격 및 배경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지도사가 되는 경우가 각각 46.6%, 40.2%로 가장 많았고 전직 교사인 경우가 각각 30.1%, 33.0%로 두 번째로 많았다. 도시 지역의 경우는 전직 교사인 경우가 56.5%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사의 경우가 39.1%로 두 번째로 많아 대체적으로 전체 지역에서 사회복지사와 전직 교사가 지도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6〉 지도사의 소지자격 및 배경(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전직 교사	치료사	건강 가정사	사회 복지사	상담사	가정 복지사	결혼 이민자	기타 사회활동가	계
전체	40.6	11.3	12.4	41.7	19.9	2.3	3.8	38.0	100.0(266)
도시	56.5	12.0	10.9	39.1	20.7	2.2	5.4	29.3	100.0( 92)
도농복합	30.1	12.3	15.1	46.6	23.3	2.7	1.4	38.4	100.0( 73)
농어촌	33.0	10.3	10.3	40.2	17.5	2.1	4.1	45.4	100.0( 97)

<표 V-1-17>은 지도사가 담당하는 가정 수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방문교육지도사가 담당하는 가정 수가 4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5개 이상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평균 담당 가정 수는 도시와 도농복합이 5.0개로 많은 편이었고, 농어촌 지역이 4.1개로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V-1-17〉 지도사의 담당 가정 수

단위: %(명), 가정

구분	1~3개	4개	5개 이상	계	$\chi^2(df)$	평균
전체	3.0	89.6	7.4	100.0(202)		4.6
도시	6.8	86.3	6.8	100.0( 73)		5.0
도농복합	0.0	87.2	12.8	100.0( 47)	3.015(4)	5.0
농어촌	1.3	93.8	5.0	100.0( 80)		4.1

<표 V-1-18>은 지도사가 담당하는 영유아 수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 5명 미만인 경우가 3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도시는 5명 미만이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많고 15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29.7%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리고 도농복합은 15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고 5~10명이라는 응답이 29.2%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농어촌의 경우는 5~10명이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고 5명 미만이라는 응답이 30.3%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지도사가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의 평균은 도농복합이 11.4명으로 가장 많고 농어촌이 8.9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V-1-18> 지도사의 담당 영유아수

단위: %(명), 명

구분	5명 미만	5~10명	10~15명	15명 이상	계	$\chi^2(df)$	평균
전체	32.3	26.0	16.7	25.0	100.0(96)		9.6
도시	43.2	16.2	10.8	29.7	100.0(37)		9.2
도농복합	20.8	29.2	12.5	37.5	100.0(24)	12.214(6)	11.4
농어촌	30.3	33.3	24.2	12.1	100.0(33)		8.9

<표 V-1-19>는 방문교육지도사가 한 주에 한 가정을 몇 회나 방문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2회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V-1-19> 방문교육지도사의 주당 1가정 방문 횟수

단위: %(명), 회

구분	2회	4회	8회	16회	계	$\chi^2(df)$	평균
전체	93.9	0.5	5.2	0.5	100.0(213)		2.4
도시	93.2	0.0	6.8	0.0	100.0( 73)		2.4
도농복합	96.4	0.0	3.6	0.0	100.0( 55)	na	2.2
농어촌	92.7	1.2	4.9	1.2	100.0( 82)		2.5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할 수 없음.

<표 V-1-20>은 방문교육지도사가 한 번 가정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2시간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 번 가정 방문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118.5분에서 119.6분으로 지역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sup>10)</sup>

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침상 1회당 지도시간은 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음.

〈표 V-1-20〉 방문교육지도사의 1회당 지도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1시간	2시간	2시간 초과	계	$\chi^2(df)$	평균
전체	2.9	93.8	3.3	100.0(209)		119.0
도시	4.2	90.1	5.6	100.0(71)		118.6
도농복합	3.7	94.4	1.9	100.0(54)	18.214(4)*	118.5
농어촌	1.2	96.3	2.5	100.0(81)		119.6

\* $p < .05$ 

〈표 V-1-21〉은 언어지도사의 주당 지도 횟수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2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3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주당 평균 지도 횟수는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가 6.9회로 가장 많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가 2.6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1〉 언어지도사의 주당 지도 횟수

단위: %(명), 회

구분	1회	2회	3회 이상	계	$\chi^2(df)$	평균
전체	9.5	65.1	25.4	100.0(63)		4.9
도시	4.2	79.2	16.7	100.0(24)		4.5
도농복합	14.3	47.6	38.1	100.0(21)	na	6.9
농어촌	11.8	70.6	17.6	100.0(17)		2.6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할 수 없음.

〈표 V-1-22〉는 언어지도사의 1회당 수업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40분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언어지도사의 1회당 수업 평균 시간은 도시 지역의 경우가 47.1분으로 가장 많았고,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가 41.7분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별 차이 없었다.

〈표 V-1-22〉 언어지도사의 1회당 수업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40분	45분~1시간	2시간	계	$\chi^2(df)$	평균
전체	87.3	7.9	4.8	100.0(63)		44.7
도시	87.5	6.7	6.7	100.0(24)		47.1
도농복합	85.7	14.3	0.0	100.0(21)	6.234(4)	41.7
농어촌	88.2	5.9	5.9	100.0(17)		45.3

나) 보수교육

<표 V-1-23>은 지도사가 보수교육을 몇 시간이나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20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50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고 도농복합 지역은 40~50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보수교육을 받은 평균 시간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가 46.7시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의 경우가 37.5시간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3> 지도사의 보수교육 경험

단위: %(명), 시간

구분	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계	$\chi^2(df)$	평균
전체	33.0	13.7	11.5	22.0	19.8	100.0(227)		41.2
도시	34.1	12.2	13.4	19.5	20.7	100.0( 82)		37.5
도농복합	34.9	12.7	9.5	25.4	17.5	100.0( 63)	na	39.9
농어촌	30.8	16.7	10.3	20.5	21.8	100.0( 78)		46.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할 수 없음.

<표 V-1-24>는 지도사가 1년에 보수교육을 몇 회나 받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지도사가 1년에 2회 보수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도시와 도농복합 지역은 5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농어촌의 경우는 1년에 4회 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평균적인 교육 횟수는 도농복합 지역이 연 3회로 가장 많았고, 농어촌 지역이 연 2.7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4> 지도사의 연간 보수교육 횟수

단위: %(명), 회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계	$\chi^2(df)$	평균
전체	11.0	52.7	9.8	12.7	13.9	100.0(245)		2.8
도시	8.2	54.1	12.9	11.8	12.9	100.0( 85)		2.8
도농복합	15.2	45.5	10.6	9.1	19.7	100.0( 66)	na	3.0
농어촌	11.1	55.6	6.7	15.6	11.1	100.0( 90)		2.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할 수 없음.

## 2) 희망유아교육사

### 가) 담당업무

<표 V-1-25>는 희망유아교육사가 담당하는 가정 수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의 경우 1~2개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고,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는 3~4개라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5~9개라는 응답이 59.1%로 가장 많아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유아교육사가 담당하는 가정의 평균수는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가 5.6개로 가장 많았고, 도시지역의 경우가 4.9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5> 희망유아교육사의 담당 가정 수

단위: %(명), 가정

구분	1~2가정	3~4가정	5~9가정	10가정이상	계	$\chi^2(df)$	평균
전체	28.9	23.7	31.6	15.8	100.0(76)		5.2
도시	37.5	22.5	25.0	15.0	100.0(40)	na	4.9
도농복합	28.6	35.7	7.1	28.6	100.0(14)		5.6
농어촌	13.6	18.2	59.1	9.1	100.0(22)		5.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할 수 없음.

<표 V-1-26>은 희망유아교육사가 담당하는 영유아 수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와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 1~2명이라는 응답이 각각 33.3%, 37.5%로 가장 많았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5~9명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다. 희망유아교육사가 담당하는 평균 영유아 수는 도시 5.1명, 도농복합 5.3명, 농어촌 7.0명으로 농어촌으로 갈수록 희망유아교육사가 담당하는 영유아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6> 희망유아교육사의 담당 영유아 수

단위: %(명), 명

구분	1~2명	3~4명	5~9명	10~14명	15명이상	계	$\chi^2(df)$	평균
전체	28.2	22.4	27.1	20.0	2.4	100.0(85)		5.7
도시	33.3	24.4	22.2	17.8	2.2	100.0(45)		5.1
도농복합	37.5	31.3	6.3	18.8	6.3	100.0(16)	na	5.3
농어촌	12.5	12.5	50.0	25.0	0.0	100.0(24)		7.0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할 수 없음.

<표 V-1-27>은 희망유아교육사가 한 주당 수업을 몇 회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

과이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주당 2회 수업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도시와 도농복합의 경우는 주당 1회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으나 농어촌의 경우는 주당 3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아 지역별 편차를 보여주었다. 희망유아교육사의 평균 주당 수업 횟수는 농어촌 지역이 2.9회로 가장 많았고, 도농복합 지역이 1.7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7> 희망유아교육사의 주당 수업 횟수

단위: %(명), 회

구분	1회	2회	3회 이상	계	$\chi^2(df)$	평균
전체	28.3	59.8	12.0	100.0(92)		2.4
도시	28.3	60.9	10.9	100.0(46)		2.5
도농복합	43.8	50.0	6.3	100.0(16)	na	1.7
농어촌	16.7	62.5	20.8	100.0(24)		2.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할 수 없음.

<표 V-1-28>은 희망유아교육사의 1회 수업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1회에 60분 수업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30~6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희망유아교육사의 평균 수업시간은 도농복합 지역이 75.0분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 지역이 64.5분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8> 희망유아교육사의 1회당 수업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30~60분미만	60분	80~90분	계	$\chi^2(df)$	평균
전체	33.7	54.7	11.6	100.0(92)		68.8
도시	37.0	54.3	8.7	100.0(46)		64.5
도농복합	31.3	37.5	31.3	100.0(16)	na	75.0
농어촌	29.2	66.7	4.2	100.0(24)		69.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할 수 없음.

#### 나) 연수

<표 V-1-29>는 희망유아교육사의 연수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10~19시간 연수를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도시와 도농복합의 경우는 10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으나 농어촌의 경

우는 40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아 지역별 편차를 보여주었다. 희망유아교육사의 평균 연수시간은 농어촌 지역이 31.3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도농복합 지역이 17.9시간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9〉 희망유아교육사의 연수 경험

단위: %(명), 시간

구분	10시간 미만	10~19 시간	20~29 시간	30~39 시간	40시간 이상	계	$\chi^2(df)$	평균
전체	23.4	32.8	15.6	17.2	10.9	100.0(64)		22.2
도시	24.2	27.3	18.2	24.2	6.1	100.0(33)		20.2
도농복합	18.2	45.5	9.1	18.2	9.1	100.0(11)	na	17.9
농어촌	18.8	37.5	18.8	0.0	25.0	100.0(16)		31.3

〈표 V-1-30〉은 희망유아교육사의 연수 횟수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 지역에서는 3~4회 받았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고,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는 5~9회 받았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1~2회 받았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아 지역별 편차를 보여주었다. 희망유아교육사의 평균 연수 횟수는 도농복합 지역이 6.1회로 가장 많았고, 농어촌 지역이 2.6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0〉 희망유아교육사의 연수 횟수

단위: %(명), 회

구분	1~2회	3~4회	5~9회	5회 이상	계	$\chi^2(df)$	평균
전체	46.2	33.8	12.3	7.7	100.0(65)		3.8
도시	35.3	50.0	5.9	8.8	100.0(34)		3.9
도농복합	30.0	10.0	40.0	20.0	100.0(10)	na	6.1
농어촌	70.6	17.6	11.8	0.0	100.0(17)		2.6

### 3) 제공 서비스

〈표 V-1-31〉은 지도사와 희망유아교육사가 다문화 가정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지도사는 양육 및 부모자녀 관계 상담, 부모 대상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의 안전교육, 자녀 학습 및 유치원 생활지도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희망유아교육사는 자녀 학습 및 유치원 생활지도, 한국 생활문화

정보 제공 및 지도, 다문화가족의 안전교육, 양육 및 부모자녀 관계 상담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V-1-31〉 지도사 및 희망유아교육사의 제공 서비스

단위: %

구분	전체	지도사	희망유아교육사
부모대상한국어교육	45.4	54.2	18.7
양육및부모자녀관계상담	59.3	67.6	34.1
기타 상담(가족관계, 체류 및 법률 등)	16.1	18.5	8.8
임신, 출산정보 제공	5.5	7.3	-
자녀 건강 및 영양지도	22.4	27.6	6.6
자녀학습및유치원(보육시설)생활지도	45.6	31.3	89.0
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38.5	26.9	73.6
다문화 이해교육	9.6	8.0	14.3
다문화가족의 안전교육	38.3	38.5	37.4
한국생활문화 정보 제공 및 지도	38.5	26.9	73.6
취업 및 창업 지원 교육	2.7	3.3	1.1

## 2.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대한 인식

본 절에서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 면담내용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가. 행정체계에 대한 인식

#### 1) 인력

#####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표 V-2-1>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모든 지역에서 별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와 도농복합의 경우에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농어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절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어촌의 경우는 도시나 도농복합의 경우에 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상적인 인력규모와 현실의 차이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 인력규모의 적절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위: %(기관)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계	$\chi^2(df)$
전체	28.2	45.8	21.4	4.6	100.0(131)	
도시	44.4	44.4	11.1	0.0	100.0( 36)	
도농복합	30.0	50.0	14.0	6.0	100.0( 50)	18.283**
농어촌	13.3	42.2	37.8	6.7	100.0( 45)	

\*\* $p < .01$ 

〈표 V-2-2〉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적절한 인력규모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응답자는 종사가 3-4명, 방문교육지도사 10-20명 이하, 언어지도사 1명, 통번역사 2명, 상담원 1명, 기타 1명 정도의 인력을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V-2-2〉 적절한 인력규모에 대한 인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위: %(기관), 명

인력종류	인력규모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종사자	2명이하	18.8	17.1	17.4
	3명	28.1	34.1	39.1
	4명	28.1	34.1	17.4
	5명이상	25.0	14.6	26.1
	계	100.0(32)	100.0(41)	100.0(23)
	평균	3.8	3.4	3.7
방문교육지도사	10명이하	37.5	18.4	28.6
	10~20명 이하	43.8	33.5	47.6
	20명 이상	18.8	42.1	23.8
	계	100.0(32)	100.0(38)	100.0(21)
	평균	10.8	16.2	12.6
언어지도사	1명	51.9	78.4	70.0
	2명	33.3	21.6	25.0
	3명이상	14.8	0.0	5.0
	계	100.0(27)	100.0(37)	100.0(20)
	평균	1.7	1.2	1.4
통번역사	1명	17.9	14.6	9.1
	2명	28.6	34.1	63.6
	3명	25.0	24.4	22.7
	4명이상	28.6	26.8	4.5
	계	100.0(28)	100.0(41)	100.0(22)
	평균	3.0	2.9	2.2

인력종류	인력규모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상담원	1명	66.7	64.9	77.3
	2명	20.0	27.0	18.2
	3명이상	13.3	8.1	4.5
	계	100.0(30)	100.0(37)	100.0(22)
	평균	1.6	1.5	1.3
기타	1명	66.7	76.9	77.8
	2명	33.3	7.7	22.2
	3명이상	0.0	15.4	0.0
	계	100.0(9)	100.0(13)	100.0(9)
	평균	1.3	3.2	1.2

<표 V-2-3>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의 경력 및 자격이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 어느 정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의 경력 및 자격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2-3> 인력의 경력 및 자격 적절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위: %(기관)

구분	매우 적절하지 않음	별로 적절하지 않음	어느 정도 적절함	매우 적절함	계	$\chi^2(df)$
전체	1.6	4.8	69.4	24.2	100.0(124)	
도시	0.0	8.6	74.3	17.1	100.0( 35)	
도농복합	2.2	4.3	65.2	28.3	100.0( 46)	3.687(6)
농어촌	2.3	2.3	69.8	25.6	100.0( 43)	

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표 V-2-4>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다문화 담당 인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다문화 담당 인원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도농복합과 농어촌의 경우는 매우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아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담당 인원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 다문화 담당 인력의 충분성: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기관)

구분	매우 불충분	불충분	충분	매우 충분	계	$\chi^2(df)$
전체	26.1	56.9	16.3	0.7	100.0(153)	
도시	17.0	57.4	23.4	2.1	100.0( 47)	
도농복합	34.4	40.6	25.0	0.0	100.0( 32)	90.737(6)***
농어촌	27.9	64.7	7.4	0.0	100.0( 68)	

\*\*\* $p<.001$ 

## 다) 지방자치단체

〈표 V-2-5〉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담당 인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다문화 담당 인원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매우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아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담당 인원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5〉 다문화 담당 인력의 충분성: 지방자치단체

단위: %(기관)

구분	매우 불충분	불충분	충분	매우 충분	계	$\chi^2(df)$
전체	30.0	53.8	15.4	0.8	100.0(130)	
도시	34.6	48.1	15.4	1.9	100.0( 52)	
도농복합	28.2	61.5	10.3	0.0	100.0( 39)	4.596(6)
농어촌	24.3	54.1	21.6	0.0	100.0( 37)	

면담내용 분석에서도 설문조사 분석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행정 인력이나, 실제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실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도 그것을 시행할 인력이 없으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담당 행정 인력 확보와 함께 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진에 대한 복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이에요. 앞으로 다문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지 좋은 아이디어도 프로그램도 많을 텐데, 우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거. (S시교육청 행정가, 집단면담)

## 2) 네트워크 및 협력

<표 V-2-6>은 각 부처나 기관에서 다른 부처나 기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서비스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다른 부처나 기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으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아 전체적으로 타 부처나 기관의 다문화 가정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잘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6> 다른 부처/기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서비스 인지 정도

단위: %(기관)

구분	전혀 모름	잘 모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계	$\chi^2(df)$
전체	1.2	17.1	66.6	15.2	100.0(434)	
센터	0.0	6.6	76.6	16.8	100.0(137)	
교육청	1.9	25.3	63.3	9.5	100.0(158)	26.645(6)***
지자체	1.4	18.0	60.4	20.1	100.0(139)	

\*\*  $p < .001$

<표 V-2-7>은 각 부처나 기관에서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 사이에 네트워크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기관 간 네트워크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아 전체적으로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7>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의 필요 정도

단위: %(기관)

구분	필요 없음	어느 정도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	$\chi^2(df)$
전체	0.9	24.3	74.8	100.0(432)	
센터	0.0	28.1	71.9	100.0(135)	
교육청	1.3	22.2	76.6	100.0(158)	3.292(4)
지자체	1.4	23.0	75.5	100.0(139)	

<표 V-2-8>은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있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으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구성되어있지 않다는 응답이 구성되어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구성되어 있다는 응답이 86.1%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구성되어있다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을 보여 기관 간 편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8>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 구성 여부

단위: %(기관)

구분	구성	미구성	계	$\chi^2(df)$
전체	63.2	36.8	100.0(432)	
센터	86.1	13.9	100.0(137)	
교육청	48.7	51.3	100.0(158)	47.501(2)***
지자체	56.9	43.1	100.0(137)	

\*\*\* $p < .001$

<표 V-2-9>는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 간 연계와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행정기관은 전체적으로 높음, 보통, 낮음의 순서로 응답이 높게 나와 지원기관 간 연계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행정기관과 높은 연계·협력 정도를 보이는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복지기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병원·보건(지)소, 종교·여성·기타 민간단체, 상담소, 도서관도 전체적으로 보통, 높음, 낮음의 순서로 응답이 높게 나와 지원기관 간 연계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 복지기관/시설, 병원, 종교, 상담소, 도서관 등과의 연계에서도 낮음, 없음, 보통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협력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보통, 없음, 낮음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왔고, 농업기술센터는 없음, 보통, 낮음 순으로, 문화원은 낮음, 보통, 없음 순으로, 민간기업은 보통, 낮음, 없음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와 타 지원 기관에 비해 지원기관 간 연계와 협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9〉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연계·협력 정도

단위: %(기관)

구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지원센터				
	없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없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없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전체	1.6	9.7	29.0	59.7	100.0 (186)	19.7	13.0	26.4	40.9	100.0 (193)	28.1	22.2	35.3	14.4	100.0 (167)
센터	0.0	4.4	42.2	53.3	100.0 ( 45)	14.6	13.4	17.1	54.9	100.0 ( 82)	22.7	17.3	38.7	21.3	100.0 ( 75)
교육청	2.9	21.4	37.1	38.6	100.0 ( 70)	32.0	24.0	40.0	4.0	100.0 ( 50)	34.0	36.0	22.0	8.0	100.0 ( 50)
지자체	1.4	1.4	12.7	84.5	100.0 ( 71)	16.4	3.3	27.9	52.5	100.0 ( 61)	31.0	14.3	45.2	9.5	100.0 ( 42)
구분	행정기관					지역사회 복지기관					교육청				
	없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없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없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전체	2.3	13.6	26.6	57.5	100.0 (214)	6.3	18.8	47.8	27.1	100.0 (207)	13.9	16.7	42.2	27.2	100.0 (180)
센터	0.9	1.8	20.0	77.3	100.0 (110)	4.2	15.6	50.0	30.2	100.0 ( 96)	12.4	16.2	46.7	24.8	100.0 (105)
교육청	6.6	36.1	37.7	19.7	100.0 ( 61)	16.0	26.0	48.0	10.0	100.0 ( 50)	5.3	10.5	47.4	36.8	100.0 ( 19)
지자체	0.0	11.6	27.9	60.5	100.0 ( 43)	1.6	18.0	44.3	36.1	100.0 ( 61)	19.6	19.6	32.1	28.6	100.0 ( 56)
구분	학교					병원·보건(지)소					종교·여성·기타민간단체				
	없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없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없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전체	7.6	15.2	45.2	31.9	100.0 (210)	9.6	19.7	39.0	31.7	100.0 (218)	12.3	21.2	41.9	24.6	100.0 (203)
센터	5.1	18.4	52.0	24.5	100.0 ( 98)	0.9	12.7	44.5	41.8	100.0 (110)	8.3	15.6	43.8	32.3	100.0 ( 96)
교육청	6.7	6.7	38.3	48.3	100.0 ( 60)	29.2	35.4	33.3	2.1	100.0 ( 48)	22.9	39.6	33.3	4.2	100.0 ( 48)
지자체	13.5	19.2	40.4	26.9	100.0 ( 52)	10.0	20.0	33.3	36.7	100.0 ( 60)	10.2	15.3	45.8	28.8	100.0 ( 59)
구분	상당소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없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없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없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전체	11.9	25.4	34.3	28.4	100.0 (201)	37.6	17.8	27.4	17.3	100.0 (197)	14.9	20.1	38.1	26.8	100.0 (194)
센터	3.9	19.4	43.7	33.0	100.0 (103)	32.3	13.5	33.3	20.8	100.0 ( 96)	13.0	19.6	39.1	28.3	100.0 ( 92)
교육청	30.4	43.5	19.6	6.5	100.0 ( 46)	51.1	34.0	12.8	2.1	100.0 ( 47)	16.3	24.5	36.7	22.4	100.0 ( 49)
지자체	11.5	21.2	28.8	38.5	100.0 ( 52)	35.2	11.1	29.6	24.1	100.0 ( 54)	17.0	17.0	37.7	28.3	100.0 ( 53)

구분	문화원					민간기업					기타기관				
	없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없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없음	낮음	보통	높음	계
전체	28.7	32.0	29.8	9.4	100.0 (181)	22.9	27.9	31.3	17.9	100.0 (179)	0.0	0.0	50.0	50.0	100.0 ( 12)
센터	33.3	27.4	29.8	9.5	100.0 ( 84)	18.1	19.3	38.6	24.1	100.0 ( 83)	0.0	0.0	33.3	66.7	100.0 ( 6)
교육청	25.5	40.4	25.5	8.5	100.0 ( 47)	42.2	37.8	17.8	2.2	100.0 ( 45)	0.0	0.0	50.0	50.0	100.0 ( 2)
지자체	24.0	32.0	34.0	10.0	100.0 ( 50)	13.7	33.3	31.4	21.6	100.0 ( 51)	0.0	0.0	75.0	25.0	100.0 ( 4)

<표 V-2-10>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관련 다른 기관 및 단체와 어떠한 내용을 연계 및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기관별 자세한 내용은 <부록 8>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병원·보건(지)소와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연계, 협력하는 비율이 높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행정기관, 지역사회 복지기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도서관, 문화원, 민간기업 등과는 서비스 간접 지원의 방식으로 연계, 협력하고 있었다.

<표 V-2-10> 지역 내 타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연계·협력 방식

단위: %

구분	서비스 직접제공	서비스 간접 지원	행사, 사업 공동주최	클라이언트 의뢰	정보 교환	기자재 교환	기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3.6	33.3	31.4	10.5	32.7	3.9	0.7
건강가정지원센터	33.6	42.0	35.9	20.6	38.2	17.6	2.3
이주여성지원센터	15.6	35.6	14.4	34.4	38.9	2.2	-
행정기관	30.3	53.1	37.1	21.1	41.7	6.9	0.6
지역사회복지기관	24.8	48.4	22.9	18.5	40.8	6.4	1.9
교육청	22.0	35.8	23.6	8.9	46.3	1.6	3.3
학교	45.8	33.3	15.7	13.7	34.6	0.7	5.2
병원·보건(지)소	40.2	37.8	15.9	29.3	29.3	1.8	1.2
종교·여성·민간단체	25.9	44.6	27.7	14.4	31.1	4.3	2.2
상담소	22.8	30.1	8.8	50.7	39.0	2.2	0.7
농업기술센터	29.5	36.4	23.9	5.7	23.9	4.5	1.1
도서관	32.8	42.2	21.1	4.7	28.1	6.3	1.6
문화원	12.3	46.9	14.8	7.4	40.7	3.7	2.5
민간기업	21.1	44.2	27.4	5.3	22.1	7.4	6.3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 도움 정도에 대한 응답은 <표 V-2-11>과 같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1%로 대부분이었으며, 기관별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V-2-11>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 도움 정도

단위: %(기관)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어느 정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계	$\chi^2(df)$
전체	0.8	8.0	63.6	27.7	100.0(264)	
센터	0.9	4.3	46.1	48.7	100.0(115)	
교육청	0.0	13.9	79.2	6.9	100.0( 72)	49.518***
지자체	1.3	7.8	75.3	15.6	100.0( 77)	

\*\* $p < .001$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내용은 아래 <표 V-2-12>와 같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주요 연계 내용은 공동사업 및 행사진행, 상담·교육·강사·장소 연계, 정보 교환 등의 순이었고, 이주여성인권센터와의 주요 연계내용은 상담, 대상자 연계, 정보교환 등의 순이었다. 행정기관과의 주요 연계내용은 행사·사업·프로그램·교육 등의 지원, 대상자 연계, 정보교환 등의 순이고,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주요 연계내용은 행사 및 사업지원, 정보교환, 강사연계 등의 순이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내용은 강사 연계 및 파견, 행사 공동주최 및 사업지원, 교육지원 등의 순이고, 학교와의 연계내용은 다문화이해교육 강사파견, 언어발달지원, 행사 공동주최 등의 순이었다.

병원·보건(지)소와의 연계내용은 출산·육아·보건 교육, 무료건강검진, 무료 진료 등의 순이었고, 종교·여성·기타민간단체와의 연계내용은 행사 공동진행, 후원·결연·멘토 연결, 자원봉사 연계 등의 순이었다. 상담소(법률, 성폭력)와의 연계는 상담연계, 법률 상담 및 교육, 대상자 연계 등의 순이고,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내용은 행사 및 사업 지원, 농업기술교육 지원, 요리교실 프로그램 등의 순이었다. 도서관(평생학습관)과의 연계내용은 교육지원 및 연계, 행사 공동 주최, 장소 제공 등의 순이고, 문화원과의 연계내용은 행사 및 사업 지원, 교육 연계, 정보교환 등의 순이었다. 민간기업과의 연계내용은 각종 후원 및 사업비 지원, 행사 및 사업 지원, 취업 지원 등의 순이었고, 기타 연계내용으로는 대상자 의뢰, 예절교육, 사업비 지원, 외국인 도움센터 지정 등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표 V-2-12〉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 연계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위: 건

연계·협력 기관	주요 연계 내용	계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사업, 행사 진행(10), 상담, 교육, 강사, 장소 연계(4), 정보교환(3)	17
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10), 대상자연계(4), 정보교환(2)	16
행정기관	행사, 사업, 프로그램, 교육 등 지원(22), 대상자 연계(8), 정보교환(5)	35
지역사회 복지기관	행사 및 사업지원(15), 정보교환(3), 강사연계(3)	21
교육청	강사(원어민, 다문화) 연계 및 파견(6), 행사 공동주최 및 사업지원(4), 교육지원(3)	13
학교(유치원, 보육시설 포함)	다문화이해교육 강사파견(13), 언어발달지원(3), 행사 공동주최(2)	18
병원·보건(지)소	출산, 육아, 보건 교육(10), 무료건강검진(8), 무료진료(5)	23
종교·여성·기타민간단체	행사 공동진행(13), 후원, 결연, 멘토 연결(5), 자원봉사 연계(2)	20
상담소(법률, 성폭력)	상담연계(20), 법률 상담 및 교육(4), 대상자 연계(4)	28
농업기술센터	행사 및 사업 지원(6), 농업기술교육 지원(5), 요리교실 프로그램(4)	15
도서관(평생학습관)	교육 지원, 연계(7), 행사 공동 주최(4), 장소 제공(4)	15
문화원	행사 및 사업 지원(6), 교육 연계(2), 정보교환(2)	10
민간기업	각종 후원 및 사업비 지원(10), 행사 및 사업 지원(8), 취업 지원(3)	21
기타	대상자 의뢰, 예절교육, 사업비 지원, 외국인도움센터 지정 등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협력 내용은 아래 <표 V-2-13>과 같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주요 연계내용은 강사지원, 상담 지원, 한글 교육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해 교육, 교재·교구 등 자료 제공, 정보 지원 등의 순이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주요 연계 내용은 강사지원과 학부모 지원, 홍보강화와 이해교육이며, 이주여성인권센터의 연계내용은 강사지원, 강사 양성, 상담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기관과의 연계 내용으로는 정보 교환, 행사 지원, 멘토링 지원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연계는 정보교환, 행사 지원 및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와의 연계 내용으로는 상담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습 지원, 이해 교육, 멘토링 서비스 등의 순이었다.

병원 및 보건(지)소와의 연계 내용으로는 건강 상담, 무료 건강 검진, 지역 내 종교, 여성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 내용으로는 멘토링 서비스, 이해 교육, 학습 지원,

상담 지원, 행사 협조 및 지원사업, 체험 교육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상담소와의 연계 내용으로는 행사 협조 및 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 내용으로는 협의체 구성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도서관(평생학습관)과의 연계 내용으로는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부모 지원, 도서 및 독서 지원, 한글 교육 등의 순이었다. 문화원과의 연계 내용으로는 학부모 지원, 정보 지원, 한글 교육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민간기업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의 연계 내용으로는 사업 보조, 체험 캠프, 기타 응답으로는 멘토링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캠프 운영이 있었다.

〈표 V-2-13〉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 연계 내용: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건

연계·협력 기관	주요 연계 내용	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사 지원(4), 상담 지원(4), 한글 교육(4), 이해 교육(3), 교재교구 등 자료 제공(3), 정보 지원(2), 기타 응답(10)	30
건강가정지원센터	강사 지원(2), 부모 지원(2), 홍보 강화(1), 이해 교육(1)	6
이주여성인권센터	강사 지원(2), 강사 양성(1), 상담 지원(1)	4
행정기관	정보의 교환(4), 행사 지원(3), 멘토링 지원(2), 기타(8)	17
지역사회 복지기관	정보교환(3), 행사 지원(2), 협의체 구성(2), 기타 응답(3)	10
학교(유치원, 보육시설 포함)	상담 지원(4), 학습 지원(3), 이해 교육(3), 멘토링 서비스(2), 기타 응답(11)	23
병원 및 보건(지)소	건강 상담(1), 무료 건강 검진(1)	2
종교, 여성 및 민간단체	멘토링 서비스(1), 이해 교육(1), 학습 지원(1), 상담 지원(1), 행사 협조 및 지원사업(1), 체험 교육(1)	6
상담소	행사 협조 및 지원사업(1)	1
농업기술센터	협의체 구성(1)	1
도서관(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지원(3), 학부모 지원(2), 도서 및 독서 지원(2), 한글 교육(1)	8
문화원	학부모 지원(1), 정보 지원(1), 한글 교육(1)	3
민간기업	사업 보조(1), 체험 캠프(1)	2
기타	멘토링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캠프 운영	

지역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협력 내용은 아래 <표 V-2-14>와 같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 내용으로는 다문화 지원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연계, 직영 운영 등의 순이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연계 내용으로는 프로그램 연계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담, 교육, 다문화 지원 등의 순이었다. 이주여성 인권센터의 연계 내용으로는 상담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연계, 예산보조금

및 실적공유의 순이었다. 행정기관(시/군청, 읍/면/동 주민지원센터)의 연계 내용으로는 교육, 예산지원금, 대상자 선정, 홍보라는 답변이 공동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연계 내용으로는 교육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연계, 직·간접 후원 및 행사 등의 순이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연계 내용으로는 교육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연계, 상담 및 행사 등의 순이었다. 학교의 연계 내용으로는 교육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사 지원 및 시설확보 등의 응답이 나왔다. 병원/보건소의 연계 내용으로는 의료지원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상 선정, 통·번역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등의 응답이 나왔다. 종교·여성·기타민간단체의 연계 내용으로는 상담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연계 및 교육, 문화 등의 순이었다.

상담소의 연계 내용으로는 상담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연계, 시설확보 및 교육의 순이었다. 농업기술센터의 연계 내용으로는 농업 교육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식교육 등의 순이었다. 도서관의 연계 내용으로는 농업교육을 포함한 교육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연계, 장소 제공, 북스타트 사업 등의 순이었다. 문화원의 연계 내용으로는 교육, 문화라는 답변이 공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행사 등의 답변이 나왔다. 민간기업의 연계 내용으로는 후원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행사, 교육 및 프로그램 연계 등의 순이었다. 기타 기관의 연계 내용으로는 상담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표 V-2-14〉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 연계 내용: 지방자치단체

단위: 건

연계·협력 기관	주요 연계 내용	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지원(8), 교육(7), 프로그램 연계(5), 직영 운영(3), 기타 응답(7)	30
건강가정 지원센터	프로그램 연계(6), 상담(5), 교육(4), 다문화지원(4), 기타 응답(4)	23
이주여성 인권센터	상담(3), 프로그램 연계(2), 예산보조금(1), 실적공유(1)	7
행정기관 (시/군청, 읍/면/동 주민지원센터)	교육(3), 예산지원금(3), 대상자선정(3), 홍보(3), 기타 응답(4)	16
지역사회 복지기관	교육(8), 프로그램 연계(7), 직간접 후원(2), 행사(2), 기타 응답(4)	23
교육청	교육(7), 프로그램 연계(2), 상담(1), 통보 등(1), 행사(1)	12

연계·협력 기관	주요 연계 내용	계
학교(유치원 보육시설 포함)	교육(3), 강사 지원(1), 시설 확보(1), 기타 응답(3)	8
병원/보건소	의료지원(13), 대상 선정(2), 통번역서비스(2), 프로그램 연계(2), 기타 응답(2)	22
종교·여성·기타 민간단체	상담(5), 프로그램 연계(3), 교육(3), 문화(2), 기타 응답(10)	23
상담소	상담(5), 프로그램 연계(2), 시설확보(1), 교육(1)	9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7), 음식교육(2), 기타 응답(5)	14
도서관	교육(농업교육 포함)(8), 프로그램 연계(5), 장소 제공(3), 북스타트 사업(2), 기타 응답(4)	22
문화원	교육(3), 문화(3), 행사(2), 기타 응답(4)	12
민간기업	후원(7), 행사(3), 교육(2), 프로그램 연계(2), 기타 응답(8)	22
기타	상담(3), 기타 응답(2)	5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유에 대한 다문화 지원센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의 응답결과는 <표 V-2-15>와 같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복사업이 많다'와 '실적 위주로 인한 폐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산 부족'과 '다문화가족 인원 동원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대답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의 네트워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이해 및 인식 부족, 인력 부족, 사업의 비활성화,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 간 서비스 대상이 다름, 형식적인 지원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간 이기주의나 실적주의로 인한 네트워크 미구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업무지원 중복 및 일관성 결여 등 체계 미흡이라는 답변이 두 번째로 많았다. 기타 응답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의견차이, 일회성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음이 있었다.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의 응답결과는 <표 V-2-16>과 같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복사업을 피하고 기관 간 연계하여 통합 단일화하여 일괄적 사업 수행이 되어야 한다', '네트워크 구성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가족 사업에 관한 이해 부족', '단체 간 과열 경쟁, 이해 대립으로 네트워크 구성이 어렵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주관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관 간 협조 미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기관 간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기관 간 소통 부족, 필요성은 느끼나 담당자 업무과

다로 시간이 없음, 각 기관이 별도의 예산이 있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구성주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식 부족, 네트워크 구축 중임, 기관 간 의견 차이 및 지원사업의 비활성화, 인력부족 및 지원사업의 비체계성, 행사 위주의 사업, 예산 부족 및 기관 간 소통 부족 등의 순이었다.

〈표 V-2-15〉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단위: 건

기관	네트워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계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중복사업이 많음- 쉬운 사업, 검증된 사업 위주(3), 실적 위주로 인한 폐해 - 일회성 사업, 흥미성 사업, 경쟁관계(3), 예산 부족(2), 다문화가족 인원 동원에 도움이 안 됨(2)	10
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	기관 간 연계 부족 - 소통이 안 됨(6),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이해 및 인식 부족(4), 인력 부족(2), 사업의 비활성화(1),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 간 서비스 대상이 다름(1), 형식적인 지원(1), 전시성 행사(1), 취학 전 대상의 지원이 어려움(1)	17
지방자치단체	기관 간 이기주의나 실적주의로 인한 네트워크 미구축(10), 업무지원 중복(2), 일관성 결여 등 체계 미흡(2), 다문화 가정의 의견차이(1), 일회성 사업(1),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음(1)	17

〈표 V-2-16〉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

단위: 건

기관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	계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중복사업을 피하고 기관 간 연계하여 통합 단일화하여 일괄적 사업수행이 되어야 함(4), 네트워크 구성 계획을 가지고 있음(4), 다문화가족 사업에 관심, 이해 부족(4), 단체 간 과열 경쟁, 이해 대립으로 네트워크 구성이 어려움(4), 다문화 사업 기관 부족, 파악 부족(2)	18
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주관 기관이 없음(26), 기관 간 협조 미비(18),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기관 간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15), 기관 간 소통 부족(13), 필요성은 느끼나 담당자의 업무과다로 시간이 없음(6), 각 기관이 별도의 예산이 있어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함(3), 대상 다문화 가정의 부족(2),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 의지 부족(2), 기타(9)	92
지방자치단체	구성주체가 없음(15), 인식 부족(9), 네트워크 구축 중임(7), 기관간 의견 차이(6), 지원사업 비활성화(6), 인력 부족(5), 지원사업의 비체계성(5), 행사 위주의 사업(4), 예산 부족(2), 기관 간 소통 부족(2), 기타(4)	65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의 응답결과는 <표 V-2-17>과 같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 '중복사업, 중복 서비스, 중복 프로그램을 방지한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정보 교환 및 사례, 대상자를 공유한다.', '다문화 가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한다.' 등의 순으로 많은 답변이 나타났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의 네트워크의 역할로는 정보 교환 및 사례, 대상자를 공유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관 간 효율적 사업 조정으로 중복사업을 피하고 각 기관이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다문화사업 전반을 관장하면서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지원, 공동 협의체, 지역 특성 및 다문화 가정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체제 구성, 행사 및 사업 공동개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사업의 방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보의 공유,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기관별 전문성 증대,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체계화, 기관별 협조 방안 강구,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창구단일화, 인력공유 및 홍보 강화, 정보 공유 및 다문화 가정의 조기 사회 적응 지원 등의 순이었다.

<표 V-2-17>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 네트워크의 역할

단위: 건

기관	네트워크의 역할	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복사업, 중복 서비스, 중복 프로그램 방지(26), 정보교환 및 사례, 대상자 공유(25), 다문화 가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지원(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각 기관의 네트워크(14), 서비스 대상자의 중복, 누락 방지(9), 예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웠던 사업을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여 공동 수행(9)	97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정보교환 및 사례, 대상자를 공유(44), 기관 간 효율적 사업조정으로 중복사업을 피하고 각 기관이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26), 다문화사업 전반을 관장하면서 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21), 인적, 물적 자원을 상호 지원(20), 공동협의체(16), 지역 특성 및 다문화 가정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체제 구성(14), 행사 및 사업 공동개최(10), 체계적 지원으로 서비스 개선(6),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상담지원(5), 다문화 가정 및 일반 가정에 대한 이해 교육으로 인식 전환 꾀함(3), 종합적인 지원 마련(3), 체험활동 지원(3), 기타 응답(14)	185
지방자치단체	중복사업 방지(28), 정보 공유(22), 통합지원 서비스(16), 기관별 전문성 증대(15),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10), 서비스 체계화(8), 기관별 협조 방안 강구(5), 다양한 서비스 제공(4), 창구 단일화(4), 인력 공유(3), 홍보강화(3), 정보 공유(2), 다문화 가정의 조기 사회 적응 지원(2), 기타 응답(15)	137

면담내용 분석에서는 기관 간 네트워크와 협력의 부족으로 지원대상 파악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한 제도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원대상 명단 확보가 어려워 지원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원대상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유아 때에는 부모들이 숨기는 걸 선호하다보니깐. 자기 자녀가 다문화 가정 자녀인데도 잘 드러내지를 않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려워요. (A시교육지원청 행정가, 집단면담)

개인정보 때문에 명단이 유지하기 어렵고.. 홍보를 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하려해도 주소가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홍보나 게시판 같은 걸 하고 싶어도, 지원이나 사업이 있을 때 연결을 하고 싶어도 명단이 없으니까.. 개인정보와 인권에 대한 보안이 된다면 명단관리가 시급하고요. (D군청 행정가, 집단면담)

대상자를 못 구해서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징징거리면서 사람 보내달라... 여기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인원을 채워야 해서 그런지... (A 민간단체, 개인면담)

다문화 가정에 제공되는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하고 있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여전히 중복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 내용 자체가 중복된 경우도 있지만, 중앙 차원에서는 구별된 사업이 지역에서 지원을 하다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지원대상 입장에서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것처럼 되어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중복된 지원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인에 의해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낳기도 한다.

모든 부처가 입국 초기에 언어를 가르쳐 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할 정도로 수도 없이 많은 기관들이 초기 정착지원을 했어요. (여성가족부 행정가, 집단면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 복지 차원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이런 식으로 여러 기관에서 중복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글사랑 선생님이 학교로 가고, 희망유아교육사가 또 가고, 집으로는 방문지도사가 가고... (C 희망유아교육사, 집단면담)

지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역차별이 생긴다고 할 정도로 중복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G 방문지도사, 집단면담)

구청에서 교육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 구청별로... 다문화 가정 멘토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금 중복되는 사업이지요... 중복되는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한 가정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느 가정은 소외되어 있고... (B시 다문화교육센터 행정가, 개인면담)

## 2) 역할 분담

<표 V-2-18>은 지역 내 타 기관과 중복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모두 중복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응답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문화 가정 지원을 하다보면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기보다는 상호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실행하다보면 자신의 역할이 아닌 부분까지 해야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면담내용 분석에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중앙정부와 전달체계의 역할 분담, 영유아 대상의 육아전담 전문가와 어머니 대상의 방문지도사 간의 역할 분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표 V-2-18> 지역 내 타 기관과 중복사업 추진경험 유무

단위: %(기관)

구분	없음	있음	잘 모르겠음	계	$\chi^2(df)$
전체	28.0	53.3	18.7	100.0(428)	
센터	15.0	78.2	6.8	100.0(133)	
교육청	38.6	34.2	27.2	100.0(158)	57.250***
지자체	28.5	51.1	20.4	100.0(137)	

\*\*  $p < .001$

다문화정책 이 자체가 교육청에서 할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부분만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전반적인 것을 전부다 교육청에서 하기에는 사업자체가 특히 영유아 연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S시교육청 행정가, 집단면담)

교육은 교육파트에서 사회복지파트는 사회복지파트에서 해야 하고, 아동을 양육하고 유아나 복지적인 파트와 교육파트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C 희망유아교육사, 집단면담)

육아 전담 전문가를 따로 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략) 방문지도사는 방문지도사 역할 수행하시고 육아전담 선생님은 육아전담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C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집단면담)

교육청은 다문화강사 관련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인적관리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해야 해요. (B시교육청, 개인면담)

<표 V-2-19>는 지역 내 다른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간의 역할 분담 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모두 서비스 내용을 지원 기관 간 역할 분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V-2-19> 지역 내 타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기준(복수응답)

단위: %(기관)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서비스 규모	기타	계
전체	60.2	34.4	4.0	1.9	100.0(427)
센터	62.1	28.0	4.5	5.3	100.0(132)
교육청	54.4	41.1	5.1	0.6	100.0(158)
지자체	65.0	32.8	2.2	0.0	100.0(137)

<표 V-2-20>은 지역 차원에서 다문화 지원 서비스 창구를 단일화 할 경우 어떤 기관으로 단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응답 비율이 교육청이나 행정기관 및 복지관이라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V-2-20> 다문화 지원 서비스 창구 단일화시 바람직한 창구(복수응답)

단위: %(기관)

구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교육청	행정기관	복지관	계
전체	85.4	1.6	11.8	2.8	100.0(432)
센터	92.6	0.0	10.3	0.7	100.0(136)
교육청	74.1	4.4	18.4	4.4	100.0(158)
지자체	91.3	0.0	5.8	2.9	100.0(138)

위의 설문결과와는 상반되게 면담내용 분석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량부족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대학교와 종교단체 위탁 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해야 하다 보니 인원 수 채우기에 급급한 경우가 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모두 다 하기에는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

지금 다문화 강사 양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중략) ...각 센터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센터가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센터에만 맡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S시청 행정가, 집단면담)

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나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평가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2~3년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하는데 대학교 위탁은 거의 다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종교단체에 맡긴 경우에는 종교편향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요. 기독교 교회에 맡기면 다른 종교 쪽 사람과 소통을 안 해요. (H민간단체, 개인면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으로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7군데 있지만,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B시교육청, 개인면담)

한 가정을 생애주기별로 지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센터에서 다 해내는 것이 역부족이에요. 다양한 전문가가 있지 않고서는... 질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B시J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인면담)

<표 V-2-21>은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담당해야 할 기관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의 응답 결과이다. 기관별 자세한 내용은 <부록 8>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은 대학이나 연구소, 영유아 신체발달은 병원 및 보건소, 영유아 정서지원, 한국어 교육 및 학습지도, 문화체험, 부모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한국어 교육, 육아정보 제공 및 상담, 부모 정서 지원, 생활문화 지도, 가정통신문 번역, 일반인 대상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사회성 발달 지원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포함한 학교,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2-21〉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담당해야 할 기관(복수응답)

단위: %(기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계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22.3	19.5	4.8	-	2.9	1.9	18.3	11.9	29.9	0.2	0.2	0.2	0.2	-	100.0 (421)
영유아 신체발달 지원	1.6	10.6	20.2	-	2.8	1.9	3.1	12.7	0.7	53.6	0.2	0.5	0.5	-	100.0 (424)
영유아 한국어 교육	4.7	40.1	2.1	0.2	4.0	4.5	15.6	30.0	4.5	-	-	-	0.9	-	100.0 (425)
영유아 학습지도	0.7	21.9	2.8	0.2	1.7	4.7	23.3	49.8	2.1	0.2	-	-	0.7	-	100.0 (424)
영유아 정서 지원	0.9	40.8	8.7	1.7	2.4	9.4	5.2	25.5	1.2	0.7	8.5	3.5	1.4	-	100.0 (424)
문화체험	0.9	45.4	4.5	-	11.1	9.5	6.6	20.1	0.5	0.2	0.2	0.9	4.3	11.6	100.0 (423)
영유아 사회성 발달 지원	0.7	37.1	5.9	0.7	3.6	10.5	8.8	37.8	2.1	0.7	1.0	0.5	1.2	1.2	100.0 (421)
부모 대상 프로그램 개발	23.9	40.4	5.4	2.3	4.9	2.1	7.7	1.4	25.1	0.5	0.5	0.2	0.7	0.2	100.0 (426)
부모 대상 한국어 교육	4.2	71.0	3.7	1.6	6.1	3.3	7.7	4.2	5.6	0.2	-	0.5	1.2	0.9	100.0 (427)
육아 정보 제공	5.4	50.8	14.5	2.8	6.6	2.3	6.6	15.0	1.6	13.1	1.4	1.9	0.7	0.2	100.0 (427)
육아 관련 상담	1.6	54.3	15.9	3.7	2.6	4.0	3.3	15.5	0.7	10.8	8.2	1.6	0.5	0.2	100.0 (427)
부모 정서 지원	1.6	66.5	11.7	6.8	2.8	6.1	1.4	4.4	0.5	1.2	8.2	3.3	3.5	2.1	100.0 (427)
부모 생활문화 지도	2.3	64.4	6.3	3.0	8.2	5.9	2.6	2.3	1.2	0.2	0.2	0.9	3.7	18.3	100.0 (427)
보육시설 유치원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18.1	8.7	0.9	0.7	3.1	1.2	44.5	7.3	28.0	-	-	-	0.7	0.2	100.0 (425)
보육시설 유치원 교사 연수	12.3	9.7	0.9	75.1	13.3	-	-	0.5	0.2	0.2	-	-	-	-	100.0 (422)
가정통신문 번역	5.0	45.4	1.7	2.8	5.7	2.4	18.4	12.8	11.3	-	-	0.5	2.6	0.9	100.0 (423)
일반인 대상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개발	29.2	42.4	4.0	0.7	7.5	1.4	4.9	0.7	22.6	-	0.5	0.2	2.6	0.7	100.0 (425)
일반인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12.5	60.1	4.2	1.2	14.2	3.8	8.5	4.5	8.0	0.2	0.2	0.7	4.0	0.9	100.0 (424)

주: 1. 중앙정부 부처,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건강가정지원센터, 4. 이주여성인권센터, 5. 행정 기관, 6. 복지기관, 7. 교육청, 8. 학교(유치원, 보육시설 포함), 9. 대학이나 연구소, 10. 병원/보건(지)소, 11. 상담소, 12. 종교/여성 단체, 13. 민간단체, 14. 문화원

## 나. 지원 내용에 대한 인식

### 1) 지원 기관의 사업

####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점사업과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한국어교육서비스, 방문교육사업과 가족교육서비스, 취·창업교육,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순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도시, 도농복합지역, 농어촌 지역이 대체로 유사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향후 역점사업에 대한 중복응답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국어교육, 취·창업교육, 가족교육, 가족 개인상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의 경우 한국어교육과 취·창업교육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가족교육,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방문교육사업 순이었다. 도농복합지역에서도 도시지역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가족 개인 상담에 대한 의견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V-2-22〉 역점 사업 및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복수응답)  
단위: %(기관)

구분	역점 사업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방문교육사업	12.3	13.5	11.8	12.1	18.9	20.0	14.0	23.8
통번역서비스사업	3.4	4.8	2.6	3.2	9.4	5.7	8.0	14.3
자녀 언어발달 지원	2.9	3.8	3.3	1.6	22.0	11.4	28.0	23.8
이중언어교실 운영	0.8	-	1.3	0.8	7.9	8.6	10.0	4.8
한국어교육	30.2	32.7	29.4	29.0	56.7	54.3	58.0	57.1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10.0	8.7	11.1	9.7	17.3	11.4	22.0	16.7
가족교육	12.3	8.7	13.1	14.5	34.6	25.7	38.0	38.1
가족개인상담,	4.7	1.0	3.9	8.9	30.7	20.0	30.0	40.5
창업 지원	12.1	13.5	13.1	9.7	43.3	51.4	38.0	42.9
통번역서비스 자조모임	1.3	1.0	1.3	1.6	9.4	14.3	8.0	7.1
멘토링 및 자원봉사단,	1.6	1.9	0.7	2.4	7.1	17.1	-	7.1
다문화 인식개선 사	4.5	6.7	5.2	1.6	14.2	22.9	16.0	4.8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1.8	1.9	2.0	1.6	7.9	14.3	8.0	2.4
계	100.0 ( 81)	27.3 (104)	40.2 (153)	32.5 (12.4)	100.0 (127)	100.0 ( 35)	100.0 ( 50)	100.0 (42)

<표 V-2-23>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효과적인 사업과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중복응답 분석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한국어교육서비스, 방문교육사업, 취·창업교육, 가족교육,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통번역서비스 사업 순으로 효과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이 나타났다. 도시지역에서는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 비해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의 효과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가족교육사업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소 낮았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복수응답 조사 결과를 보면, 취·창업 지원, 가족교육, 멘토링 및 자원봉사단 사업, 가족개인상담, 다문화 이해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경우 통번역서비스사업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도농복합지역은 방문교육사업,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가족개인상담을 같은 비율로 지적하였다. 농어촌지역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꼽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2-23> 효과적인 사업 및 효과가 낮은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복수응답)

단위: %(기관)

구분	효과적인 사업				효과가 낮은 사업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방문교육사업	41.4	47.1	39.2	39.5	5.2	33.3	50.0	16.7
통번역서비스사업	18.8	20.6	21.6	14.0	3.5	50.0	25.0	25.0
자녀 언어발달 지원	15.6	23.5	19.6	4.7	4.3	-	40.0	60.0
이중언어교실 운영	3.1	0.0	5.9	2.3	16.5	36.8	42.1	21.1
한국어교육	85.9	91.2	88.2	79.1	1.7	-	50.0	50.0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20.3	14.7	17.6	27.9	20.9	37.5	25.0	37.5
가족교육	23.4	14.7	25.5	27.9	38.3	27.3	50.0	22.7
가족개인상담,	10.9	2.9	7.8	20.9	26.1	23.3	500.0	26.7
창업 지원	23.4	17.6	23.5	27.9	51.3	30.5	40.7	28.8
통번역서비스 자조모임	6.3	8.8	5.9	4.7	15.7	22.2	11.1	66.7
멘토링 및 자원봉사단,	6.3	11.8	3.9	4.7	30.4	25.7	40.0	34.3
다문화 인식개선 사	14.8	26.5	13.7	7.0	11.3	30.8	30.8	38.5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7.8	11.8	0.0	14.0	12.2	28.6	42.9	28.6
계	100.0 (128)	100.0 ( 34)	100.0 ( 51)	100.0 ( 43)	100.0 (115)	100.0 ( 34)	100.0 ( 43)	100.0 ( 3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효과가 낮은 사업의 이유와 개선방안은 <표 V-2-24>와 같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효과가 낮은 사업 1순위는 '가족교육' 사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참여율 저조라고 답변이 가장 많았고,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참여·유도방법 모색, 다문화가족의 인식 개선, 가족 교육시간 의무화 등을 지적하였다.

효과가 낮은 사업 2순위는 취·창업 지원으로 조사되었다. 효과가 낮은 이유로는 실제적 취업 연계가 낮고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예산의 문제 등이 거론되었고, 개선방안으로는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취·창업 교육 실시,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

효과가 낮은 사업 3순위는 멘토링·자원봉사단 사업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멘토·자원봉사단 부족, 참여율 저조 순으로 답하였다. 멘토·자원봉사단 부족의 개선점으로는 지속적인 모임유지 방안 연구, 자원봉사자 발굴과 교육,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교육, 자원봉사시간을 취·창업 기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참여율 저조의 개선점으로는 지속적인 연결고리 필요, 교통편의 제공,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 개발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표 V-2-24> 효과가 낮은 사업의 이유 및 개선방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위: 건

사업내용	이유	개선방안	계
가족교육	참여율 저조	다양한 참여, 유도 방법 모색	8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	5
		가족 교육시간 의무화	3
		가족교육 프로그램 강화	2
		예산 확충	1
		배우자교육은 출입국 신고 시 실시	1
		지속적인 홍보	1
		타 기관 연계 운영	1
		무응답	4
	전문강사 부족	전문강사 양성	1
멘토링, 자원봉사단	멘토, 자원봉사단 부족	지속적인 모임 유지 방안 연구	1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교육 필요	1
		자원봉사자 교육과 발굴 필요	2
		자원봉사시간을 취창업 기회에 도움이 되도록 함	1
	참여율 저조	지속적 연결고리가 필요	2
		교통편의 제공	1
		자원봉사자 필요로 하는 사업 개발	1

사업내용	이유	개선방안	계	
	훈련 매뉴얼 부족, 행정 연계 부족	지속적인 교육과 공공기관과의 연계 필요	1	1
	예산, 인력 부족으로 미시행	무응답	1	1
	거주기간이 짧아 시행이 어려움	순차적 실시	1	1
	국적별 자조모임에서 실시 중	자조모임과 멘토링 통합	1	1
취·창업 지원	실제적 취업 연계 부족	정책적으로 결혼이민자 고용 권장	3	17
		취·창업보다 취미생활, 문화교육 바람직	1	
		유관 기업단체, 공공기관과 연계 추진	3	
		현실적인 취·창업교육 시행	1	
		이주여성 대상 교육기관 마련	1	
		무료자격증 취득 기회 부여	1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	1	
		취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적 교육 실시	5	
	인력개발센터와의 연계시스템 구축	1		
	의사소통의 어려움	무응답	1	4
		한국사회적응을 통한 사회적응교육	1	
		의사소통가능 후 직업의식교육, 기술교육	1	
		한국어교육 강화	1	
	예산 및 여건의 어려움	예산 확보	2	3
		무응답	1	
	참여율 저조	일정기간 교육받은 사람이 취업 가능하도록	1	2
취창업 교육의 필요성 인식		1		
대상자 거주기간이 짧음	지속적 관계형성으로 취업관련 정보 제공	1	1	
농촌 대부분의 가정이 토지무소유	토지 임차 가능 방안 모색	1	1	

#### 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표 V-2-25>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역점 사업과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캠프

등의 순으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경우는 도시와 도농복합의 경우와 달리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이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사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도농복합과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도시지역과 달리 일반 학생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사업보다 현직교사 연수 지원 강화 사업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도농복합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지 않는 사업은 국제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 활용 확대,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지원, 역량 있는 학부모의 교육 지원 및 활용이며, 도시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지 않는 사업은 시·도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역량 강화,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사업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역점 사업은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 시·도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일반 학생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농복합의 경우도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반면 농어촌의 경우는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34.3%) 사업이 일반 학생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30.0%)사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의 경우는 일반 학생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51.0%)사업이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49.0%) 사업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5〉 역점 사업 및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복수응답)  
단위: %(기관)

구분	역점 사업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47.5	49.0	51.5	47.1	41.8	46.9	42.4	37.1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	41.8	40.8	48.5	41.4	19.6	14.3	24.2	22.9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24.1	20.4	30.3	22.9	9.5	6.1	9.1	12.9
국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1.3	2.0	-	1.4	-	-	-	-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30.4	30.6	33.3	30.0	33.5	30.6	36.4	34.3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43.7	38.8	42.4	48.6	49.4	49.0	45.5	54.3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활용	5.7	12.2	3.0	2.9	9.5	16.3	-	7.1

구분	역점 사업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전체	도시	도농 복합	농어 촌	전체	도시	도농 복합	농어 촌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3.8	4.1	-	4.3	7.6	4.1	12.1	7.1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0.6	-	-	1.4	7.6	2.0	12.1	8.6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 활용 확대	1.9	6.1	-	-	-	-	-	-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지원	3.2	6.1	-	2.9	1.9	4.1	-	1.4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	0.6	-	-	1.4	1.9	-	3.0	2.9
역량 있는 학부모의 교육 지원/활용	1.3	2.0	-	1.4	2.5	-	9.1	0.0
진로/직업 교육지원 강화	1.9	2.0	3.0	1.4	5.7	4.1	6.1	5.7
일반 학생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31.6	38.8	24.2	27.1	38.6	51.0	39.4	30.0
시·도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3.2	-	-	5.7	5.1	8.2	3.0	4.3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역량 강화	0.6	-	3.0	-	3.8	2.0	9.1	1.4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7.0	-	12.1	8.6	13.3	14.3	15.2	12.9
계	100.0 (158)	100.0 ( 49)	100.0 ( 33)	100.0 ( 70)	100.0 (158)	100.0 ( 49)	100.0 ( 33)	100.0 ( 70)

<표 V-2-26>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효과적인 사업을 조사한 결과이다. 도시 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은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일반 학생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활용 사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농복합의 경우는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이 동순위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일반 학생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사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의 경우는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사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및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그 뒤로 일반 학생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사업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사업 중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일반 학생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도시의 경우는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으

며, 농어촌의 경우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반면 도농복합의 경우는 일반 학생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이라는 응답이 37.9%로 타 지역에 비해 해당 사업에 대하여 효과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6> 효과적인 사업 및 효과가 낮은 사업: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복수응답)  
단위: %(기관)

구분	효과적인 사업				효과가 낮은 사업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전체	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다문화 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46.8	55.1	45.5	42.9	17.6	23.1	6.9	19.0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 학교 지원	43.0	42.9	45.5	44.3	19.8	15.4	24.1	22.4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26.6	24.5	30.3	25.7	16.8	15.4	10.3	20.7
국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	-	-	-	6.1	12.8	3.4	3.4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28.5	30.6	36.4	24.3	22.9	33.3	20.7	15.5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40.5	36.7	45.5	42.9	37.4	25.6	34.5	48.3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 요원으로 양성·활용	5.1	10.2	3.0	2.9	14.5	10.3	20.7	15.5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4.4	4.1	3.0	2.9	4.6	7.7	0.0	1.7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1.3	-	-	2.9	9.9	15.4	13.8	5.2
다문화교육 유아교사 연수 실시	0.6	-	-	1.4	2.3	0.0	3.4	3.4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 활용 확대	0.6	2.0	-	-	1.5	2.6	3.4	0.0
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	-	-	-	-	6.1	7.7	10.3	1.7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지원	3.2	6.1	-	2.9	7.6	17.9	3.4	3.4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	-	-	-	-	5.3	10.3	3.4	3.4
역량 있는 학부모의 교육 지원/활용	0.6	-	-	1.4	5.3	0.0	13.8	5.2
진로/직업 교육지원 강화	1.9	2.0	3.0	1.4	6.9	10.3	3.4	6.9
일반 학생의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28.5	28.6	27.3	27.1	22.1	17.9	37.9	17.2
시·도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	-	-	-	0.8	-	-	-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역량 강화	1.9	-	3.0	2.9	3.1	2.6	6.9	1.7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6.3	-	9.1	8.6	16.8	15.4	24.1	13.8
계	100.0 (158)	100.0 ( 49)	100.0 ( 33)	100.0 ( 70)	100.0 (131)	100.0 ( 39)	100.0 ( 29)	100.0 ( 58)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효과가 낮은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V-2-27>와 같다. 가장 효과가 낮게 나타난 사업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지원이며, 다음으로 현직교사 연수 지원 강화,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지원 가운데 효과가 낮은 이유로는 가족의 비협조가 가장 많았고, 개선 방안으로 예산 증대, 프로그램 개발 및 방문서비스를 요구하였다. 현직교사 연수 지원 강화의 이유로 연수

부족과 참여저하를,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 연수확대와 인센티브 부여를 요구하였다.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의 이유로 예산 및 인력 부족이 높게 나타났고 개선점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7〉 효과가 낮은 사업의 이유 및 개선방안: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건

사업의 종류	이유	계	개선 방안	계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가족비협조	15	예산증대	6
	참여 저하	8	프로그램 개발	5
	시간 확보 어려움	6	방문서비스	4
	예산부족	5	가족 교육	4
	기타 응답	18	기타 응답	31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연수부족	6	연수확대	6
	참여저하	5	인센티브 부여	4
	예산부족	4	프로그램 개발	3
	인력부족	4	전문인력확충	2
	기타 응답	13	기타 응답	13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이해부족	7	프로그램 개발	5
	프로그램 미비	5	시행범위 확대	3
	인식부족	4	연수확대	2
	교육과정 내 교육 어려움	3	정규 과정화	2
	기타 응답	11	기타 응답	15

다) 지방자치단체

〈표 V-2-28〉은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과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문화이해교육, 가족통합교육 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경우는 도시와 도농복합의 경우와 달리 방문교육사업이 한국어교육 사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통합교육이 문화이해교육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다국어판 생활·정책정보 가이드북 발간 사업의 경우는 도시지역에서만 3.7%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농복합과 농어촌의 경우는 아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어교육, 방문교육사업, 가족통합교육, 문화이해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상담서비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농복합의 경우는 문화이해교육(27.5%)보다 가족통합교육과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각각 35.0%와 30.0%로 더 높

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농어촌의 경우는 한국어교육(41.5%)보다 방문교육사업과 가족통합교육이 각각 53.7%와 51.2%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8〉 역점 사업 및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지방자치단체(복수응답)

단위: %(기관)

구분	역점 사업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전체	도시	도농 복합	농어촌	전체	도시	도농 복합	농어촌
한국어교육	79.4	83.3	75.0	78.0	55.6	61.5	62.5	41.5
방문교육사업	75.7	66.7	75.0	87.8	46.7	48.1	37.5	53.7
문화이해교육	30.9	33.3	32.5	26.8	31.1	28.8	27.5	36.6
가족통합교육	25.7	18.5	25.0	36.6	39.3	32.7	35.0	51.2
상담서비스	12.5	9.3	15.0	14.6	20.0	21.2	12.5	24.4
다국어관 정보 가이드북 발간	1.5	3.7	0.0	0.0	0.7	0.0	0.0	2.4
통·번역서비스	9.6	9.3	12.5	7.3	8.1	7.7	10.0	7.3
보육시설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1.5	1.9	0.0	2.4	7.4	7.7	7.5	7.3
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역량 개발	1.5	0.0	2.5	2.4	8.1	9.6	7.5	7.3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11.0	13.0	7.5	12.2	27.4	21.2	30.0	34.1
계	100.0 (136)	100.0 ( 54)	100.0 ( 40)	100.0 ( 41)	100.0 (135)	100.0 ( 52)	100.0 ( 40)	100.0 ( 41)

〈표 V-2-29〉는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사업과 효과가 낮은 사업을 조사한 결과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사업은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문화이해교육, 가족통합교육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도농복합의 경우는 방문교육사업, 한국어교육, 문화이해교육, 가족통합교육의 순으로, 농어촌의 경우는 방문교육사업,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문화이해교육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다국어관 생활·정책정보 가이드북 발간 사업은 도시의 경우만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응답하였고,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경우는 도시와 농어촌이 각각 11.8%, 9.8%로 나타난 데 반해 도농복합은 2.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족통합교육, 문화이해교육,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상담서비스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도시의 경우는 상담서비스, 문화이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가족통합교육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으며, 농어촌의 경우는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가족통합교육, 방문교육사업 및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반면 도농복합의 경우는 가

족통합교육과 문화이해교육이라는 응답이 각각 55.6%와 37.0%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해당 사업에 대하여 효과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9〉 효과적인 사업과 효과가 낮은 사업: 지방자치단체(복수응답)

단위: %(기관)

구분	효과적인 사업				효과가 낮은 사업			
	전체	도시	도농 복합	농어촌	전체	도시	도농 복합	농어촌
한국어교육	77.9	82.4	76.3	73.2	12.8	17.9	7.4	13.6
방문교육사	75.6	70.6	81.6	75.6	11.5	14.3	3.7	18.2
문화이해교육	29.0	37.3	21.1	26.8	30.8	28.6	37.0	27.3
가족통합교육	19.1	15.7	13.2	29.3	38.5	25.0	55.6	36.4
상담서비스	16.8	11.8	18.4	22.0	24.4	32.1	18.5	22.7
다국어판 정보 가이드북 발간	0.8	2.0	0.0	0.0	11.5	14.3	7.4	13.6
통·번역서비스	13.0	13.7	18.4	7.3	25.6	28.6	7.4	40.9
보육시설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1.5	2.0	0.0	2.4	9.0	7.1	11.1	9.1
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역량 개발	8.4	11.8	2.6	9.8	12.8	17.9	18.5	0.0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40.5	29.4	50.0	43.9	20.5	10.7	25.9	27.3
계	100.0 (131)	100.0 ( 51)	100.0 ( 38)	100.0 ( 41)	100.0 (78)	100.0 (28)	100.0 (27)	100.0 (22)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가장 효과가 낮은 사업은 '가족 통합교육'이었는데, 그 이유는 사업이 정례화 되지 않고 1회성으로 그치고 있고, 사업비가 부족하며, 대상자가 이론적 교육보다는 취업 지원 등 실질적인 교육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비협조, 전문상담원 부족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정기적인 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가족의 인식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 자체의 신뢰도를 높여 참여율을 제고하며, 전문 상담원 배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효과가 낮은 사업 2순위는 문화이해 교육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효과가 낮은 이유로는 1회성 서비스, 이용자 부족, 관심 부족, 언어이해 부족이 있었고, 개선방안으로는 정기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추가 배정, 이용자확대를 위한 참여자에게 실비 보장, 관심과 언어이해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체험과 활동 위주의 교육 제공 등이 제안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효과가 낮은 사업 3순위는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 사업으로 나타났다. 효과가 낮은 이유로는 자율참여이기 때문, 수요 부족, 지역적 제약으로 인한 참여 어려움, 프로그램의 획일화, 지원되는 언어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이 있었다. 효과를 높이

기 위한 개선점으로는 관심 제고를 위한 인식 개선 노력,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적 제약 극복을 위한 권역별 통합 교육 실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예산 확충, 전문 인력 보강 등이 제안되었다.

〈표 V-2-30〉 효과가 낮은 사업의 이유 및 개선점: 지방자치단체

사업내용	이유	개선점	계		
가족통합 교육	1회성 사업	정기 서비스 지원 방안 모색	1	1	
	이론 교육보다는 창업지원 등 실질적 교육 선호	다문화가족의 인식 개선	1	1	
	사업비 부족	사업비 배정	1	1	
	이용자 부족	장소제한을 풀어야 함	1	1	
	가족의 비협조		남편의 인식 개선	1	3
			교육 참여 유인책 개발	1	
			사업의 신뢰도 높여 참여율 제고	1	
전문 상담원 부족	전문 상담원 배치	1	1		
문화이해 교육	1회성 서비스	사업비 추가 배정	1	1	
	이용자 부족	가족교육 참여자에게 실비 보상	1	1	
	관심 부족	체험과 활동 위주의 교육 필요	1	1	
	언어이해 부족	체험과 활동 위주의 교육 필요	1	1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 사업	자율참여로 참여율이 낮음	현재 참여 아동 대부분 초등학생이므로 더 어린 나이의 유아가 이중언어를 정할 수 있도록 연령조절	1	1	
	수요(관심) 부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중앙차원의 노력 필요	1	1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1	1	
	지역적 제약으로 참여 어려움	권역별 통합교육 시도	1	1	
	가족의 비협조	결혼 전 의무교육 실시	1	1	
	프로그램의 획일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1	1	
	지원되는 언어 부족	예산 확충으로 지원 범위 확대	1	1	
전문 상담 인력부족	상담 전문 인력 보강	1	1		

## 2) 지원대상이 요구하는 서비스 내용

〈표 V-2-31〉은지도사와 희망유아교육사에게 지원대상이 어떠한 서비스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지도사는 부모 대상 한국어교육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전교육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희망유아교육사는 자

녀 학습 및 유치원 생활지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한국 생활문화 정보 제공 및 지도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다.

〈표 V-2-31〉 지원대상이 요구하는 서비스(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전체	지도사	희망유아교육사
부모 대상 한국어교육	35.4	45.2	4.6
양육 및 부모자녀 관계 상담	10.0	12.5	2.3
기타 상담(가족관계, 체류 및 법률 등)	1.7	1.5	2.3
임신 및 출산 정보 제공, 자녀 건강 및 영양지도	0.3	0.4	0.0
자녀 학습 및 유치원 생활지도	3.1	3.7	1.1
한국 생활문화 정보 제공 및 지도	19.8	9.6	51.7
다문화가족의 안전교육	20.3	16.2	33.3
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3.3	2.9	4.6
계	2.5	3.3	0.0
계	100.0(359)	100.0(272)	100.0( 87)

### 3) 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서비스 내용

〈표 V-2-32〉는 필요한 영아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신체발달 및 건강관리, 정서발달 지원, 언어발달 지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V-2-32〉 필요한 영아 대상 서비스(복수응답)

단위: %(기관, 명)

구분	전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교육청	지자체	지도사	희망유아 교육사
한국어교육	21.1	13.5	37.9	23.4	12.4	28.4
신체발달 및 건강관리	74.9	80.5	62.7	74.5	81.1	67.6
정서발달 지원	74.2	72.9	58.2	74.5	85.5	67.6
사회성 발달 지원	21.4	20.3	26.8	15.3	19.6	29.7
언어발달 지원	54.8	54.1	50.3	49.6	55.6	71.6
인지발달 및 학습지도	23.8	29.3	18.3	25.5	25.1	17.6
예절교육	13.1	12.8	17.0	23.4	7.3	8.1
문화체험	2.8	0.8	4.6	3.6	1.5	6.8
모국어 교육	7.9	6.8	19.6	2.9	6.2	1.4
계	100.0 (772)	100.0 (133)	100.0 (153)	100.0 (137)	100.0 (275)	100.0 ( 74)

<표 V-2-33>은 필요한 유아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로, 전체적으로 유아의 경우에는 언어발달 지원, 인지발달 및 학습지도, 정서발달 지원, 사회성 발달 지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교육을 언급한 비율은 비교적 높지 않았다.

<표 V-2-33> 필요한 유아 대상 서비스(복수응답)

단위: %(기관, 명)

구분	전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교육청	지자체	지도사	희망유아 교육사
한국어교육	37.7	31.4	52.6	47.5	25.8	43.8
신체발달 및 건강관리	27.3	29.5	28.9	25.9	32.0	9.0
정서발달 지원	48.8	50.8	39.5	54.7	50.9	46.1
사회성 발달 지원	46.8	43.2	47.4	36.7	47.6	64.0
언어발달 지원	54.5	56.1	46.7	54.0	61.5	44.9
인지발달 및 학습지도	49.3	47.0	35.5	41.7	57.8	61.8
예절교육	10.9	12.9	7.9	8.6	13.8	7.9
문화체험	8.0	2.3	13.2	5.0	5.5	20.2
모국어 교육	14.7	25.0	24.3	23.0	4.7	1.1
계	100.0 (787)	100.0 (132)	100.0 (152)	100.0 (139)	100.0 (275)	100.0 ( 89)

면담조사 분석에서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지원, 보육지원, 어머니와의 유대감 및 정체성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교육은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학생을 활용하는 멘토링 제도가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적이다. 더불어 학습지 지원에 대한 요구가 일부 있었다.

제가 일종의 학습지 선생님도 되고, 같이 놀아주는 선생님도 되고...그래요. 언어인지 사회정서에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C 희망유아교육사, 집단면담)

방과 후 활동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방과 후 쪽인데 특히 '대학생 멘토링'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가장 현실적이고,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A시교육지원청 행정가 집단면담)

아이들 학습지원이나 학교교육도 지원이지만 웅진이나 대교의 학습지 지원을 해서 학습지를 가지고 대학생들이 지도하면 엄마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대학생들이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있고요. (S시청 행정가, 집단면담)

보육지원에 대한 인식은 주양육자가 언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직접 양육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 빨리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 또래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 영유아 발달을 위한 방법인 동시에 일반 영유아의 편견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영아의 경우는 발달 특성상 방문지원이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애착 때문에 엄마가 끼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할머니나 아빠가 엄마나라 말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끼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아빠의 특징은 교육은 엄마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말이 늦으면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라고 말씀을 드려요. (G 방문지도사, 집단면담)

아이들은 엄마랑 소통하는 것보다 또래관계 속에서 배우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끌어내려면 아이들은 차별이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은 보육시설에 다 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D시청 행정가, 집단면담)

영아는 되도록 빨리 가정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가 한국 적응이 잘 안 된 상태잖아요. 애착형성을 위해 6개월까지는 몰라도 그 후에는 보육시설로 끌어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H 민간단체, 개인면담)

영유아기는 어머니와의 유대감 형성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지원정책으로 무조건 보육시설을 보내도록 할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영유아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대감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노동력 창출과 엄마 입장에서 경제적 수입이라는 면에서 보면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어머니가 일을 하는 것이 권장되는 일일 수 있겠으나, 영유아 양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어 공부도 안 하고 어린 영아를 무조건 보육시설에 맡기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 다문화 가정 영유아도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태어난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 무료 보육지원 때문에 무조건 어린이집, 놀이방 이런 데를 막 보내요. 그래서 엄마하고 자녀하고 분리되어서 전혀 유대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나라에서 세운 정책이 한몫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워요. (I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집단면담)

이제 돌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본인은 한국어공부 안 하고 공장가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G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집단면담)

자기 엄마 아빠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또는 문학에 대해서 그 쪽도 같이 도와주면서 정체성을 또 갖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 (A교육지원청 행정가, 집단면담)

<표 V-2-34>는 필요한 부모대상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육아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정서 지원, 부부 및 가족관계 상담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경우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지도사와 희망유아교육사는 육아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2-34> 필요한 부모 대상 서비스(복수응답)

단위: %(기관, 명)

구분	전체	센터	교육청	지자체	지도사	희망유아교육사
한국어교육	70.7	80.7	68.6	73.4	66.9	67.0
육아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64.5	65.2	50.6	52.5	75.1	72.5
육아관련 상담	22.2	17.0	17.9	28.8	23.1	24.2
정서 지원	45.1	43.7	47.4	51.5	45.6	33.0
한국 생활문화 지도	17.1	13.3	10.3	13.7	21.4	26.4
양육비 지원	23.2	14.1	31.4	15.1	19.6	46.2
부부 및 가족관계 상담	30.0	38.5	39.7	32.4	22.8	19.8
심리 상담	17.1	11.9	24.4	23.0	14.9	9.9
취업 및 창업지원 교육	8.1	11.3	9.0	8.6	7.5	0.0
계	100.0 (802)	100.0 (135)	100.0 (156)	100.0 (139)	100.0 (281)	100.0 ( 91)

설문조사 내용과 유사하게 면담내용 분석에서도 다문화 가정 부모 대상 지원으로 한국어 교육, 어머니와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과 육아에 대한 정보 제공, 정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 어머니에게 한국어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어를 모르면 영유아 양육은 물론 기관과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날 ‘어린이집이 무슨 이유로 쉽니다. 그러니 어린이집에 보내지 마십시오.’ 했는데, 자기는 그걸 못 읽어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린이집 차를 한 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지나가는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 엄마가 왜 거기 있냐고, ‘오늘은 어린이집 안 가는 날이다.’ 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굉장히 심정이 복잡했던 것 같더라고요. (B시 민간단체, 개인면담)

영유아의 발달특성상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부모교육은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필요하다. 또한 정책 홍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뢰성 있게 제공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 지원이지 않을까 해요. (중략) 유아들이다 보니까 엄마랑 상호작용을 많이 하니까 꼭 같이 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S시교육청 행정가, 집단면담)

아이에 대한 직접 지원이 정말 필요한데, 다문화 가정은 엄마에 대한 교육이 끊임 없이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다고 생각해요. (A 희망유아교육사, 집단면담)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어머니 위주로 교육하니까 아버지도 포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부가 협조하고... (C 희망유아교육사, 집단면담)

정보를 못 얻는 가정을 나오게끔 하는 정책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그걸 통해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략)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게 학습 문제거든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줘야 하는지, 어떻게 반영해주어야 하는지...이런 기본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A 희망유아교육사, 집단면담)

더불어 자녀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 엄마에 대한 정서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엄마의 정서가 상당히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엄마의 심리지원, 정서지원을 하면서 엄마가 안정이 되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B시J구 다문화지원센터장, 개인면담)

<표 V-2-35>는 필요한 보육시설 및 유치원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영유아 및 부모 대상 프로그램과 다문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비율이 90% 가까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 관련 교사 연수 기회 제공,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집단에서 대체로 유사하였다.

〈표 V-2-35〉 필요한 보육시설·유치원 대상 서비스(복수응답)

단위: %(기관)

구분	전체	센터	교육청	지자체	지도사	희망유아 교육사
다문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제공	86.6	76.7	92.3	92.8	85.5	85.6
일반 영유아 및 부모대상 프로그램 제공	89.6	86.5	91.6	90.6	89.1	91.9
다문화 관련 교사 연수 기회 제공	73.1	72.9	85.8	62.3	67.6	84.4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43.6	52.6	23.9	50.0	50.2	34.4
기타	2.4	4.5	2.6	2.2	2.2	-
계	100.0 (791)	100.0 (133)	100.0 (155)	100.0 (138)	100.0 (275)	100.0 ( 90)

면담내용 분석에서도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해서는 보육시설 종사자와 유치원 교원 및 일반 영유아를 포함하여 일반인 대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 체험의 기회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좋게 바꿀 수 있으며, 교사 대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은 다문화와 관련된 인식을 개선하고 다문화 영유아 지도에 있어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자기 반에 일본 출신 애, 자기 엄마가 일본 출신 애가 있는데, 잘 이해를 못하고 일본은 나쁜 나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일본의 문화를 강사가 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일본이 나쁜 나라만은 아니구나, 인식변화가 옵니다. 필리핀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 못한 나라일거야 생각을 하다가 그 나라의 민속놀이, 의복, 음식을 소개를 해주면, 애들 인식이 확 바뀝니다. 이런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계문화체험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시교육지원청 행정가, 집단면담)

보육교사들의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초등학교에도 다문화 전담교사를 하면 약간의 돈이 지급되는.. 그런 게 있는데 약간 기피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보육에 관련해서 보육교사 보수교육에서나.. 유치원 교사들 교육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집단면담)

## 다. 정책 지원 및 개선점

### 1)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추진 중 어려운 점과 개선방안은 다음 <표 V-2-36>, <표 V-2-37>, <표 V-2-38>과 같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추진 중 인력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인력부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 인력부족, 사업량 과다 등의 순이었다. 인력부분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센터인력 충원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 인력충원(상담, 통역, 행정 등), 적절한 임금 책정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예산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예산부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건비 부족, 운영비 부족, 사업비 부족 등의 순이었다. 예산부분의 개선방안으로는 예산증액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건비의 현실화, 운영비의 현실화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업기획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일괄적 필수 사업 과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적 특성 고려의 어려움, 사업량 과다 등의 순이었다. 사업기획부분의 개선방안으로는 사업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기획, 사업의 집중화 등의 순이었다. 사업관리(전달체계)에서 어려운 점은 전달체계의 복잡함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력 부족, 중복 지원사업 등의 순이었다. 사업관리(전달체계)에 있어서 개선방안으로는 전달체계의 일원화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처 간 조율을 통한 일원화된 사업지원, DB를 이용한 일원화된 전달체계 등의 순이었다.

기타 어려운 점으로는 많은 단체의 과다한 관심, 사업연계요청, 잦은 방문, 인터뷰, 설문지 요청 등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고, 직원의 처우개선, 중복되는 다문화사업 등의 답변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어려운 점의 개선방안으로는 인력 충원,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산 확보를 통한 운영실비 보장과 인건비 상향 조정, 다문화가족센터가 주축이 되는 사업 진행 등의 답변이 있었다.

〈표 V-2-36〉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추진 중 어려운 점과 개선방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위: 건

구분	어려운 점	계	개선방안	계
인력	인력 부족	69	인력충원	69
	전문 인력부족 (상담, 통역, 행정 등)	20	전문인력충원 (상담, 통역, 행정 등)	19
	업무량 과다	20	적절한 임금 책정	16
	1인체계의 어려움	6	적절한 인력 배정	11
	높은 이직률	5	고용안정	7
		120		122
예산	예산부족	37	예산증액	34
	인건비 부족	22	인건비 현실화	13
	운영비 부족	18	운영비 현실화	10
	사업비 부족	17	예산 분배의 융통성	7
	예산의 부적절한 분배	4	사업비 증액	5
		98		69
사업 기획	일괄적 필수 사업 과다	17	자율적 운영 필요	11
	지역적 특성 고려의 어려움	8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기획	9
	사업량 과다	8	사업의 집중화	5
	인력 부족	7	예산 및 사업비 증액	3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요구	4	직원 교육 강화	3
		44		20
사업 관리 (전달 체계)	전달 체계 복잡	14	전달체계의 일원화	10
	인력 부족	4	부처간 조율을 통한 일원화 된 사업지원	6
	중복 지원사업	4	DB이용한 일원화된 전달체계	3
	협력체계 미흡	3	공문, 서류의 최소화	2
	상부 하달형 전달 체계	2	인력보강	2
		23		23
기타	많은 단체의 과다한 관심, 사업 연계요청, 잦은 방문, 인터 뷰요청, 설문지요청 등	6	인력 충원, 전문강사 양성	6
	직원의 처우개선 필요 - 낮은 인건비	3	예산확보를 통한 운영실비 보장, 인건비 상향 조정	5
	중복되는 다문화가족 사업	4	다문화가족센터가 주축이 되어 사업 진행	3
	적절한 강사 선택의 어려움	4	정부 차원의 단일화된 사업 지원 정책	3
	공간 부족 - 사업, 교육, 사무 등	4	선심성, 1회성 사업 지양	2
		21		19

〈표 V-2-37〉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추진 중 어려운 점과 개선방안: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구분	어려운 점	계	개선방안	계
인력	전문인력부족 (상담, 통역, 행정 등)	42	전담인력충원	39
	인력부족	41	전문인력충원 (상담, 통역, 행정 등)	16
	업무량 과다	18	연수강화	13
	다문화업무 내실화 어려움	15	기관간 연계 강화	7
	인식부족	5	예산확보	5
	기타	19	기타	28
예산	예산부족	53	예산증액	28
	자체예산 부족	19	자체예산 확보	4
	예산 전용 어려움	5	지자체와 협력한 예산확대	4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예산 배분	3	단일 기관에서 관리 및 집행	3
	기타	23	기타	27
사업 기획	중복 지원사업	10	기관간 연계 강화	16
	기관간 연계 미비	8	연수강화	8
	프로그램 미비	7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6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 기획	6	예산 및 사업비 증액	6
	예산부족	6	창구 단일화	5
	기타	62	기타	52
사업 관리 (전달 체계)	상부 하달형 전달 체계	9	기관간 연계 강화	9
	중복 지원사업	5	부처간 조율을 통한 일원화된 사업지원	4
	복잡한 전달 체계	4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역청으로 관리운영 일원화	4
	참여 저하	4	전문인력배치	4
	기타	42	기타	32
기타	인식부족	6	명확한 사업 구분	4
	중복 지원사업	3	연수 강화	4
	일회성 사업	2	기관간 연계 강화	3
	실적 위주의 사업	2	다문화가족센터가 주축이 되어 사업 진행	2
	다문화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	2	인력 확보	2
	기타	22	기타	16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행정가가 인식하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 및 개선점은 아래 <표 V-2-37>과 같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전문인력부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력부족, 업무량 과다 등의 순이었다. 인력 부분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전담인력충원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 인력충원(상담, 통역, 행정 등), 연수강화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예산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예산부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체 예산 부족, 예산 전용의 어려움 등의 순이었다. 예산부분의 개선방안으로는 예산 증액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체예산 확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예산 확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업기획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지원사업의 중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관간 연계 미비,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기획 등의 순이었다. 사업기획부분의 개선방안으로는 기관간 연계 강화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연수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순이었다.

사업관리(전달체계)에서 어려운 점은 상부하달형 전달체계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원사업의 중복, 복잡한 전달체계 등의 순이었다. 사업관리(전달체계)에 있어서 개선방안으로는 기관간 연계 강화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처간 조율을 통한 일원화된 사업지원,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역청으로 관리 운용 일원화 등의 순이었다.

기타 어려운 점으로는 인식부족, 지원사업의 중복 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일회성 사업, 실적 위주의 사업, 다문화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 등의 답변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어려운 점의 개선방안으로는 명확한 사업구분, 연수 강화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관간 연계 강화, 다문화가족센터가 주축이 되는 사업 진행, 인력 확보 등의 답변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가가 인식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중 어려웠던 점과 개선방안은 <표 V-2-55>와 같다.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추진 중 인력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인력부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타업무 병행, 전문인력 부족, 전담인력 부족, 사업량 과다 등의 순이었다. 인력부분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전담인력확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 전담 조직 신설, 인력충원, 인력확보를 위한 인건비 확충, 전문인력 공급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예산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예산부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

건비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사업비 부족,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의 순이었다. 예산부분의 개선방안으로는 예산 운영의 단일화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국비 지원 강화, 국비·도비·시비 지원, 인건비 인상, 자체 예산 확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업기획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제한적 사업 내용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참여율 저조, 예산·인력 부족, 실질적 지표 부족 등의 순이었다. 사업기획부분의 개선방안으로는 통합적인 지원책 지원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다문화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다양한 지원사업 체계적 시행,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순이었다.

사업관리(전달체계)에서 어려운 점은 전달체계의 미흡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복 사업 시행, 다문화지원센터 부족, 행사 및 사업 홍보 부족, 다문화 가정 정보 부족 등의 순이었다. 사업관리(전달체계)에 있어서 개선방안으로는 다문화 지원사업체계의 일원화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일원화된 전달체계, 체계화된 다문화 가정 관리 시스템, 다문화지원센터 확대, 전담인력배치 등의 순이었다.

기타 어려운 점으로는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산발적 지원체제로 인한 문제, 취·창업 연계의 어려움, 다문화가족의 인식 개선, 국적 취득 후의 여러 가지 문제 등의 순이었다. 기타 어려운 점의 개선방안으로는 입국 시 연결기관 지정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안부 연계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적 취득 전후 문제 해결 방안 강구, 다문화 지원체계 정비, 맞춤형 취업 교육, 한국인이라는 인식 교육 등의 답변이 있었다.

〈표 V-2-38〉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추진 중 어려운 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단위: 건

구분	어려운 점	계	개선방안	계
인력	인력 부족	30	전담인력 확보	20
	타업무 병행	18	다문화 전담 조직 신설	18
	전문인력 부족	16	인력 충원	17
	전담인력 부족	15	인력고용을 위한 인건비 확충	6
	업무량 과다	4	전문인력 공급	5
예산	예산부족	28	예산운영의 단일화	19
	인건비 부족	9	국비 지원 강화	11
	지방자체단체의 열악한 재정	7	국비,도비,시비 지원	9
				66
				51

구분	어려운 점	계	개선방안	계
	사업비 부족	5	인건비 인상	8
	예산 확보의 어려움	3	자체 예산 확보	4
사업 기획	제한적 사업 내용	7	통합적인 지원책 필요	6
	전문프로그램 개발 어려움	6	프로그램 개발운영	5
	참여율 저조	5	다문화 가정에 대한 체계 적인 관리	4
	예산, 인력 부족	4	다양한 지원사업 체계적 시행	3
	실질적 지표 부족	4	다문화이해교육	3
			26	
사업 관리 (전달 체계)	전달체계 미흡	10	다문화지원사업체제 일원화	14
	중복 사업 시행	6	일원화된 전달체계	6
	다문화지원센터 부족	4	체계화된 다문화 가정 관리 시스템	5
	행사 및 사업 홍보 부족	4	다문화지원센터 확대	4
	다문화 가정 정보 부족	3	전담인력배치	2
		27		31
기타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6	입국 시 연결기관 지정 또 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안 부 연계	3
	산발적 지원체제로 인한 문제	4	국적 취득 전후 문제 해결 방안 강구	2
	취,창업 연계의 어려움	3	다문화 지원체계 정비	1
	다문화가족의 인식 개선	2	맞춤형 취업교육	1
	국적취득 후 문제(이혼, 가 출, 정부 지원 제외 등)	2	한국인이라는 인식 교육	1
		17		8

면담내용 분석에서도 설문조사와 유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재정지원의 문제, 프로그램과 자료 부족의 문제,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 대상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지원의 문제, 정부와 지역의 의사소통 결여의 문제, 지역 내에서의 연계와 협력의 부족 문제, 대상자의 문제 등이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자료의 개발과 보급, 포털사이트 구축 및 지원창구의 일원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 연계와 협력, 지원대상자에 대한 일정 책임 부여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다.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 대상에 따른 지원 정책이 만들어지면 이를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재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여 일회성 성격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이루어내기가 어렵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이 워낙 미미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교육예산의 다문화 쪽은 0.1%정도 밖에는 안 될걸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엄청나게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략) 예산지원 없이 정책만 내놓고 하다보면 교육 쪽에서는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1회성의 성격이 강한 거 같아요, 교육청도 그렇고 사업들 자체가. (A시교육지원청 행정가, 집단면담)

영유아 쪽의 부모-자녀관계 개선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속에는 딱 간식비 3만원에 감사비 10만원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일회성, 단기성 밖에 안 되니까..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만..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집단면담)

다문화 가정이나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과 자료가 급한 것 위주로 개발되다 보니, 체계적으로 개발·보급되지 않고 있으며,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 가정 부모가 참고할 수 있는 아동발달 번역 자료나 영유아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재와 자료를 체계적, 단계적으로 만들어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

지금 모든 프로그램들은 가정을 위한 것이던, 아이를 위한 것이던 급한 것 위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아동들의 발달단계라든지 종합적인 성장에 대한.. 그러한 종합적인 각 프로그램이 아직 체계적으로 개발이 안 되어서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영유아 가정 지원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더라고요. (D시청 행정가, 집단면담)

다양한 교재교구가 필요해요. (중략) 책부터 시작해서 낱시대까지...소외된 아이들한테 아이의 흥미에 맞는 교재교구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으면 좋겠어요. (C 희망유아교육사, 집단면담)

아동발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임신과 출산만 나와 있거든요. (중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발달 단계별 번역본이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F 방문지도사, 집단면담)

다문화 가정이 언제든 들어와서 답답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구축과 함께,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원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지원대상의 편리함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기관의 능력과 기능을 없애 버리는 통합의 형태가 아닌 협력이 되어야 한다.

다문화 홈페이지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중략) 교육청이나 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뭔가를 물어보고 알아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중략) 들어가면 탁 들어가서 우리가 답답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A시교육지원청 행정가, 집단면담)

우리 지역 일반 가정이나 시설이나 초등학교의 모든 분들이 센터 한군데만 가면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D시에서는 시에다가 다문화상담창구를 만들었어요. (중략) 여기저기 안가도 되고 시 센터 한 곳에 가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해당되는 분야 매뉴얼대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D시청 행정가, 집단면담)

각 부처와 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양면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비하기는 힘들 거예요. 통합을 한다고 해서 각 기관의 능력과 기능을 없애버리는 통합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방 수준에서 수요자와의 접전지역을 파악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B시교육청, 개인면담)

여가부에서든 어디서든 여성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어디어디에서 하고, 남편에게 지원하는 건 어디어디에서 하고,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 어디어디 이렇게 해 가지고 총체적인 리플릿이라도 있으면... 처음 하는 지역들은 그런 정보망이 제일 부족하니까. (B시J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개인면담)

정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지원이 아닌 상황과 요구에 따른 융통성이 요구된다. 자녀의 연령, 지역, 결혼이민자의 출신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방법, 기간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대상의 특성에 따라 필요나 요구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어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연령대별로 다 달라요. 출산을 해서 기를 때 3-4개월 정도 되었을 때는 아이가 왜 안자는 건지, 지치다 보니까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힘들어하고, 4개월 지나면서부터는 이유식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H 방문지도사, 집단면담)

영아를 데리고 있는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어요. (중략) 영유아라면 센터에 집합교육 올 때 탁아 그 부분이 있고... (I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집단면담)

만 3세 전까지는 어머니가 나와서 교육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문지도사를 이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중략) 3세가 넘으면 공교육기관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기관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많이 비는 것 같아요. (E 방문지도사, 집단면담)

지역적으로 인구수에 따라 고려를 해 봐야 해요. 어디까지의 가정을 방문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의 형태를 계속 바꾸어 가야 가는 것이죠. (여성가족부 행정가, 집단면담)

시와 농촌지역의 다른 점은 찾아와서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버스를 가지고 초등

학교와 유치원 셔틀버스를 돌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이 걸려요. 그래서 엄마가 초등학교에 오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 교육 지원을 할 때도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서, 집에 와서 해주기를 바라면 집에 와서 해주고, 거기 와서 해주기를 바라면 그렇게 해주고, 학습자의 요구에 맞춰서 하면 좋겠어요. (C 희망유아교육사 집단면담)

실질적으로는 1년 가까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 5개월로 딱 묶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H시청 행정가, 집단면담)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농촌이면 농촌 특성이 있고, 도시면 도시의 특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딱 정해진 것을 받아서 하는 게.. 중앙에서 내리는 핵심사업들이 너무 많대요. (A 민간단체, 개인면담)

지금까지의 지원정책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현장의 상황과 노하우를 기초로 정부와 의사소통하며 정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쌍방적인 그런 상황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다시 전달되고.. (중략) 초반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사업을 꾸려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향후에는 보다 더 위에서 내려지는 정책보다는 현장의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많이 발굴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집단면담)

지원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든 이러한 기관이나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지원창구의 일원화와 연계하여 일원화된 창구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지원 기관이나 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복지관이든 보육시설이든 유치원에서 하건.. 어디에서 하건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필요하고...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집단면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장소제공이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선생님이 가서 하겠다.. 하더라도 개방을 안 해주세요. (G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집단면담)  
농촌은 면단위 이하의 교육기관이 전무해요. 어린이집에서 시내까지 한 아이를 태우러 가기에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그러니까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면단위 이하의 기관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어요. (E 방문지도사, 집단면담)

중앙정부는 예산과 정책을 짜고 지방정부에서는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와 협의해서 역할 분담을 해야 해요. (H 민간단체, 개인면담)  
지역별로 다문화 담당이 모여서 하는 협의체가 있어요. 분기별로 시청에서 모임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교육라인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행정기관하고는 원활하지 못합니다. (B시교육청, 개인면담)

현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불어 지원을 받는 대상의 책임감이 결여된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무조건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는 대상에 일정 부분 책임을 부여하여 지원대상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퍼주기식의 도움은 좀 줄이고, 교육을 곁들여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영양플러스사업도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지원이 계속 되고..(중략) 지원을 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교육도 받도록 한다면 효과적인 것 같아요. (E 방문지도사, 집단면담)

지금은 대상자들이 수업을 빠지거나 미루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줄 때는 그분들도 좀 책임을 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G 방문지도사, 집단면담)

다문화학생들에게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너무 이게 남발이 되다보니까 학생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도 주고 어디에서도 주고 다 주니까... 받는 혜택에 대한 느낌이 크지 않고 당연히 나라에서 주니까 받는 다 그런 식이 되어버렸지요. (B시다문화교육센터, 개인면담)

다문화 영유아를 지원할 때는 그 유아만 별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문화 유아는 그들대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한국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여성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이 되리라는 프로그램에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와 닿는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나머지 한국 사람에게는 또 박탈감을 주는... 다문화 가정의 50%가 저소득층이라고 봤을 때 다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늘려야지, 다문화가족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줘서... 한국인 자원 활동가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다문화 2세이기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급식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 (A 민간단체, 개인면담)

나) 서비스 제공 시의 지원

<표 V-2-39>는 각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도사와 희망유아교육사가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대상 가족의 협조 및 이해 부족, 다문화에 대한 지도사 자신의 지식이나 이해 부족, 특정 민족이나 인종 및 문화에 대한 지도사 자신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봉사 및 행정적인 업무, 계획서 작성 및 일지 작성의 경우 지도사와 희망유아교육사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별로 어렵지 않거나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많아 대체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사회인식 부족, 열악한 근로조건, 다문화관련 교수활동 자료 부족의 경우는 지도사와 희망유아교육사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아 대체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부족, 보수교육프로그램 미흡 및 기회 부족의 경우는 지도사는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던데 반해, 희망유아교육사는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고, 반대로 지원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의 경우는 지도사가 어렵다는 응답이 많고 희망유아교육사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많아 서비스 제공자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V-2-39>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단위: %(명)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조금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	$\chi^2(df)$
지원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전체	9.5	30.0	30.8	28.1	1.6	100.0(370)	57.295***
	지도사	4.3	26.2	33.0	34.8	1.8	100.0(279)	
	희망유아교육사	25.3	41.8	24.2	7.7	1.1	100.0( 91)	
대상 가족의 협조 및 이해 부족	전체	13.5	35.1	26.2	22.7	2.4	100.0(370)	1.869
	지도사	12.5	35.1	26.9	22.6	2.9	100.0(279)	
	희망유아교육사	16.5	35.2	24.2	23.1	1.1	100.0( 91)	
다문화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나 이해 부족	전체	14.3	49.3	27.2	8.4	0.8	100.0(371)	12.913*
	지도사	14.3	52.3	25.8	7.5	0.0	100.0(379)	
	희망유아교육사	14.1	40.2	31.5	10.9	3.3	100.0( 92)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부족	전체	4.6	24.3	31.6	34.6	4.9	100.0(367)	19.281**
	지도사	55.4	28.2	30.7	32.9	2.9	100.0(277)	
	희망유아교육사	2.2	12.2	34.4	40.0	11.1	100.0( 90)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조금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	$\chi^2(df)$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사회인식 부족	전체	3.8	19.8	41.7	29.8	4.9	100.0(369)	3.541
	지도사	2.9	20.6	41.9	29.2	5.4	100.0(277)	
	희망유아교육사	6.5	17.4	41.3	31.5	3.3	100.0( 92)	
열악한 근로조건	전체	1.3	6.2	23.2	45.6	23.7	100.0(371)	4.658
	지도사	1.1	5.7	22.9	48.4	21.9	100.0(279)	
	희망유아교육사	2.2	7.6	23.9	37.0	29.3	100.0( 92)	
다문화 관련 교수활동 자료 부족	전체	3.2	15.4	27.5	40.7	13.2	100.0(371)	8.686
	지도사	3.2	17.6	27.6	40.9	10.8	100.0(279)	
	희망유아교육사	3.3	8.7	27.2	40.2	20.7	100.0( 92)	
지도사 자신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전체	32.8	46.2	16.1	4.6	0.3	100.0(372)	5.383
	지도사	34.3	46.4	14.6	4.6	0.0	100.0(280)	
	희망유아교육사	28.3	45.7	20.7	4.3	1.1	100.0( 92)	
봉사 및 행정적인 업무	전체	7.9	35.2	32.5	19.8	4.6	100.0(369)	9.805*
	지도사	7.9	35.2	32.5	19.8	4.6	100.0(280)	
	희망유아교육사	7.9	31.5	42.7	18.0	0.0	100.0( 99)	
계획서 작성 및 일지 작성	전체	10.6	30.9	36.3	19.8	2.4	100.0(369)	13.567**
	지도사	9.3	28.0	36.6	22.9	3.2	100.0(279)	
	희망유아교육사	14.4	40.0	35.6	10.0	0.0	100.0( 90)	
보수교육프로그램미흡 및 기회 부족	전체	3.3	20.4	44.0	23.9	8.4	100.0(368)	58.382***
	지도사	4.0	24.9	49.1	17.3	4.7	100.0(277)	
	희망유아교육사	1.1	6.6	28.6	44.0	19.8	100.0( 91)	

<표 V-2-40>은 지도사와 희망유아교육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가정과 경험한 갈등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지도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가정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대상자 가족의 협조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고, 대상자의 이해부족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왔다. 희망유아교육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가정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대상자 가족의 협조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 학습 위주의 수업 요구, 특별한 갈등 없음, 희망유아교육사에 대한 인식 부재,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40〉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가정과 경험한 갈등

단위: 건

구분	갈등 경험	계
지도사	대상자 가족의 협조 부족	4
	대상자의 이해 부족	2
희망유아 교육사	대상자 가족의 협조 부족	17
	학습 위주의 수업 요구	7
	특별한 갈등 없음	4
	희망유아교육사에 대한 인식 부재	3
	의사소통 어려움	3
	기타 응답	14

〈표 V-2-41〉은 지도사와 희망유아교육사가 다문화 가정과 갈등 시 이들을 위해 제공한 지원과 상담 조사결과이다. 지도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가정과 갈등 시 지도사를 위해 어떠한 지도와 상담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응답은 센터의 상담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상자 가족을 설득, 센터 언어 교실 이용, 가정 건강지원 순이었다. 희망유아교육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가정과 갈등 시 희망유아교육사를 위해 어떠한 지도와 상담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응답은 지원과 상담을 받기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의 참여를 유도, 동료와 상의, 교육사업의 취지에 대해 설명, 대상 유아가 겪는 문제점을 상담, 한국어 교육, 가족관계 상담, 장학사의 지도와 협의 등의 순이었다.

〈표 V-2-41〉 다문화 가정과 갈등 시 지원과 상담

단위: 건

구분	지원과 상담	계
지도사	센터의 상담	3
	대상자 가족을 설득	2
	센터 언어 교실 이용	1
	가정 건강지원	1
희망 유아교육사	지원과 상담을 받기 어려움	8
	가족의 참여를 유도	6
	동료와 상의	4
	교육사업의 취지에 대해 설명	3
	대상 유아가 겪는 문제점을 상담	3
	한국어교육	3
	가족관계 상담	3
	장학사의 지도와 협의	2

다) 정책 지원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지도사, 희망유아교육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답변은 아래 <표 V-2-42>와 같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으로는 ‘자녀 양육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이해교육’, ‘경제적 지원’, ‘언어발달지원’, ‘보육시설 부족’등의 순으로 답변이 많이 나타났다.

‘자녀 양육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의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영유아 생활전반에 걸친 부모교육, 각 국 언어로 번역된 서적·육아정보 제공,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다문화이해교육’의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다문화 전문가의 연수 필요, 의무적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다문화 관련 사업비 우선 책정, 국가적 차원의 홍보, 보육시설 및 유치원 교사 교육이나 연수 필요 등의 답변이 있었다. ‘경제적 지원’의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보육비·양육비 확대 지원, 대상 자격 확대, 생활 여건에 따른 차등지원, 다문화 사업비 내 자녀교육비 예산 확보 등의 답변이 있었다.

<표 V-2-42>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위: 건

부족한 점	개선점	계
자녀 양육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	영유아 생활전반에 걸친 부모교육 각 국 언어로 번역된 서적, 육아정보 제공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 양육지도사 파견 확대 이주민-한국인 양육자간의 교류 및 자조모임을 통한 영유아 교육	34
다문화이해교육 (교사, 담당자, 영유아, 학부모, 일반인 등)	다문화 전문가의 연수 필요 의무적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다문화 관련 사업비 우선 책정 국가적 차원의 홍보 보육시설 및 유치원 교사교육이나 연수 필요	21
경제적 지원 (보육비, 양육비, 출산지원금, 병원비등)	보육비 확대 지원 대상 자격 확대 양육비 확대 지원	18

부족한 점	개선점	계
	생활 여건에 따른 차등지원 다문화 사업비 내 자녀교육비 예산 확보	
언어발달지원	각 센터별 언어지도사 확충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 한국어 노출 기회 확대 이중언어교육 확대 실시 예산, 인력 확보	17
보육시설 부족	일반 아동과의 통합 어린이집 개설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보육시설 설치 다문화 전담 보육시설 설치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농어촌 면단위 보육시설 설치	13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에 대한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아래 <표 V-2-43>과 같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으로는 '체계적 지원 및 관리'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산 부족',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다문화이해교육', '경제적 지원' 등의 순으로 답변이 많이 나타났다.

'체계적 지원 및 관리'의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단일화된 사업 추진기관, 대상자 요구에 따른 개별 맞춤형 지원,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기관 간 협력으로 사업 조정 및 집중화, 구체적 정책을 쉽게 투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의 답변이 있었고, '예산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예산 증액, 단일화된 추진기관 설립으로 중복 사업 제거, 지역 실태에 맞는 지원,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업무 담당자 연수 및 우수사례 홍보, 자원봉사자 확보 등의 답변이 있었다.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의 개선점으로는 기관 간 연계 강화로 프로그램 공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 편성,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답변이 있었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답변은 아래 <표 V-2-44>와 같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이해교육', '체계적 지원 및 관리', '자녀 양육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 '예산 부족' 등의 순으로 답변이 많이 나타났다.

〈표 V-2-43〉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건

부족한 점	개선점	계
체계적 지원 및 관리	단일화된 사업 추진기관	28
	대상자 요구에 따른 개별 맞춤형 지원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기관 간 협력으로 사업 조정 및 집중화	
	구체적 정책을 쉽게 투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예산 부족	예산 증액	28
	단일화된 추진기관 설립으로 중복사업 제거	
	지역 실태에 맞는 지원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업무 담당자 연수 및 우수 사례 홍보	
	자원봉사자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기관 간 연계 강화로 프로그램 공유	20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 편성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이해교육 (교사, 담당자, 영유아, 학부모, 일반인 등)	체험 기회 확대	17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실시	
	보육시설 교사 및 담당자 연수 확대	
	이주여성을 맞이하는 한국 가정의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화	
경제적 지원	양육비 확대 지원	14
	보육비 100% 지원	
	자활 능력 제공	
	영유아 무상교육(급식비, 교통비 포함)	
	영유아 지원예산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우수 프로그램 공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결, 다문화 아동 전담 교육시설 운영, 지도사 확보 등의 답변이 있었고, ‘다문화이해교육’의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실시, 범국민적인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교사교육시 다문화이해교육 필수 이수, 보육시설 교사 및 담당자 연수 확대 등의 답변이 있었다. ‘체계적 지원 및 관리’의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전달체계의 일원화로 사업의 극대화, 지원체계의 단일화, 업무의 표준화, 지속적인 지원, 개별방문지도 등의 답변이 있었다.

〈표 V-2-44〉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  
지방자치단체

단위: 건

부족한 점	개선점	계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우수 프로그램 공유	26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결	
	다문화 아동 전담 교육시설 운영	
	지도사 확보	
다문화이해교육 (교사, 담당자, 영유아, 학부모, 일반인 등)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실시	13
	범국민적인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	
	교사교육시 다문화이해교육 필수 이수	
	보육시설 교사 및 담당자 연수 확대	
체계적 지원 및 관리	전달체계의 일원화로 사업의 극대화	12
	지원체계의 단일화	
	업무의 표준화	
	지속적인 지원	
	개별방문지도	
자녀 양육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	부모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보급	10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교육	
	양육지도사 파견 확대	
	각 국 언어로 번역된 서적, 육아정보 제공	
	멘토링 제도	
예산 부족	예산 증액	9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예산 확보	
	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확보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에 대한 다문화 지도사의 답변은 아래 <표 V-2-45>와 같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으로는 '서비스의 질과 체계성', '지도사 자격 강화 및 보수 교육', '교재교구 부족', '짧은 서비스 기간', '한글 지도', '유아대상 체험 학습 부족'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위의 부족한 점에 대한 각각의 개선점으로는 지도사의 전문성 강화 및 고용 안정, 지도사의 고용 안정 및 급여 개선, 교재교구 제공 및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기간 연장, 가정방문 시 한글지도 제공, 유아대상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라는 답변이 나타났다.

〈표 V-2-45〉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  
지도사

부족한 점	개선점	계
서비스의 질과 체계성	지도사의 전문성 강화 및 고용안정	1
지도사 자격 강화 및 보수교육	지도사의 고용안정 및 급여 개선	1
교재교구 부족	교재교구 제공 및 프로그램 제공	1
짧은 서비스 기간	서비스 기간 연장	1
한글지도	가정방문시 한글지도 제공	1
유아대상 체험 학습 부족	유아대상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1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에 대한 희망유아육사의 답변은 아래 <표 V-2-46>과 같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으로는 ‘다문화 교사 연수’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 양육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 ‘다문화이해교육’, ‘교재교구 부족’,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등의 순으로 답변이 많이 나타났다.

‘다문화 교사 연수’의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희망유아교육사에 다문화교육 연수 확대, 지속적인 교사 연구, 현장 실태를 반영한 실무 연수 교육, 다문화 가정과 교사 합동 연수로 정책 홍보, 효과적 교수법 및 수업의 질 개선 등의 답변이 있었고, ‘자녀 양육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의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학부모 제공 자료의 영어화, 부모교육 및 상담 실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정기적 방문, 부모와 지원기관의 연계 강화, 부모 정서 지원 등의 답변이 있었다. ‘다문화이해교육’의 부족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보육시설 교사 및 담당자 연수 확대, 홍보 강화, 일반가정 유아와의 통합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구성원(아빠, 조부모 등) 교육, 다문화에 대한 체계적 자료 제작·보급 등의 답변이 있었다.

〈표 V-2-46〉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과 개선점:  
희망유아교육사

단위: 건

부족한 점	개선점	계
다문화 교사 연수	희망유아교육사에 다문화교육 연수 확대	17
	계속적인 교사 연구	
	현장 실태를 반영한 실무 연수 교육	

부족한 점	개선점	계
	다문화 가정과 교사 합동 연수로 정책 홍보 효과적 교수법 및 수업의 질 개선	
자녀 양육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	학부모 제공 자료의 영어화 부모교육 및 상담 실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정기적 방문 부모와 지원기관의 연계 강화 부모 정서 지원	17
다문화이해교육 (교사, 담당자, 영유아, 학부모, 일반인 등)	보육시설 교사 및 담당자 연수 확대 홍보 강화 일반가정 유아와의 통합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구성원(아빠, 조부모 등) 교육 다문화에 대한 체계적 자료 제작, 보급	14
교재교구 부족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 제공 학기단위로 일괄 구매하여 제공 현장에서 쉽게 활용가능한 교재 제공 견고하고 완성도 높은 자료 영유아 대상 교구 보급	14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타 센터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프로그램 개발 가정과 지원기관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다양하고 접하기 쉬운 프로그램 개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확대	10

### 3. 시사점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실태와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행정체계와 지원내용으로 나누어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행정체계에 대한 시사점

첫째,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만 여전히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더구나 지원대상에 대한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소외되는 유아 없이 골고루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지원정책이라도 상황과 요구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대상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쌍방적인 의사소통, 다문화 지원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와 협력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조사 결과, 다른 부처 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100%에 가까웠다. 그러나 실제 연계협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행정기관, 학교와의 연계 협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다문화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 협력은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들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문화 사업 담당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인력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70% 이상이었으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80% 이상이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다문화 주무과와 지원과 인력이 1명인 곳이 약 70%이었으며,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한시적이고 급한 정책 우선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원 정책에 따라 일회적, 단기, 중기, 장기 등의 재정계획을 세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문화 가정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교육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포털사이트 구축과 다문화 가정 지원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다문화 가정에게 무조건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 책임감이 부여될 때 지원되는 교육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효과도 있을 것이다.

## 나. 지원내용에 대한 시사점

첫째, 다문화 가정 영유아 대상으로는 보육·교육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어머니와의 유대감 및 정체성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대상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아 대상으로는 신체 및 정서발

달 지원 서비스를, 유아 대상으로는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서비스를 고루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영아의 경우에는 신체발달과 정서발달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에 비해, 유아의 경우에는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 대상의 연령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부모 대상 한국어교육 및 가족관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한국어 교육, 육아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정서지원, 부부 및 가족관계 상담 순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다문화 영유아 및 일반 영유아와 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사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일반 영유아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고, 현재도 실행되고 있는 지원 정책이지만, 현장에서는 일반인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다문화 영유아 대상 서비스, 일반 영유아 및 부모 대상 서비스, 다문화 관련 교사 연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모두 70-80%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영유아 대상 서비스 뿐 아니라, 일반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과, 이들을 돌보는 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VI.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 1. 기본 방향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체계에서의 효율화와 지원내용에서의 효율화가 모두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가 효율적이라면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지원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더불어 실제로 지원하는 내용이 가장 효과적인 것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문헌연구, 국내정책분석, 설문분석, 면담내용분석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다문화 영유아 지원의 어려움은 지원대상 파악이 어렵다는 것, 지원기관별 연계가 안 되어 중복지원이 나타난다는 점, 지원대상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 지원을 위한 자료와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지원대상에게 책임감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 지원의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되, 국외정책사례분석이나 일부 면담 내용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근거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지원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다문화 가정과 함께 더불어 가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 즉 다문화 가정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지원하되, 다문화 가정 영유아만 별도로 지원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복지지원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기초하여 중복지원을 줄이고 대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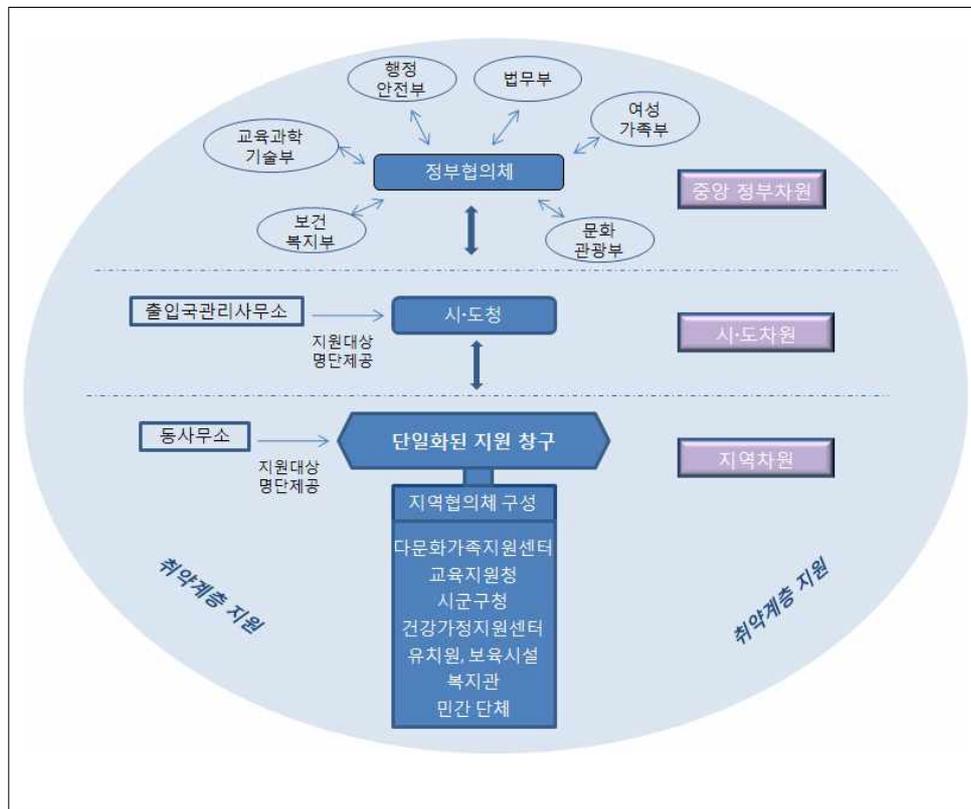
넷째, 정부주도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지역사회의 협의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2. 세부 추진 방안

본 절에서는 다문화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을 행정체계에서의 효율화와 지원내용에서의 효율화 방안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 가. 행정체계의 효율화 방안

행정체계에 있어서의 효율화 방안으로는 지원 창구의 일원화 및 포털사이트 구축, 지역협의체 구성 및 역할 분담, 지원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 지원 인력 및 재정 확보, 다른 지원 체제와의 연계 및 협력을 제안하였다.



[그림 VI-2-1]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의 효율화 방안

## 1) 지원 창구의 일원화 및 포털사이트 구축

### 가) 근거

이론적 배경에서 다문화 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문화 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성 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3.3%가 효율성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국내 다문화 지원 정책이 여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전달체계, 다양한 민간단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이름과 대상,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면담내용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지원보다는 한 곳에 방문하여 모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절실하다. 또한 부모교육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더불어 본 연구의 외국사례에서 보면, OECD 선진국의 경우에도 다문화 가정 학부모 및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각종 기관에서 분산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산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아일랜드는 AIM(The Accessing Intercultural Materials)이라는 웹 포털을 만들어 이민자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접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민자가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지원 방안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원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것은 모든 역할을 한 기관에서 통합하여 전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각 기관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되 지원대상을 공유하고 지원창구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통해 지원대상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각 부처의 협의체를 통해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수립을 총괄하도록 하고, 시도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부서를 통해 정부정책을 지역으로 전달한다. 지역차원에서는 지역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시군구청이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혹은 민간단체가 단일화된 지원창구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에 전담부서를 두어 인력을 확보하고, 단일화된 지원 창구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더불어 그 지역의 다문화 관련 지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의 누구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포털사이트에서는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이 낮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위해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일상적인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동시에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들 정보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모국어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털사이트의 관리는 지원 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이 담당한다.

## 2) 지역협의체 구성 및 역할 분담

### 가) 근거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분석해 보면,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일부 사업은 그 대상과 내용이 중복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영유아의 연령이나 속해 있는 기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및 학습자료 개발, 다문화 관련 강사 양성 등 유사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 영유아 대상 사업은 기관을 다니는지 여부, 어떤 기관을 다니는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지원이 달라진다. 따라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OECD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민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간의 통합(integration)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간의 연계체제 구축을 중요한 국가 수준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일랜드, 스웨덴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사회 통합을 담당하는 부처를 설치하고, 다문화 가정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교육지원을 범 부처 차원에서 통합,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다른 부처 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100%에 가까웠다. 그러나 실제 연계협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행정기관, 학교와의 연계 협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다문화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 협력은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 나) 지원 방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정부협의체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하며, 지방정부와의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처 간 협력은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교육지원을 제공하는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알리고 지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에서는 단일화 창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그 지역만의 특화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관련 기관과 단체의 협의체를 통하여 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다양한 사업을 서로 연계하며, 단일화된 창구를 통하여 정책 지원대상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연계시켜야 한다. 예컨대 예산은 정부기관에서 프로그램 개발은 교육청에서 사업추진은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에서 담당하되, 지원대상을 공유하여 그 특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기관과 시민단체 등 NGO와의 연계를 통해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내실화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3) 지원대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

### 가) 근거

본 연구의 외국 사례에서 나타난 중요한 시사점은 전체적인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 정책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지원대상(target group)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 단계에서의 언어 및 발달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추가적인 본국 언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한 가정환경에서 오는 영유아의 언어발달 지연을 보완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면담내용 분석을 보면 지원대상에 대한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 운영의 첫 단계인 사업의 대상에 대

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처럼 사업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중복 지원을 받는 대상과 소외되는 대상을 만들어 낸다.

#### 나) 지원 방안

현재 기관별로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대한 파악방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원대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서 등록되어 있는 가정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중복되고, 파악이 되지 않은 가정의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거주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비밀을 보장한다는 원칙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도청의 전담 부서에 다문화 가정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차원에서는 시도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보를 지역의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전달받거나 동사무소를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는 개별적으로 지원대상을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지원대상에게 공정하게 지원 정책을 알리고 대상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원대상에 대한 파악은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거주지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환경과 발달특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진단은 영아의 경우 방문교육사나 보육시설 교사를 통해 수행될 수 있으며, 유아의 경우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원대상의 수준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은 일률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상황과 요구에 따른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4) 지원 인력 및 재정 확보

#### 가) 근거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문화 사업 담당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인력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70% 이상이었으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80% 이상이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다문화 주무과와 지원과 인력이 1명인 곳이 약 70%이었으며,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면담내용 분석 결과,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시적이고 급한 정책 우선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원 정책에 따라 일회적, 단기, 중기, 장기 등의 재정계획을 세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71개가 생겼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결혼이민자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생애주기별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은 상당히 많다. 그러다보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질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있다.

#### 나) 지원 방안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들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시도청이 시도차원의 전달체계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별로 다문화 영유아 지원 창구가 일원화되면 시도청의 전담부서와 지원창구의 역할을 하는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예컨대, 시도청의 전담부서에는 최소한 3명의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원창구의 역할을 하는 기관에는 역할별로 특화된 전문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 정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인력, 지역협의체의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다문화 지원 포털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인력 등 최소한 4명 이상의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

인력 보강은 곧 재정지원과 연결이 된다. 또한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흩어져 있는 기관을 하나의 협의체로 모으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일정 부분의 재정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 5) 다른 지원 체제와의 연계 및 협력

#### 가) 근거

본 연구의 외국 사례를 보면, OECD 국가의 경우 점차 다문화 가정 영유아만을 위한 특별 지원 정책을 다른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전체 영유아를 위해 유치원 이전 단계에서의 영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더

불어 스웨덴, 네덜란드의 사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유아에 대한 정책지원과 학교교육에 대한 정책 지원간의 연계, 관련 행정 조직의 통합 등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지원 방안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이 이들 다문화 가정 영유아와 비슷한 한계(예를 들면, 언어발달 수준 또는 재정적 한계)를 안고 있는 다른 영유아를 배제한다면 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의 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불균형적 지원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반감을 불러 일으켜 자칫 사회적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라는 전체 맥락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 영유아가 다른 취약계층 영유아와 비교하여 특별히 다른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다문화 영유아를 위한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전반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과 이들만을 위한 지원 정책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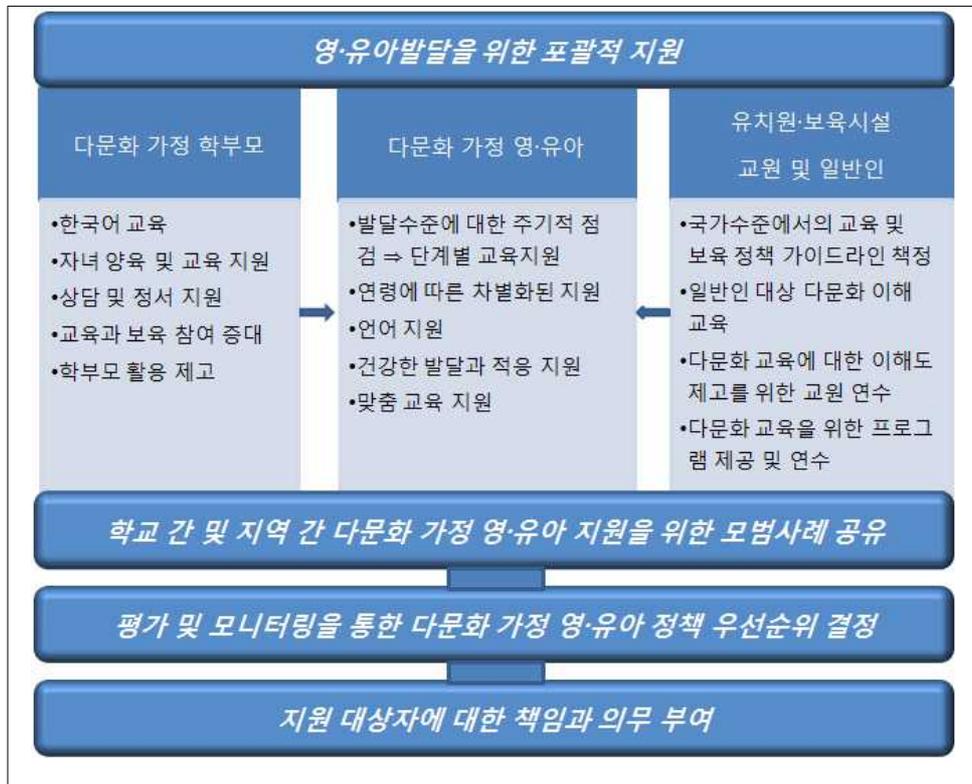
결과적으로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이들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전체적인 체계 내에서 일관성 있는 지원을 하되, 다문화 가정 영유아만이 가진 특성과 필요에 근거하여 융통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적어도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지원하면서 내국인이 소외감을 느끼는 일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영유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indicator)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표는 언어를 포함한 각종 발달에 대한 평가 결과 등 영유아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한계에 대한 지표와 영유아가 지닌 각종 환경적인 요인(부모 관련 취약성, 거주 지역, 소득 수준 등)에 대한 지표로 구성하여 각 영유아가 지닌 취약 부분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취약 부분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지원내용의 효율화 방안

지원내용의 효율화 방안으로는 영유아 발달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학교 간 및 지역 간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모범사례 공유,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정책 우선순위의 결정, 지원대상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부여를 제안

하였다. 영유아 발달을 위한 포괄적 지원에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직접 지원, 다문화 가정 학부모에 대한 지원, 유치원 교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및 일반인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 발달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단계별 교육지원,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언어 지원, 건강한 발달과 적응 지원, 맞춤 교육지원을 제안하였고, 다문화 가정 학부모에 대한 지원으로는 한국어 교육,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상담 및 정서 지원, 교육과 보육 참여 증대, 학부모 활용 제고,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으로는 국가수준에서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지원 정책 가이드라인 책정, 일반인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 다문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연수를 제안하였다.



[그림 VI-2-2]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지원내용의 효율화 방안

## 1) 영유아 발달을 위한 포괄적 지원

### 가)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직접 지원

#### (1) 근거

우리나라 정책을 분석해 보면 그동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민자 정착과 지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이제 막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해서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이므로 이들이 영유아 양육과 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면담내용 분석을 보면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만 여전히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더구나 지원대상에 대한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소외되는 유아 없이 골고루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지원 정책이라도 상황과 요구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대상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OECD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때 언어교육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었다. 그러나 언어교육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영아의 경우에는 신체발달과 정서발달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에 비해, 유아의 경우에는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 대상의 연령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영유아는 자신의 외모로 인한 정체성 혼란, 가정 내 언어자극 부족으로 인한 언어문제,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가난한 나라에서 온 어머니와 불쌍한 아이라는 주변의 편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어머니를 둔 가정 유아 부모의 이중 국적으로 인한 생활양식의 차이, 문화경험의 차이, 이중언어 사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도 보고된다. 따라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발달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며 잘 적응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가 요구된다.

## (2) 지원 방안

## (가) 다문화 가정 영유아 발달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개별적인 지원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진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점검결과에 근거하여 각각의 교육단계별로 필요한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 (나)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대상 연령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각각에 대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아 대상으로는 신체 및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를, 유아 대상으로는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등 전인적인 발달에 초점을 두어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 언어 지원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언어지원을 충실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영유아단계의 언어발달 수준을 체크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언어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별하고 이들 영유아를 위한 추가적인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추가적인 언어교육 프로그램은 초등 및 중등단계의 지속적인 언어교육 지원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 (라) 건강한 발달과 적응 지원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기에 맞는 보건 혜택 및 영양 패키지 제공과 함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불어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멘토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발달과 적응을 지원할 수 있다. 영유아에 대한 이해가 있는 대학의 유아교육과와 보육 관련 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멘토를 선발하고, 멘토의 역할을 한 학생에게는 봉사학점<sup>11)</sup>을 부여한다.

11) 2009년 이후 입학자에게 적용되는 유치원교사양성교육과정의 교직과목 이수기준 중 교직실습은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봉사활동을 2학점 이내 포함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 (라) 다문화 가정 영유아 맞춤 교육 지원

다문화 가정 영유아는 각각 다른 종류의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모든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책('one size fits all' policy)은 개별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교육적 필요 사항을 만족시키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특히, 그러한 정책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나 한계 상황에 있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교육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데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개별 다문화 가정 영유아가 어떤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진단,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나) 다문화 가정 학부모에 대한 지원

## (1) 근거

영유아는 그 발달특성상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이민자 비율이 높은 국가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민자 학생의 가정환경 변인이 본국 학생의 가정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형편이다. 물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일부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이민자 학생의 가정환경이 본국 학생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본국 학생의 가정환경보다 나은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극소수이다.

한편,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보면 어머니가 외국인일 경우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는 언어발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 시 어머니 자신의 모국어 보다는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부모 대상으로는 한국어 교육, 육아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정서지원, 부부 및 가족관계 상담 순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업이 한국어교육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사례에서도 교육수준이 낮거나 정착국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일수록 자녀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생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낮은 경향이 있다. 이에 아일랜드에서는 Home school community liaison coordinators를 통해 단위 학교에서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이들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외국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 이민자 학부모의 자원을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이민자 학생 상담 등의 역할 부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의 경우 'Community liaison coordinators'라는 제도를 통해 이민자 학생과 같은 문화/언어적 배경을 지닌 학부모를 'Community liaison coordinator'로 채용하여 이민자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2) 지원 방안

### (가) 다문화 가정 학부모에 대한 한국어 교육

영유아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부모 대상 한국어 지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지도 지원을 좀 더 정교화하여 대상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방법,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나) 다문화 가정 부모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다문화 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도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양육지원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양육지도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만족도와 효과가 높으므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사업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이므로 자녀의 연령이 영아기를 벗어나면 이때부터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다문화 가정 부모에게 정보를 주고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지원을 통해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끼리 육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와 교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학부모지원센터<sup>12)</sup>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다문화 가정으로 구성된 동아리, 일반 가정과의 모임을 활성화하여 육아정보를 나누는 동시에 육아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부모 상담 및 정서 지원

결혼이민자의 경우 언어 문제부터 시작하여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하여 정서가 불안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정서적인 어려움은 영유아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부모의 어려움을 상담해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담은 면대면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문화 지원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더불어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서 지원은 결혼이민자끼리의 네트워크나 일반인과의

12) 현재 16개 교육청에서 2010년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음. 전국학부모지원센터도 2010년 11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음.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어려움을 나누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라)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교육과 보육 참여 증대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는 유아의 성공적인 유치원과 보육시설 적응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사가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관심이 부족한 학부모를 고려한 부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약계층 영유아의 경우 가정 방문을 통해 이들 영유아가 필요로 하는 교육 지원 내용을 파악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인적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0년 6월에 초중등 학교에서 parents coordinators 제도를 '학부모 상담사'라는 명칭으로 전국의 20개 초·중·고 학교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유치원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마)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활용도 제고

학부모의 다양한 문화적·언어적 배경은 사회나 유치원에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학부모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여겨진다. 한국의 경우 서울교육대학교 등에서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학부모를 위한 각종 연수 등을 통해 이들을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이다.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이중언어강사를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 부모의 한국어 수업 지원, 결혼이민자를 위한 상담사 지원, 세계문화 체험 수업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영유아와 영유아 자녀가 있는 학부모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 자원 활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다문화 가정이 단순히 지원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유치원 교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및 일반인에 대한 지원

(1) 근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해서는 영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 유치원 교원과 보육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필수적이다. 유치원 교원과 보육시설 종사자는 부모 다음으로 혹은 부모보다 더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자원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로 하여금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들을 잘 교육하고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 스스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깨고, 유아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유아 속에 두 가지 다른 문화가 통합되어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교사 스스로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보육 자료 개발 능력을 함양하도록 교사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다문화 영유아 대상 서비스, 일반 영유아 및 부모 대상 서비스, 다문화 관련 교사 연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모두 70-80%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영유아 대상 서비스 뿐 아니라, 일반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과, 이들을 돌보는 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지원 방안

### (가) 국가수준에서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지원 정책 가이드라인 책정

우리나라와 같이 동질적 사회구조에 익숙해 오다가 다문화 가정의 등장이 근래에 그리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영유아의 문화적·언어적 배경 구성에 변화를 겪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지원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차원에서의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양성과 문화 간 이해 교육에 대한 국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영유아를 지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나) 일반인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중매체 등을 통해 일반인 대상의 교육과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다문화 관련 방송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고무할만한 일이다. 더불어 다문화 이해 교육은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지도하는 교원과 종사자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치원 교원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연수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역 대학 등을 활용하여 일반인과 영유아를 대하는 교원과 종사자 대상의 다문화 이해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이버 연수 기관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연수

비록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사 및 원장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계속 교육 및 재교육차원에서의 연수 기회가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개별 영유아의 교육적 지원 수요를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에 맞는 교육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조차 아직 다문화 교육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고려할 점은 제한적인 공공 재원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다문화 가정 영유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연수를 우선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일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유치원과 보육시설 원장 및 교사를 위한 전체 유아교육 차원에서의 연수를 모든 유치원 및 종사자를 위한 프로그램(whole school approach)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문화 또는 문화 간 이해 교육은 다문화 가정 영유아뿐만 아니라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야 할 교육이며, 따라서 모든 유치원 교원과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 지원에 관한 과정이 모든 교사 양성 교육단계 및 계속 교육 프로그램에서 필수 요소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라) 다문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연수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를 통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몇 년 간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일부 개발되었고, 2010년에도 새롭게 개발되거나 수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이 다양한 기관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개발이 되고 있어 개발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과 동시에 현장에서 교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실제 적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2) 학교 간 및 지역 간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한 모범 사례 공유

### 가) 근거

본 연구의 외국 사례를 보면, 스웨덴의 경우 교육연구부 산하의 국가 교육위원회(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에서 “Idea school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 교육(다양성 교육)에 대한 모범 사례를 가진 학교를 선정하여 이들 학교의 사례를 다른 학교에 전파하고 있다.

### 나) 지원방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문화 가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및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교육기관 및 지역에서 다문화 가정 영유아 및 아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민간단체 및 기업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교육기관, 지방정부 및 민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중에는 효과적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 안산지역의 경우 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에서 각급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다문화 강사를 파견하여 다문화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세계문화 체험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모범 사례를 다른 유아 교육기관과 공유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범사례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공유를 통해 전체 교육기관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서는 모범사례를 지원하고 널리 알리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3)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정책 우선순위의 결정

### 가) 근거

현재 정부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각 사업에 대한 평가나 모니터링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면담내용을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지원대상이나 서비스 수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사례는 있지만,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면 물론 지역과 대상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각 기관마다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업에도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지에 대한 견해에도 차이가 있다.

#### 나) 지원방안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이들 영유아를 위한 지원 정책의 효과성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 계층을 활용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시기별, 주기별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 정책의 평가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체계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다문화 가정 유아의 지원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 4) 지원대상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부여

#### 가) 근거

본 연구의 면담내용 분석 결과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사실은 다문화 가정 지원이 중복되기도 하고 대상자 확보를 위해 경쟁하다보니, 다문화 가정에서는 국가의 지원을 너무나 당연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출석에도 책임감이 없어 결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참여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원받은 대상도 아무런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다.

#### 나) 지원방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현재처럼 무조건 주어지는 것에서 그들에게 일정 부분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 책임감이 부여될 때 지원되는 교육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효과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현재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던 지원을 일정한 교육에 참여한 후에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일정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교육에 참여한다고 신청을 한 후에 출석을 잘 안 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통해 다문화 가정 부모가 노력할수록 자녀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참여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런 의무와 책임 없이 저절로 얻어지는 지원의 효과를 감안한다면, 참여율이 조금 낮더라도 더 배우고자 하고 의욕적인 대상이 혜택을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원도교육청(2010). 2010학년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08). 이명박정부 교육복지대책.
- 교육과학기술부(2010). '10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10). 다문화 가정 유아교육 지원방안.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 구수연(2007).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 본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와 가정에 대한 이해.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95-124.
- 김경숙·안은영·이영선(2008).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행동특성과 이들을 위한 교수활동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8(1), 1-24.
- 김병순(2007).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 58-93.
-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옥·임진숙·정상녀(2008).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개인 변인에 따른 양육태도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43-164.
- 김유경·조애저·최현미·이주연(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이선·정해숙·이미화(2009).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역량 분석 및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춘화(2009).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김태훈(2008). 유치원의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현경·이상은·조윤아(2009). 다문화 가정 유아의 자아개념과 또래관계 간의 상관성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3), 272-288.

- 김현경(2009).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 격차인식,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229-254.
- 김희태·권영덕(2007).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의 적응과 변화 과정. 미래 유아교육학회지, 14(4), 95-117.
- 대구광역시교육청(2010). 2010 대구다문화교육 계획.
- 모선희·이인희·이선행·김성운(2008).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문무경·조혜주(2008). 다문화 가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문혁준·최윤경·서소정(2009). 다문화 가정 아동. 아동학회지, 30(6), 85-97.
- 문화체육관광부(2010).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박경자·김송이(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한국아동학회지, 28(5), 91-108.
- 박미경(2006). 교사를 통해본 다문화 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결혼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고서.
- 보건복지부(2010). 아이사랑플랜 2010년 시행계획.
- 부산광역시교육청(2010). 2010학년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활동 지원 계획.
- 서범석(2010). 다문화교육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탐색.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해정·구현아·이현주(2009). 경기도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보육지원 방안,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 서혁(2007).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인간연구, 1(12), 1-24.
- 서현·이승은(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송미경·신효정·이은경(2008).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연구(총서), 1-267.

- 심인선(2008).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양영주(2010). 경남지역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보육시설 보육요구도. 석사학위논문. 진주산업대학교.
- 여성가족부(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 오성배(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연구, 12, 1-15.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 오재연·송미선(2009). 외국인 어머니를 둔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1), 251-269.
- 외국인정책위원회(2010).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유정임(2009). 공립유치원 다문화 가정 유아의 교육실태 및 지원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윤갑정·고은경(2006).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의 한국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학회지, 26(2), 147-68.
- 윤동화(2009). 다문화 가정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자(2009). 다문화 가정 부부갈등 요인과 대책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희·홍순옥(2009). 다문화교육에 관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인식 및 실태. 인문학논총, 14(2), 259-289.
- 이삼식·최효진·박성재(2009).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 이송은(2008).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문학활동 실행연구: 필리핀 모-자를 대상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265-285.
- 이순형·문무경·최연실(2006). 농촌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방안. 농림부.
- 이재분·강순원·김혜원·이해영·서유미(2008).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분·강순원·김혜원(2008).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분·김혜원·변종임·채재은(2009). 다문화가족 역량개발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분·김혜원·오성배(2009). 학교에서의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실태 및 요구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이진숙(200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12(6), 21-42.
- 이현경·서현·김동례(2009). 다문화 가정 유아의 발달에 관한 조사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1-24.
- 인천광역시교육청(2010). 2010 다문화교육 추진계획.
- 임진숙(2008).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능력 및 사회적 능력 관계연구.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청구논문.
- 전혜정·민성혜·이민영·최혜영·조을순·장수지(2008). 국제결혼자녀실태조사 및 성장지원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정귀자(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과 통합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기선·김영혜·박경은·이은아·박지혜·이승애·이지혜(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대현(2009). 유아교사의 인적 변인과 다문화교육 신념이 교수 실체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58(9), 219-241.
- 정정희·배재정(2006). 대구 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 자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장수생활과학연구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0). 2010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 조경서·유준호·윤영배·오승아·강은덕(2007). 세계 이해 및 다문화교육 활동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조영달(2006).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영달·구정화·이혁규(2009). 다문화 가정 학생DB 현황 및 유형별 교육 요구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 조영달·박윤경·이정우·이경수·성경희·이소연·이은영(2008). 다문화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인식 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지성애·정대현·김경숙·김현주·채영란·김지예(2006).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다문화교육 실태와 교사의 인식 비교. 유아교육학회지, 19(4), 351-369.
- 최나야·우현경(2009).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1-14.
- 최선화(2009). 다문화 가정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충청북도교육청(2010). 2010년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
- 통계청(2007). 장래 추계 인구.
- 한석실(2007). 다문화시대 유아교사교육의 방향 모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1), 29-53.
- 한승준·오승은·정준호·최무현(2009).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III): 아시아국가의 다문화사회 형성과정과 정책추진체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행정안전부(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조사결과.
- 황범주(2008).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icef.or.kr/>
- 캘리포니아 학부모 지원 : <http://www.cde.ca.gov/sp/me/mt/mess.asp>
- Broekhof, K.(2006). Preschool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Sardes Educational Service, SARDES, Utrecht.
- Carneiro, P. and J.J. Heckman(2003). Human capital policy, NBER Working Paper 9495, Cambridge, MA.
- European Commission(2008).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accompanying the Green Paper Migration and Mobilit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EU Education Systems, EU.
- Eurydice(2009). Tackling Social and Cultural Inequalities Through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Brussels.
- Heckman, J. J.(2000). Policies to foster human capital, Research in Economics, 54(1), p3-52.

- IEA(2007). PIRLS 2006 Encyclopedia: A Guide to Reading Education in the Forty PIRLS 2006 Countrie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Edited by Kennedy, A.M., Mullis, I.V.S., Martin, M.O., & Trong, K.L.
- Irish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OECD(2009). "OECD Review of Migrant Education - Country Background Report for Ireland", [www.oecd.org/dataoecd/8/22/42485332.pdf](http://www.oecd.org/dataoecd/8/22/42485332.pdf).
- OECD(2001).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 OECD(2005). "Equity in Education Thematic Review - Swedish country note", OECD, Paris, [www.oecd.org/dataoecd/10/5/35892546.pdf](http://www.oecd.org/dataoecd/10/5/35892546.pdf).
- OECD(2006a).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aris.
- OECD(2006b). Where Immigrant Students Succeed: A Comparative Review of Performance and Engagement in PISA 2003, OECD, Paris.
- OECD(2007). Jobs for Immigrants (Vol. 1): Labour Market Integration in Australia, Denmark, Germany and Sweden, OECD, Paris
- OECD(2009a). Migrant Education Review: Country Note for Austria, OECD, Paris.
- OECD(2009b). Migrant Education Review: Country Note for Ireland, OECD, Paris.
- OECD(2009c). Migrant Education Review: Country Note for Norway, OECD, Paris.
- OECD(2009d). OECD Policy Review of Migrant Education: Country Note for Norway. OECD, Paris, [www.oecd.org/dataoecd/51/1/43723539.pdf](http://www.oecd.org/dataoecd/51/1/43723539.pdf).
- OECD(2010a). OECD Reviews of Migrant Education - Closing the Gap for Immigrant Students: Policies, Practice and Performance, OECD, Paris.
- OECD(2010b). Migrant Education Review: Country Note for Denmark, OECD, Paris.
- OECD(2010c). Migrant Education Review: Country Note for the Netherlands, OECD, Paris.
- OECD(2010d). Migrant Education Review: Country Note for Sweden, OECD, Paris.

- Reynolds, A. J.(1998). Developing early childhood programs for children and families at risk: research-based principles to promote long-term effectivenes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0(6), P 503-523.
- Shewbridge, C., Moonhee Kim, Wurzburg, G. and Hostens, G.(2010). OECD Reviews of Migrant Education: Netheralnds. [www.oecd.org/dataoecd/19/22/44612239.pdf](http://www.oecd.org/dataoecd/19/22/44612239.pdf)
- Skolverket(2006). Descriptive Data on Pre-school Activities, School-age Childcare, School and Adults Education in Sweden 2006, Report No. 283, Skolverket, Stockholm.
- Van Es, W.(2008). Migrant pre-school children in eleven European cities: A short analysis of measures, Sardes, The Netherlands.

## 부 록

---

- 부록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용 설문지
- 부록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용 설문지
- 부록 3. 지방자치단체용 설문지
- 부록 4. 방문지도사용 설문지
- 부록 5. 희망유아교육사용 설문지
- 부록 6. 시도교육청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및 예산
- 부록 7.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및 예산
- 부록 8. 연계와 협력 방식 및 다문화 지원사업 담당 기관



## 〈부록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용 설문지

##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이번에 여성가족부 수탁과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모와 자녀 지원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정 양육지원 방안 연구: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간입국 자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본과제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지원 프로그램 및 자녀 대상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 질문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김은영 부연구위원    02-398-7712, keycandy@kicce.re.kr  
           박수연 연구원        02-398-7718, soopark@kicce.re.kr

## 1. 일반 배경

1) 지역	_____ 시, 도 / _____ 구, 시, 군)		
	<input type="checkbox"/> ① 도시지역	<input type="checkbox"/> ② 도농복합지역(공단지역 포함)	<input type="checkbox"/> ③ 농어촌지역
2) 설립연도	_____ 년		
3) 등록 인원 수	_____ 명	1일 평균 이용 인원	_____ 명

2. 귀 센터의 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력 각각에 대해 보기와 같이 기록해 주세요.

일련 번호	직위 ① 센터장 ② 종사자 ③ 방문지도사 ④ 언어지도사 ⑤ 통번역사 ⑥ 상담원 ⑦ 기타(무엇? )	소지자격 및 배경 ① 전직교사 ② 건강가정사 ③ 사회복지사 ④ 상담사 ⑤ 가정복지사 ⑥ 결혼이민자 ⑦ 기타 사회활동가	연령 (만)	센터 근무 기간 (개월)	다문화가 족 지원 관련업무 근무 기간 (개월)	영유아 관련 업무 수행 여부 ① 수행 ② 수행 안함
보기	①	③	40세	25개월	50개월	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1. 귀 센터 인력규모의 적절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적절하지 않음(☞ 2-1-1번으로)     
  ② 별로 적절하지 않음(☞ 2-1-1번으로)  
 ③ 어느 정도 적절함(☞ 2-2번으로)     
  ④ 매우 적절함(☞ 2-2번으로)

2-1-1. 귀 센터 인력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면, 귀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적어주세요.

센터장	종사자	방문교육 지도사	언어지도사	통번역사	상담원	기타(누구: )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2-2. 귀 센터 인력의 경력이나 자격의 적절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적절하지 않음(☞ 2-2-1번으로)     ② 별로 적절하지 않음(☞ 2-2-1번으로)  
 ③ 어느 정도 적절함(☞ 3번으로)         ④ 매우 적절함(☞ 3번으로)

2-2-1. 귀 센터 인력의 경력이나 자격이 적절하지 않다면, 귀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의 경력이나 자격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적어주세요.

구분	센터장	종사자	방문교육 지도사	언어지도사	통번역사	상담원	기타
경력 분야							
자격							

\* 다음은 귀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 3. 귀 센터의 현재 사업 시행 여부를 표시하고 2010년 예산을 적어주세요.

\* 예산은 국비, 지방비, 후원 등 구분 없이 사업의 총예산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의 종류		사업 시행 여부(V표)	2010 예산(천원)
① 방문교육사업			
② 통번역서비스 사업			
③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④ 이종언어교실 운영			
센터 사업	⑤ 한국어 교육		
	⑥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⑦ 가족교육		
	⑧ 가족개인상담		
	⑨ 취·창업 지원		
	⑩ 통번역서비스 자조모임		
	⑪ 멘토링, 자원봉사단		
	⑫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⑬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타	⑭		
	⑮		

3-1. 귀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다음의 세 가지 영역을 위의 표에서 골라 각각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가장 효과가 있는 사업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향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3-2. 귀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은 사업은 무엇입니까? 위의 표에서 골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효과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적어주세요.

효과 낮은 사업	이유	개선 방안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다음은 귀하의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4. 그동안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점	개선방안
인력		
예산		
사업기획		
사업관리 (전달체계)		
기타		

5.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한 부모, 영아, 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대상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서비스를 다음의 보기에서 골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부모 대상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한국어 교육 ④ 부부 및 가족관계 상담 ⑦ 양육비 지원 (보육료, 교육비, 아이돌보미 등) ⑩ 기타 (적어주세요:                   )	② 육아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⑤ 정서 지원 ⑧ 취업 및 창업 지원 교육	③ 육아 관련 상담 ⑥ 한국생활문화지도 ⑨ 통번역서비스(자녀 병원 방문 등)	
영아 대상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유아 대상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한국어 교육 ④ 사회성 발달 지원 ⑦ 예절교육 ⑩ 기타 (적어주세요:                   )	② 신체발달 및 건강관리 ⑤ 언어발달 지원 ⑧ 문화체험	③ 정서 발달 지원 ⑥ 인지 발달 및 학습 지도 ⑨ 모국어(이중언어) 교육	
보육시설, 유치원 대상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다문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제공 ④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② 일반 영유아 및 부모 대상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제공 ⑤ 기타 (적어주세요:                   )	③ 다문화 관련 교사 연수 기회 제공	

\* 다음은 다문화 지원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및 협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6. 현재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나 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민간단체 등)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매우 잘 알고 있음

7. 지역 내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행정기관, 교육청, 민간단체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별로 필요하지 않음  
③ 어느 정도 필요함                                   ④ 매우 필요함

8. 지역 내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① 예(☎ 8-1번으로)                                    ② 아니오(☎ 8-3번으로)

8-1.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연계 및 협력 현황은 어떠합니까? 연계/협력 정도를 표시하시고, 연계/협력을 하는 경우에 방식과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연계·협력 기관	연계·협력 정도				연계·협력 방식 ① 서비스의 직접 제공 ② 서비스의 간접적 지원 ③ 행사 및 사업 공동주최 ④ 클라이언트 의뢰 ⑤ 정보교환 ⑥ 기자재 교환 ⑦ 기타(무엇?: )	주요 연계 내용
	① 없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건강가정지원센터						
③ 이주여성인권센터						
④ 행정기관(시/군청, 읍/면/동 주민지원센터)						
⑤ 지역사회 복지기관/시설						
⑥ 교육청						
⑦ 학교(유치원, 보육시설 포함)						
⑧ 병원/보건(지)소						
⑨ 종교/여성/민간단체						
⑩ 상담소(법률, 성폭력)						
⑪ 농업기술센터						
⑫ 도서관(평생학습관)						
⑬ 문화원						
⑭ 민간기업						
⑮ 기타( )						

\* 1번은 해당 사항 없음

8-2.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8-2-1번으로)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8-2-1번으로)  
 ③ 어느 정도 도움이 됨(☞ 9번으로)       
  ④ 매우 도움이 됨(☞ 9번으로)

8-2-1.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8-3.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3. 다음의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사업별로 다음의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적어주세요. 기타의 경우에는 15번으로 적고 어디인지 적어주세요.

영유아 대상	①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 한국어 교육	
	③ 신체 발달 및 건강관리	
	④ 학습 지도	
	⑤ 정서 지원	
	⑥ 문화체험	
	⑦ 사회성 발달 지원	
부모 대상	⑧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⑨ 한국어 교육	
	⑩ 육아 관련 정보 제공	
	⑪ 육아 관련 상담	
	⑫ 정서 지원	
	⑬ 한국 생활문화지도	
보육시설 유치원 대상	⑭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⑮ 교사 연수	
	⑯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일반인 대상	⑰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개발	
	⑱ 다문화 이해 교육	

<보기>

① 중앙정부 부처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③ 건강가정지원센터	④ 이주여성인권센터
⑤ 행정기관(시/군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⑥ 지역사회 복지기관/시설
⑦ 교육청	⑧ 학교(유치원, 보육시설 포함)
⑨ 대학이나 연구소	⑩ 병원/보건(지)소
⑪ 상담소(법률, 성폭력)	⑫ 종교/여성 단체
⑬ 민간단체	⑬ 문화원
⑮ 기타(무엇? )	

14. 다음은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을 괄호 앞에 3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 (     ) ① 재정 확보  
 (     ) ② 관계자 보수교육 및 연수의 정례화  
 (     ) ③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     ) ④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     ) ⑤ 지역사회 후원 및 결연 자원 관리  
 (     ) ⑥ 자원봉사자 개발 및 교육  
 (     ) ⑦ 시설 및 기자재 확보 (활용 공간, 차량 등)  
 (     ) ⑧ 지역주민 대상의 사업인지 교육 및 홍보  
 (     ) ⑨ 전달체계의 단일화  
 (     ) ⑩ 기타 (자세히: \_\_\_\_\_ )

15.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전반적인 정부 정책에서 어떤 점이 부족하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		개선점
①	→	①
②	→	②
③	→	③

♥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부록 2〉 교육청용 설문지

##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조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역청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10년에 기본과제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역청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 질문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김은영 부연구위원 02-398-7712, keycandy@kicce.re.kr

박수연 연구원 02-398-7718, soopark@kicce.re.kr

## 1. 일반 배경

1) 지역	_____ 시, 도 / _____ 군, 구)		
	<input type="checkbox"/> ① 도시지역 <input type="checkbox"/> ② 도농복합지역(공단지역 포함) <input type="checkbox"/> ③ 농어촌지역		
2) 다문화 담당과 및 인력	주무과	_____ 과    _____ 명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불충분 <input type="checkbox"/> ② 불충분 <input type="checkbox"/> ③ 충분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충분
	지원과	_____ 과    _____ 명	

\* 다음은 귀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 귀 교육청(교육지원청)의 현재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시행 여부를 표시하고 2010년 예산을 적어주세요.

\* 예산은 국비, 지방비, 후원 등 구분 없이 사업의 총예산을 기록해야 합니다.

과제	사업의 종류	사업 시행 여부(V표)	2010 예산(천원)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①다문화 가정 학생 1: 1 멘토링 지원		
	②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거점학교 지원		
	③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④국제 지도자 육성프로그램 운영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⑤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 학부모 지원	⑥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⑦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요원으로 양성·활용		
다문화 가정 유아교육 지원	⑧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학비지원,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⑨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⑩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사 연수 실시		
다문화 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지원	⑪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 활용 확대		
	⑫취학 전 예비과정 지원		
	⑬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지원		
	⑭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		
	⑮역량 있는 학부모의 교육 지원·활용		
다문화교육 기반 및 지원 체제 강화	⑯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⑰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⑱시도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⑲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역량 강화		
기타	⑲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 역량 강화		
	⑳지역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㉑		
	㉒		
	㉓		
	㉔		
	㉕		

2-1. 귀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다음의 세 가지 영역을 위의 표에서 골라 각각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가장 효과가 있는 사업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향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2-2. 귀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효과가 낮은 사업은 무엇입니까? 위의 표에서 골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효과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적어주세요.

효과 낮은 사업	이유	개선 방안
1순위 ____		
2순위 ____		
3순위 ____		

\* 다음은 귀하의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3. 그동안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점	개선 방안
인력		
예산		
사업기획		
사업관리 (전달체계)		
기타		

4.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한 부모, 영아, 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대상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서비스를 다음의 보기에서 골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부모 대상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한국어 교육 ④ 부부 및 가족관계 상담 ⑦ 양육비 지원 (보육료, 교육비, 아이돌보미 등) ⑩ 기타 (적어주세요: )	② 육아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⑤ 정서 지원 ⑧ 취업 및 창업 지원 교육	③ 육아 관련 상담 ⑥ 한국생활문화지도 ⑨ 통번역서비스(자녀 병원 방문 등)	
영아 대상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유아 대상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한국어 교육 ④ 사회성 발달 지원 ⑦ 예절교육 ⑩ 기타 (적어주세요: )	② 신체발달 및 건강관리 ⑤ 언어발달 지원 ⑧ 문화체험	③ 정서 발달 지원 ⑥ 인지 발달 및 학습 지도 ⑨ 모국어(이중언어) 교육	
보육시설, 유치원 대상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다문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제공 ④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② 일반 영유아 및 부모 대상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제공 ⑤ 기타 (적어주세요: )	③ 다문화 관련 교사 연수 기회 제공	

\* 다음은 다문화 지원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및 협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5. 현재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나 기관(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단체 등)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매우 잘 알고 있음

6. 지역 내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행정기관, 교육청, 민간단체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별로 필요하지 않음  
③ 어느 정도 필요함                      ④ 매우 필요함

7. 지역 내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① 예(☞ 7-1번으로)                      ② 아니오(☞ 7-3번으로)

7-1.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연계 및 협력 현황은 어떠합니까? 연계/협력 정도를 표시하시고, 연계/협력을 하는 경우에 방식과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연계 · 협력 기관	연계 · 협력 정도				연계 · 협력 방식 ① 서비스의 직접 제공 ② 서비스의 간접적 지원 ③ 행사 및 사업 공동주최 ④ 클라이언트 의뢰 ⑤ 정보교환 ⑥ 기자재 교환 ⑦ 기타(무엇?: )	주요 연계 내용
	① 없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건강가정지원센터						
③ 이주여성인권센터						
④ 행정기관(시/군청, 읍/면/동 주민지원센터)						
⑤ 지역사회 복지기관/시설						
⑥ 교육청						
⑦ 학교(유치원, 보육시설 포함)						
⑧ 병원/보건(지)소						
⑨ 종교/여성/민간단체						
⑩ 상담소(법률, 성폭력)						
⑪ 농업기술센터						
⑫ 도서관(평생학습관)						
⑬ 문화원						
⑭ 민간기업						
⑮ 기타( )						

\* 6번은 해당 사항 없음

7-2.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7-2-1번으로)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7-2-1번으로)  
③ 어느 정도 도움이 됨(☞ 8번으로)        ④ (☞ 8번으로)

7-2-1.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7-3.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2. 다음의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사업별로 아래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적어주세요. 기타의 경우에는 15번으로 적고 어디인지 적어주세요.

영유아 대상	①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 한국어 교육	
	③ 신체발달 및 건강관리	
	④ 학습 지도	
	⑤ 정서 지원	
	⑥ 문화체험	
	⑦ 사회성 발달 지원	
부모 대상	⑧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⑨ 한국어 교육	
	⑩ 육아 관련 정보 제공	
	⑪ 육아 관련 상담	
	⑫ 정서 지원	
	⑬ 한국 생활문화지도	
보육시설 유치원 대상	⑭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⑮ 교사 연수	
	⑯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일반인 대상	⑰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개발	
	⑱ 다문화 이해 교육	

<보기>

① 중앙정부 부처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③ 건강가정지원센터	④ 이주여성인권센터
⑤ 행정기관(시/군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⑥ 지역사회 복지기관/시설
⑦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⑧ 학교(유치원, 보육시설 포함)
⑨ 대학이나 연구소	⑩ 병원/보건(지)소
⑪ 상담소(법률, 성폭력)	⑫ 종교/여성 단체
⑬ 민간단체	⑭ 문화원
⑮ 기타(무엇? )	

13. 다음은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을 괄호 앞에 3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 (     ) ① 재정 확보  
 (     ) ② 관계자 보수교육 및 연수의 정례화  
 (     ) ③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     ) ④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     ) ⑤ 지역사회 후원 및 결연 자원 관리  
 (     ) ⑥ 자원봉사자 개발 및 교육  
 (     ) ⑦ 시설 및 기자재 확보 (활용 공간, 차량 등)  
 (     ) ⑧ 지역주민 대상의 사업인지 교육 및 홍보  
 (     ) ⑨ 전달체계의 단일화  
 (     ) ⑩ 기타 (자세히: \_\_\_\_\_ )

14.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전반적인 정부 정책에서 어떤 점이 부족하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		개선점
①	→	①
②	→	②
③	→	③

♥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부록 3〉 지방자치단체용 설문지

##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조사: 시도/시군구청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이번에 기본과제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군구청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 질문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김은영 부연구위원    02-398-7712, keycandy@kicce.re.kr

          박수연 연구원        02-398-7718, soopark@kicce.re.kr

### 1. 일반 배경

1) 지역	_____시, 도 / _____군, 구)			
	<input type="checkbox"/> ① 도시지역 <input type="checkbox"/> ② 도농복합지역(공단지역 포함) <input type="checkbox"/> ③ 농어촌지역			
2) 다문화 담당과 및 인력	주무과	_____과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①매우 불충분 <input type="checkbox"/> ② 불충분 <input type="checkbox"/> ③충분 <input type="checkbox"/> ④ 매우 충분
	지원과	_____과	_____명	

## 2. 귀 청의 현재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시행 여부를 표시하고 2010년 예산을 적어주세요.

\* 기타에는 영유아 및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업 중심으로 적어주세요.

\* 예산은 국비, 지방비, 후원 등 구분 없이 사업의 총예산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의 종류		사업 시행 여부(V표)	2010 예산(천원)
결혼이민자 대상	①한국어 교육		
	②방문교육사업 (한국어, 아동양육지원, 임신출산지원)		
	③문화이해 교육		
	④가족통합교육		
	⑤상담 서비스		
	⑥다국어판 생활·정책 정보 가이드북 발간		
	⑦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영유아 대상	⑧보육시설 다문화 프로그램 실시 지원		
	⑨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역량 개발		
	⑩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기타	⑪		
	⑫		
	⑬		
	⑭		
	⑮		

## 2-1. 귀 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다음의 세 가지 영역을 위의 표에서 골라 각각 1 순위에서 3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가장 효과가 있는 사업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향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2-2. 귀 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효과가 낮은 사업은 무엇입니까? 위의 표에서 골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효과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적어주세요.

효과 낮은 사업	이유	개선 방안
1순위 ____		
2순위 ____		
3순위 ____		

\* 다음은 귀하의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3. 그동안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점	개선 방안
인력		
예산		
사업기획		
사업관리 (전달체계)		
기타		

4.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한 부모, 영아, 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대상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서비스를 다음의 보기에서 골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부모 대상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한국어 교육 ④ 부부 및 가족관계 상담 ⑦ 양육비 지원 (보육료, 교육비, 아이돌보미 등) ⑩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② 육아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⑤ 정서 지원 ⑧ 취업 및 창업 지원 교육	③ 육아 관련 상담 ⑥ 한국생활문화지도 ⑨ 통번역서비스(자녀 병원 방문 등)	
영아 대상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유아 대상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한국어 교육 ④ 사회성 발달 지원 ⑦ 예절교육 ⑩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② 신체발달 및 건강관리 ⑤ 언어발달 지원 ⑧ 문화체험	③ 정서 발달 지원 ⑥ 인지 발달 및 학습 지도 ⑨ 모국어(이중언어) 교육	
보육시설, 유치원 대상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다문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제공 ④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② 일반 영유아 및 부모 대상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제공 ⑤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③ 다문화 관련 교사 연수 기회 제공	

\* 다음은 다문화 지원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및 협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5. 현재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나 기관(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단체 등)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잘 모름    ③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④ 매우 잘 알고 있음

6. 지역 내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행정기관, 교육청, 민간단체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별로 필요하지 않음  
③ 어느 정도 필요함                      ④ 매우 필요함

7. 지역 내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① 예(☞ 7-1번으로)                      ② 아니오(☞ 7-3번으로)

7-1.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연계 및 협력 현황은 어떠합니까? 연계/협력 정도를 표시하시고, 연계/협력을 하는 경우에 방식과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연계·협력 기관	연계·협력 정도				연계·협력 방식 ① 서비스의 직접 제공 ② 서비스의 간접적 지원 ③ 행사 및 사업 공동주최 ④ 클라이언트 의뢰 ⑤ 정보교환 ⑥ 기자재 교환 ⑦ 기타(무엇?: )	주요 연계 내용
	① 없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건강가정지원센터						
③ 이주여성인권센터						
④ 행정기관(시/군청, 읍/면/동 주민지원센터)						
⑤ 지역사회 복지기관/시설						
⑥ 교육청						
⑦ 학교(유치원, 보육시설 포함)						
⑧ 병원/보건(지)소						
⑨ 종교/여성/민간단체						
⑩ 상담소(법률, 성폭력)						
⑪ 농업기술센터						
⑫ 도서관(평생학습관)						
⑬ 문화원						
⑭ 민간기업						
⑮ 기타( )						

\* 4번은 해당 사항 없음

7-2.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7-2-1번으로)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7-2-1번으로)  
③ 어느 정도 도움이 됨(☞ 8번으로)        ④ (☞ 8번으로)

7-2-1.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7-3.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2. 다음의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사업별로 아래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적어주세요. 기타의 경우에는 15번으로 적고 어디인지 적어주세요.

영유아 대상	①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 한국어 교육	
	③ 신체 발달 및 건강관리	
	④ 학습 지도	
	⑤ 정서 지원	
	⑥ 문화체험	
	⑦ 사회성 발달 지원	
부모 대상	⑧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⑨ 한국어 교육	
	⑩ 육아 관련 정보 제공	
	⑪ 육아 관련 상담	
	⑫ 정서 지원	
	⑬ 한국 생활문화지도	
보육시설 유치원 대상	⑭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⑮ 교사 연수	
	⑯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일반인 대상	⑰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개발	
	⑱ 다문화 이해 교육	

<보기>

① 중앙정부 부처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③ 건강가정지원센터	④ 이주여성인권센터
⑤ 행정기관(시/군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⑥ 지역사회 복지기관/시설
⑦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⑧ 학교(유치원, 보육시설 포함)
⑨ 대학이나 연구소	⑩ 병원/보건(지)소
⑪ 상담소(법률, 성폭력)	⑫ 종교/여성 단체
⑬ 민간단체	⑬ 문화원
⑮ 기타(무엇? )	

13. 다음은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을 괄호 앞에 3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 (     ) ① 재정 확보  
 (     ) ② 관계자 보수교육 및 연수의 정례화  
 (     ) ③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     ) ④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     ) ⑤ 지역사회 후원 및 결연 자원 관리  
 (     ) ⑥ 자원봉사자 개발 및 교육  
 (     ) ⑦ 시설 및 기자재 확보 (활용 공간, 차량 등)  
 (     ) ⑧ 지역주민 대상의 사업인지 교육 및 홍보  
 (     ) ⑨ 전달체계의 단일화  
 (     ) ⑩ 기타 (자세히: \_\_\_\_\_ )

14.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전반적인 정부 정책에서 어떤 점이 부족하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		개선점
①	→	①
②	→	②
③	→	③

♥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부록 4〉 방문지도사용 설문지

##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조사: 지도사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이번에 여성가족부 수탁과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모와 자녀 지원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정 양육지원 방안 연구: 영유아, 초등학교 및 중간입국 자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본과제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지원 프로그램 및 자녀 대상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 질문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김은영 부연구위원 02-398-7712, keycandy@kicce.re.kr  
 박수연 연구원 02-398-7718, soopark@kicce.re.kr

### 1. 일반 배경

1) 지역	_____시, 도 / _____구, 시, 군)		
	<input type="checkbox"/> ① 도시지역 <input type="checkbox"/> ② 도농복합 <input type="checkbox"/> ③ 농촌지역		
2) 지도사 경력	_____개월	6) 보수교육 경험	총 _____시간
3) 연령	만 _____세	7) 연 단위 보수교육 횟수	_____회
4) 담당 가정/영유아 수	<input type="checkbox"/> ① 아동양육지도사	_____가정	8) 1가정 방문 횟수 및 시간 (방문교육지도사만)
	<input type="checkbox"/> ② 한국어교육지도사		
	<input type="checkbox"/> ③ 언어지도사	_____명	9) 1그룹 수업 횟수 및 시간 (언어지도사만)
5) 소지자격 및 배경	<input type="checkbox"/> ① 전직교사(유치원, 보육시설, 초등학교 등) <input type="checkbox"/> ② 치료사(언어치료사, 놀이치료사 등) <input type="checkbox"/> ③ 건강가정사 <input type="checkbox"/> ④ 사회복지사 <input type="checkbox"/> ⑤ 상담사 <input type="checkbox"/> ⑥ 가정복지사 <input type="checkbox"/> ⑦ 결혼이민자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사회활동가(지역주민회, 자원봉사자 포함)		

## 2. 방문(지도) 대상 가정의 특성: 현재 방문 대상 가정 중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만 기록

일련 번호	유아 연령 (만)	외국인 부모 출신 국적	지도사님과 외국인 부모와의 의사소통 ① 전혀 어렵지 않음 ② 별로 어렵지 않음 ③ 보통 ④ 조금 어려움 ⑤ 매우 어려움	외국인 부모 연령 (만)	만6세 미만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 ① 유치원 ② 보육시설 ③ 이용안함 (이유?)	어머니 취업 여부 ① 취업 ② 시간제 (과외지도 등) ③ 미취업	주양육자 ① 부모 ② 조부모 ③ 친척 ④ 기관
보기	3세	베트남	④	28세	③(멀어서)	②	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 지도사님께서 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 가정에게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원대상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지원대상이 요구하는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lt;보기&gt;

① 부모 대상 한국어교육	② 양육 및 부모자녀 관계 상담
③ 기타 상담(가족관계, 체류 및 법률 등)	④ 임신, 출산정보 제공
⑤ 자녀 건강 및 영양지도	⑥ 자녀 학습 및 유치원(보육시설) 생활지도
⑦ 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⑧ 다문화 이해교육
⑨ 다문화가족의 안전교육	⑩ 한국생활문화 정보 제공 및 지도
⑪ 취업 및 창업 지원 교육	⑫ 기타(적어주세요: )



7.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한 부모, 영아, 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대상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서비스를 다음의 보기에서 골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부모 대상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한국어 교육 ④ 부부 및 가족관계 상담 ⑦ 양육비 지원 (보육료, 교육비, 아이돌보미 등) ⑩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② 육아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⑤ 정서 지원 ⑧ 취업 및 창업 지원 교육 ③ 육아 관련 상담 ⑥ 한국생활문화지도 ⑨ 통번역서비스(자녀 병원 방문 등)
영아 대상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유아 대상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한국어 교육 ④ 사회성 발달 지원 ⑦ 예절교육 ⑩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② 신체발달 및 건강관리 ⑤ 언어발달 지원 ⑧ 문화체험 ③ 정서 발달 지원 ⑥ 인지 발달 및 학습 지도 ⑨ 모국어 교육
보육시설, 유치원 대상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다문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제공 ④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② 일반 영유아 및 부모 대상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제공 ⑤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③ 다문화 관련 교사 연수 기회 제공

8.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정책에서 어떤 점이 부족하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	→	개선점
①	→	①
②	→	②
③	→	③

〈부록 5〉 희망유아교육사용 질문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조사: 희망유아교육사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이번에 기본과제로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희망유아교육사가 실시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 질문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김은영 부연구위원    02-398-7712, keycandy@kicce.re.kr  
             박수연 연구원        02-398-7718, soopark@kicce.re.kr

**1. 일반 배경**

1) 지역	_____시, 도 / _____군, 구)		
	<input type="checkbox"/> ① 도시지역 <input type="checkbox"/> ② 도농복합 <input type="checkbox"/> ③ 농촌지역		
2) 희망교육사 경력	_____개월	6) 연수 경험	총 _____시간
3) 연령	만 _____세	7) 연 단위 연수 횟수	_____회
4) 담당 가정 및 영유아 수	_____가정 _____명	8) 수업 횟수 및 시간	주_____회 (1회당_____분)
5) 소지자격	<input type="checkbox"/> ① 유치원 1급 정교사 <input type="checkbox"/> ② 유치원 2급 정교사 <input type="checkbox"/> ③ 보육교사 1급 <input type="checkbox"/> ④ 보육교사 2급 <input type="checkbox"/> ⑤ 보육교사 3급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이하 모든 문항은 다문화 가정에만 해당됩니다. \*\***

2. 교육 대상 유아 및 가정의 특성: 다문화 가정 영유아만 기록

일련 번호	유아 연령 (만)	외국인 부모 출신 국적	본인과 외국인 부모와의 의사소통 ① 전혀 어렵지 않음 ② 별로 어렵지 않음 ③ 보통 ④ 조금 어려움 ⑤ 매우 어려움	외국인 부모 연령 (만)	만6세 미만 자녀의 기관 이용 여부 ① 유치원 ② 보육시설 ③ 이용안함 (이유?)	어머니 취업 여부 ① 취업 ② 시간제 (과외지도 등) ③ 미취업	주양육자 ① 부모 ② 조부모 ③ 친척 ④ 기관
보기	3세	베트남	④	28세	③(멀어서)	②	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 교육사님께서 다문화 가정에게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원대상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지원대상이 요구하는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보기>

① 부모 대상 한국어교육	② 양육 및 부모자녀 관계 상담
③ 기타 상담(가족관계, 체류 및 법률 등)	④ 임신, 출산정보 제공
⑤ 자녀 건강 및 영양지도	⑥ 자녀 학습 및 유치원(보육시설) 생활지도
⑦ 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⑧ 다문화 이해교육
⑨ 다문화가족의 안전교육	⑩ 한국생활문화 정보 제공 및 지도
⑪ 취업 및 창업 지원 교육	⑫ 기타(적어주세요: )



7.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한 부모대상 서비스, 영아 대상 서비스, 유아 대상 서비스, 보육시설 및 유치원 대상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서비스를 다음의 보기에서 골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번호를 적어주세요.

부모 대상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한국어 교육 ④ 부부 및 가족관계 상담 ⑦ 양육비 지원 (보육료, 교육비, 아이돌보미 등)	② 육아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⑤ 정서 지원 ⑧ 취업 및 창업 지원 교육	③ 육아 관련 상담 ⑥ 한국생활문화지도 ⑨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영아 대상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유아 대상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한국어 교육 ④ 사회성 발달 지원 ⑦ 예절교육 ⑩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② 신체발달 및 건강관리 ⑤ 언어발달 지원 ⑧ 문화체험	③ 정서 발달 지원 ⑥ 인지 발달 및 학습 지도 ⑨ 모국어 교육	
보육시설, 유치원 대상 서비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다문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제공 ④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② 일반 영유아 및 부모 대상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제공 ⑤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③ 다문화 관련 교사 연수 기회 제공	

8.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정책에서 어떤 점이 부족하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		개선점
①	→	①
②	→	②
③	→	③

♥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부록 6〉 시도교육청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및 예산

〈부표 III-2-1〉 시도교육청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및 예산

(단위 : 천원)

시도	세부사업		총 예산
서울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	-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 다문화 가정 학생 편견해소 장학자료 개발·보급 - 다문화사회 적응 맞춤형 연수 - 교육지원청별 다문화 이해교육 연수 지원 - 지자체 및 교육 유관기관 간 교육지원체제 구축	2,389,266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 한국어교육 및 방과후 활동 지원 - 한국문화체험캠프 실시 - 다문화 가정 어울마당 - 귀국자 특별학급 지원 - 한국어반(KLS) 운영 - 이중언어 강사 배치·연계 운영	
부산	학생의 조기 학교 적응 및 교육격차 해소	- 한국어 교실 및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 담임 후견인제 운영 - 'DREAM교실' 및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 무료건강검진 및 치료 -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순회이해교육	2,076,904
	학부모의 교육 역량 강화	- 가족 어울림 마당 -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 탈북가족 동참 캠프	
	교원의 다문화·탈북 학생교육 기반 구축	- 전문성신장 연수운영 - 다문화교육 장학자료 발간·보급 - '연구학교·거점학교·이해교실 운영	
	이해 제고 및 확산	- 다문화·탈북학생 이해교육 실시 - 입학상담 실시 - 부산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 탈북주민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대구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다문화교육 -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학부모교육 -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및 지역 거점학교 지정·운영 - 단위학급에서의 학생 적응 프로그램 지원	246,745
	다문화교육 기반구축	- 다문화이해를 위한 연수 - 다문화교육 지도 자료 개발·보급 - 어머니 나라 도서 보급	

시도	세부사업		총 예산
		- 다문화 유관기관 협의체 조직·운영 - 대구 다문화교육 홈페이지 커뮤니티 활성화	
	다문화이해 제고 및 확산	- 2010 아름다운 동행 다문화 캠프 운영 - 2010 제2회 대구 다문화 페스티벌 개최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 다문화홍보 UCC 경진대회	
인천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 교원연수 강화 - 다문화교육 사이버지원센터 - 다문화 가정 상담센터 운영 - 다문화교육 연구회 운영 - 다문화교육 학부모 자원봉사단 운영 - 다문화교육 지역사회 협의회 운영 - 다문화교육 자료 개발	472,585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 지원	- 벨트형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운영 - 또래친구 및 1:1교사 결연제 운영 - 상담 및 진로·인성 지도 강화 - 다문화 멘토링제 운영 - 연합 체험 학습 실시 - 다문화글로벌 인재양성	
	다문화 가정 학부모 교육역량강화	- 무지개 가족 결연 -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 한국어반 운영 - 자원봉사 통역도우미 운영 -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운영 - 다문화 가정 학부모 연수 강화	
	다문화이해 제고 및 확산	-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학교 운영 - 다문화교육 선도학교 운영 -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다문화 동아리 운영 - 다문화교육 우수 사례 발표대회 - 다문화교육 학생 체험수기 공모전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집 발간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축</li> <li>-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연구학교 운영</li> <li>- 다문화 교육 지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li> <li>- 다문화 가정 홈페이지 운영</li> <li>- 다문화 가정 무지개 결연 활동 전개</li> <li>-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한글 및 정보화 교육 실시</li> <li>- 다문화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관련지도</li> <li>- 국제이해 교육 강화</li> <li>- 교직원 연수 강화 및 일반 학생의 참여기회 확대</li> </ul>		512,013

시도	세부사업		총 예산
대전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이해 교육 제고를 위한 단위학교별 다문화 교육 강화</li> <li>- 다문화교육 이해 및 학습 지도방법 모색을 위한 교원연수 강화</li> <li>-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대회 및 발표대회</li> <li>-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실' 운영</li> <li>-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컨설팅 활동</li> <li>- 다문화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li> </ul>	356,905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운영</li> <li>- 대학생 멘토링제 실시</li> <li>- 방학을 활용한 '2+2+2 행복 문화 만들기' 독서멘토 운영</li> <li>- 다양한 전통, 생활어울림 문화 체험</li> <li>-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li> <li>- Wee center와 연계한 상담활동 강화</li> </ul>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학부모 상담센터 운영</li> <li>- 지역 유관단체와 연계한 다문화 가정 지원체제 구축</li> <li>- '다문화가족의 날' 운영</li> </ul>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증진프로그램 운영</li> <li>- 다문화이해체험교육장 설치</li> <li>- 다문화이해교육 연구학교 및 가족교육 거점학교</li> <li>- 한국어교재 개발 보급</li> <li>- 예절 및 문화캠프, 우리문화탐방</li> <li>- 다문화 가정자녀 너나들이 운영</li> <li>- 다문화 사랑방 운영</li> </ul>		202,154
경기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자녀 장학자료 개발 및 지도교사 연수</li> <li>-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자료 지원</li> </ul>	1,024,715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학자료개발 및 지도교사 연수</li> <li>- 외국인근로자자녀 특별학급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자료 지원</li> </ul>	
강원	다문화 가정 학생 기초학력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li> <li>- 기초학력 미달 학생 책임지도제 운영</li> <li>-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li> </ul>	239,004
	다문화 가정 학부모교육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사랑 워크숍</li> <li>- 다문화 가정 여성 우리 문화 체험</li> <li>- 다문화 가정 학부모 사랑방 운영</li> </ul>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교육 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 관리</li> <li>- 다문화교육 유관기관과의 공동 사업 추진 및 협조체제 구축</li> <li>- 다문화교육 교원 연수</li> </ul>	

시도	세부사업	총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운영</li> <li>- 다문화교육 연구회 운영 활성화</li> <li>-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li> </ul>	
	다문화 이해 제고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li> <li>- 다문화 이해 촉진 홍보자료 발간·보급</li> </ul>	
충북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li> <li>- 방학 중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li> <li>- 초등예비교사(정주교육대, 한국교원대) 다문화 멘토링 운영</li> <li>- 부모 재혼 동반·중도입국자녀 교육 지원</li> </ul>	446,070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자녀 지도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교육지원센터운영</li> <li>- 다문화 가정 학부모 상담주간·통역도우미 운영</li> <li>-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소식지 발간 및 배부</li> <li>- 교육지원 다국어 홈페이지 개설·운영</li> <li>-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 봉사단체 운영</li> <li>- 다국어 진학·취학 설명회 개최</li> </ul>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교육지원 관리자·담당교사 연수</li> <li>- 다문화 교육 직무연수과정 개설·운영</li> <li>- 각종 직무·자격 연수 시 다문화 교양 강좌 편성</li> <li>- 다문화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li> <li>-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도 자료집 발간·보급</li> </ul>	
	교육현장의 다문화 이해 제고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이해교육 정책 연구학교 운영</li> <li>-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비 지원</li> <li>- 다문화 체험 수기 학생 공모전 개최</li> <li>- 다문화 이해 제고 동영상 개발·보급</li> <li>- 다문화·일반가정 공동 문화체험·캠프</li> </ul>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기초학력프로그램 운영</li> <li>-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지원</li> <li>-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li> <li>- 다문화 가정 자녀 한국어 교육 강화 및 기초학력 증진 교육지원</li> <li>- 찾아가는 교사 봉사 동아리 운영 활성화</li> <li>-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센터 및 직속기관 연계 운영</li> <li>- 다문화이해 인식전환 및 TV방송사와 공동 캠페인 연중 전개</li> </ul>	1,443,350
전북	다문화 가정 교육계획 수립지원 및 추진: 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li> <li>- 교육전담팀 구성 운영(어울림 한마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행사 추진)</li> <li>- 다문화 가정 한글학습 교재 개발 보급</li> <li>- 홈페이지운영</li> <li>- 다문화 가정 교육활동 우수사례 발굴</li> <li>- 다문화 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li> </ul>	438,186

시도	세부사업		총 예산
	다문화 가정 학부모 만남의 날 운영: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 관내 다문화 가정 만남의 날 자체 계획 수립 추진 - 다문화 가정 원어민 강사 활용 - 한국어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차별 금지교육 등 - 다문화 가정어울림한마당 행사 추진	
	다문화 가정 학부모 사랑방 운영: 단위학교	- 학교 내 학부모 사랑방 자체 계획 수립 추진 - 학교별 학부모 사랑방 운영 : 한글 및 다문화 이해 지도 - 방과 후 학교 다문화 가정 원어민 강사 활용	
	다문화 가정 학생 사랑방 운영: 단위 학급	- 다문화 가정 학생이 있는 전 학급별 학생 사랑방 운영(담임과 1:1 결연) -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링 학습 지원(전주교대 연계) - 신입생 안내 자료 보급 - 신입생 장학금 수여	
전남	- 다문화 특설반 운영 - 다문화자녀 우리말 교실 운영 - 다문화 가정 학부모 모국 문화교실 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다문화 캠프 운영 - 다문화 교육 연구학교 운영 - 다문화 이해교육 장학자료 개발·보급 - '다문화관련 단체 협의회' 운영 - 북한 이탈 청소년 입국 초기 적응 교육자료 개발·보급	476,620	
경북	다솨이 한국어 및 기초 학력 정착	- <b>취학 전 다솨이 초보 학습 능력 발달 지원</b> - 초등학교 다솨이 기초 튼튼 거둬나기 지원 - 기초 학력 미달 다솨이 맞춤형 지도	1,627,688
	다솨이 학부모 교육 역량 강화 지원	- 다솨이 가족 기본 생활 능력 강화 교육 - 다솨이 학부모용 지도자료 발간·보급 - 다솨이 학부모 상담 및 지원 강화 - 외국어 및 이중 언어 강사제 운영	
	다문화교육 실행 기반 구축	- 다문화교육 지원 협의회 조직·운영 - 다문화교육 지원 센터 설치·운영 - 다문화교육 우수 사례 발굴 - 다솨이 가족 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다문화 이해 제고 및 확산	- 학교교육과정 속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 다문화교육 학생 지도자료 개발·보급 - 교원 연수 기회 확대 - 다문화교육 선도 과제 수행 - 다문화교육 홍보 강화	
경남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 각종학교 운영	- 지역중심학교 - 연구학교 - 거점학교 - 이해학교	517,110

시도	세부사업		총 예산
	다문화 가정 자녀 이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길라잡이</li> <li>- 다문화 가정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li> <li>- 다문화 가정 가족사랑 어울마당 운영</li> <li>- 탈북 청소년 한국 문화 체험 학습</li> <li>- 한국어 및 다문화이해교실 운영</li> <li>- 다문화교육 연구회 운영</li> <li>-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우수사례 발간</li> </ul>	
	다문화 가정 맞춤형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li> <li>- 다문화 지역 협의체 운영</li> <li>-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담당자 및 학부모 연수</li> <li>- 다문화 가정 자녀 부모나라 체험</li> <li>- 교육지원청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li> </ul>	
제주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별 교육프로그램 운영</li> <li>- 학교 및 교육지원청별 다문화 자녀 상담실 운영</li> <li>- 학교별 다문화 가정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li> <li>- 학업성취 부진아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li> <li>- 한국어 수준별 보충 프로그램 운영</li> <li>-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li> <li>- 학교별 '다문화의 날' 운영</li> <li>- 세계 각국의 문화체험활동 참가</li> <li>-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li> </ul>	92,810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국제이해교육 연찬회 개최</li> <li>- 한글 어휘력 향상 자료 고학년용(중국어, 베트남어) 개발·보급</li> <li>-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li> <li>- 다문화교육 우수교사 표창</li> <li>- 다문화교육 사례집 발간</li> </ul>	
	다문화이해 제고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량 및 특별활동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li> <li>- 다문화체험교실 운영</li> <li>- 다문화교육 체험 공모전 실시</li> </ul>	
	다문화관련 대외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자료의 다문화교육기관 지원 보급</li> <li>- 다문화교육 워크숍 및 관련기관 업무 협조</li> <li>-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 업무 협조</li> <li>- 다문화교육 관련기관의 다문화교육 강사 활용</li> <li>-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공모사업</li> </ul>	

### 〈부록 7〉 시도청과 시군구청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및 예산

〈부표 III-2-2〉 시도청과 시군구청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및 예산

(단위 : 억원)

시도	세부사업	총 예산
서울	시 자체 사업	40.25
	영등포구	0.56
	성북구	1.42
	광진구	0.72
	구로구	0.16
	동대문구	0.35
	양천구	1.59
	중구	0.76
		다문화가정 생활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도	세부사업	총 예산
서울	서대문구 - 다문화가족 한마음캠프 -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학습 -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0.59
	강서구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화합축제 및 민간단체 지원 등 -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강좌 및 생활요리교실	0.85
	강동구 - 제6기 결혼이민 이심진심 행복 프로젝트 - 「외국인 거주자지원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한국어 강좌	0.54
	강북구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예절교실 운영	0.02
	도봉구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 다문화가족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실시	0.11
	관악구 - 다문화축제 개최 및 문화체험 실시 - 취학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 발달 지원	0.20
	노원구 - 결혼이민여성 멘토링 사업	0.05
	금천구 - 다문화가족 문화교실 - 자조집단을 통한 사회적응 여건 조성	0.15
	용산구 - 결혼이민자 행복찾기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교육사 양성 과정 - 한국어교실운영(다문화 가정 멘토링 운영 등) - 다문화가족 자녀양육코디네이터 지원사업	2.06
	마포구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결혼이민여성 친정부모 맺기, 다문화가족 치료놀이, 결혼이민여성 정보화교육 등	0.10
	은평구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0.20
	성동구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Family 캠프', 다문화가족 '수요음악회' 운영, 추석맞이 '한국명절음식만들기'	0.16
	중랑구 - 2010년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한국어강좌 외 한국문화체험)	0.24
	송파구 -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22
부산	시 자체 사업 - 한글, 문화체험 등 다문화통합교실 운영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 다문화수용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실시 - 결혼이민자를 위한 모자보건반 운영	19.89
	해운대구 - 외국어 소식지 발행 -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운영	0.06
	중구 - 관광홍보책자 및 홍보 리플렛 제작 -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0.26
	북구 -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결연사업 실시	0.09
	사상구 - 다문화 가정 초청 가족 캠프 실시	0.03
	부산진구 - 다문화가족 복지프로그램 운영	0.03
	강서구 - 다문화공동체 해피투게더 지원	0.09

시도	세부사업	총 예산	
대구	시 자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을 위한 행복학교</li>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li> <li>-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li> <li>- 다문화리더스쿨 운영</li> <li>- 대구 다문화가족 사회봉사단 운영</li> <li>- 세계인의 날 기념 및 다문화축제</li> <li>- 국제결혼 외국인 거주여성을 위한 복지스쿨 운영</li> <li>- 결혼이민자 방송통신교육 사업</li> <li>- 다문화가족 2세 교육·학습협력 사업</li> <li>- 다문화가족 무지개신문 발행</li> <li>- 다문화 가정 취업 및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Multi-Bridge 사업)</li> <li>- 내·외국인가정 자매결연사업</li> <li>- 다문화가족 행복 쌓기</li> <li>- 이주여성 직업능력 향상 교육</li> <li>- 다문화가족 책보내기 운동</li> </ul>	19.44
	달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축제</li> <li>- 엄마와 함께 배우는 우리역사 공부방 운영</li> <li>- 주민자치센터 다문화프로그램 운영</li> </ul>	0.47
	달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결혼이민자 친정 방문</li> <li>-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화합 한마당</li> <li>- 달성문화원 외국인 주부 한글 강좌</li> </ul>	0.24
	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li> <li>- 주민자치센터 등 한글교육 및 문화교양강좌</li> <li>- 다문화 가정 맞춤형 건강관리</li> <li>- 행복한 만남의 시간 만들기 (자조집단)</li> </ul>	0.21
	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센터 등 한글교육 및 문화교양강좌</li> <li>- Happy드림 결혼이민자 건강 도우미</li> </ul>	0.12
	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센터 등 한글교육 및 문화교양강좌</li> </ul>	0.12
인천	시 자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운영</li> <li>-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li>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li> <li>- 취학전 유아의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 (언어발달 지원)</li> <li>-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및 가족대축제</li> <li>- 2010 인천 국제다문화포럼</li> <li>- 다문화가족 상담 관리</li> <li>- 다문화가족 교육지원</li> <li>- 자녀학습 대학생 멘토링 사업</li> </ul>	19.04
	계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li>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li> <li>- 각 나라별 음식축제 및 캠프</li> </ul>	2.75

시도	세부사업	총 예산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 - 결혼이민자 한국요리 등		
동구	- 다문화 가정 장기자랑 - 한국문화나들이, 한국어 교실	0.07	
중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0.65	
남구	- 여성결혼이민자 교육 실시	0.20	
서구	-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교육	0.49	
부평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00	
연수구	- 혼인외국인 적응프로그램 위탁 교육	0.12	
강화군	-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및 바자회	0.05	
남동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00	
광주	시 자체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 세계인의 날 행사	6.42
	남구	- 이주가정 맞춤형서비스 운영 - 외국인 관련 위원회 운영 - 다문화동아리 경연대회 - 다문화 소양·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운영 - 다문화소식지 발간 - 다문화 가정 멘토링 운영 -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소양프로그램 운영	0.72
	북구	-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 -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멘토링 사업 - 주민자치센터 한글교실 프로그램 운영	0.18
	서구	- 다문화 가정 자녀체험학습 및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의 다문화 가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인권지킴이와 결연자 만남의 날 운영 - 한국어교실 운영 - 다문화 가정 취업지원을 위한 뷰티미용 보조업무 교육 - 이주여성 원어민 강사 양성 과정 - 찾아가는 원어민 영어강사 파견 시스템	0.45
	동구	- 결혼이민자 자매결연기구 지속 관리 - 다문화가족 언어·문화학교 운영 - 다문화가족 맞춤형 방문서비스 (의료복지서비스)	0.18
	광산구	-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 결혼이민자 우수사례공모 - 다문화코디네이터 강화 및 문화봉사단 - 다문화 가정 행복학교 - 다문화 가정 행복 캠프	0.40

시도	세부사업	총 예산	
대전	시 자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주민 거주 실태 조사</li> <li>- 결혼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li> <li>-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li> <li>-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li> <li>- 이주여성 쉼터 운영</li> <li>- 다문화가족 방문사업 :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원</li>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축이전 : 유성구</li>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li> <li>- 국제화 포럼 개최</li> <li>- 외국인 한마당 축제</li> <li>- 세계인의 날 외국인 표창</li> <li>- 다문화가족 축제</li> </ul>	96.57
	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는 하나' 우리는 한가족' 화합한마당</li> <li>- 외국인 이주여성의 어려운 이웃 사랑의 밑반찬 지원</li> <li>- 외국인 새색시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운동</li> <li>- 다문화 가정 한국음식 문화체험 등 확대</li> </ul>	0.19
	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보화 교육</li> <li>-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문화교육</li> </ul>	0.04
	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사업</li> <li>- 다문화가족 행복훈련 캠프</li> <li>- 다문화가족 생활서비스 제공</li> </ul>	0.10
	대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 교육</li> <li>- 결혼이민자 및 가족상담</li> <li>-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 자녀양육 상담 및 지도교육</li> </ul>	2.20
	유성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li> </ul>	0.25
	울산	시 자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li> <li>-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li> <li>- 다문화존중 도시문화 조성</li> </ul>
경기	도 자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li>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사업</li> <li>-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li> <li>-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사업</li> <li>-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li> <li>- 다문화가족 한마당</li> <li>-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등</li> <li>- 다문화사회 네트워크 조성 지원</li> <li>-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li> <li>- 결혼이주여성 문화교실 및 문화체험</li> <li>- 다문화가족 소식지</li> <li>- 다문화부부 워크숍 및 가족캠프</li> <li>-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li> </ul>	79.44

시도	세부사업	총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조기 정착</li> <li>-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li> </ul>	
	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국제학교 운영</li> <li>- 다문화 가정 자녀 내 모습 알기 캠프</li> </ul>	0.29
	김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가는 다문화강좌 운영</li> <li>- 외국인주민 합동결혼식</li> </ul>	0.11
	성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li> <li>- 행복앨범 모국 보내기</li> </ul>	0.50
	평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여성농업인 교육</li> </ul>	0.05
	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이해 강좌</li> <li>- 찾아가는 세계문화체험 일일교실</li> <li>-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 추진</li> <li>- We start 글로벌이동센터 운영</li> <li>- 다문화 가정 사례관리사업</li> </ul>	41.24
	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문화포럼 개최</li> </ul>	0.07
	의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1가정 1멘토 한 이웃 프로그램 운영</li> </ul>	0.08
	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어린이 외국어 회화 교실</li> </ul>	0.10
	강원	도 자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주민 거주 실태 조사</li> <li>- 한국어 등 방문교육서비스</li> <li>-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li> <li>-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아동양육서비스</li>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li> <li>- 관내 아동과 결혼이민자와의 원원교육서비스</li> <li>- 지자체공무원대상 다문화이해교육</li> <li>- 다문화가족활동가 어울림 워크숍</li> <li>-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li> <li>- 세계인의 날 기념 다민족 다문화 어울 한마당</li> <li>-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li> <li>- 언어별 교육강사 양성 및 파견</li> </ul>
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이해를 위한 공무원 직장교육</li> <li>- 세계인의 날 기념 문화탐방 행사</li> <li>- 산천어 축제 시 다문화 가정 스넥 코너 운영</li> <li>- 다문화 가정 한국어교실 운영</li> <li>- 결혼이민자축제안내 도우미 활용</li> <li>- 결혼이민자활용 외국인 강사지원</li> </ul>		0.13
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교양교실</li> <li>- 농촌다문화 가정 교육사업</li> <li>- 결혼이민자 의료서비스 지원사업</li> <li>- 출산결혼이민자 육아용품 지원사업</li> </ul>		0.37
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한마음 대회</li> <li>- 문화유적지 탐방</li> </ul>		0.15

시도	세부사업	총 예산	
	- 결혼이민자 임신부 산전검진비 지원 - 결혼이민자무료건강검진사업 - 해피데이도우미 사업		
원주	- 제7회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 외국인주민 한국 전통문화 체험 - 외국인주민 한글집합교육 - 제3회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말하기 대회	0.26	
철원	- 세계인의 날 기념 외국인주민 간담회 - 다문화가족 행복가요제 -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 -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워크숍	0.29	
양구	- 세계인의 날 기념 외국인주민 간담회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고향방문 지원 - 결혼이민자 건강교실 운영 - 결혼이민자 외국어강사지원 - 결혼이민자 관광안내 도우미 지원	0.54	
횡성	- 다문화가족 초청 숲속 음악회 - 다문화 가정 취학전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 다문화 가정부부캠프 운영 - 다문화 가정 예방접종 사업	0.81	
평창	- 다문화가족 한글학습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사업	1.54	
양양	-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육 지원 -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사업 - 여성결혼이민자일자리창출지원	0.35	
인제	- 다문화가족 어린이놀이방 운영 -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결혼이민자 건강교실 운영 - 결혼이민자관광통역안내도우미 활동 - 행복한 김장 나누기	0.70	
태백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고향 방문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간담회 실시 - 여성결혼이민자 연말연시 위문	0.13	
홍천	- 외국인주부 연찬회	0.02	
삼척	- 다문화가족 한마당 큰잔치	0.14	
충북	도 자체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 - 다문화가족 정보소식지 발간 -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실무자 연수	26.09

시도	세부사업	총 예산
충청	- 결혼 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 - 다문화가족 부부 연수	
	보은 - 다문화가족 사랑·행복 축제 지원 - 결혼 이주여성 매칭 적립금 지원 - 결혼 이주여성 자녀 학용품비 지원사업	1.27
	진천 - 세계인의 날 다문화행사 지원 -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및 문화체험 -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	0.79
	충주 - 세계인의 날 다문화행사 지원 - 한국어 및 요리교실 지원	0.32
	단양 - 이주여성 생활요리 교실 운영 - 멘토링 결연사업	0.06
	청원 - 세계인의 날 다문화행사 지원	0.20
	음성 - 세계인의 날 다문화행사 지원	0.20
	청주 - 세계인의 날 다문화행사 지원	0.20
	제천 - 세계인의 날 다문화행사 지원	0.20
충남	도 자체 사업 - 다문화이해 및 여건조성(DVD제작) - 다문화 종합 포털사이트 운영 - 다문화 한국어 강사양성(보수) 교육 - 사회서비스종사자 다문화 업무능력 배양 - 다문화가족 생활길잡이 책자 발간 - 결혼이민자사회적응지원(다문화 어울림 사업) - 다문화가족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77.02
전북	도 자체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사회교육을 통한 다문화이해 증진 -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세계인 축제 한마당	21.12
전남	도 자체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확대 - 다문화 가정 한마음 대축제 - 거주외국인 남도문화체험 행사 - 다문화 가정 부부공동체훈련 및 배우자교육	47.83
	광양 - 다문화가족 어울 한마당 - 결혼이민자 한국문화체험학습, 부부행복 캠프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교실 운영 -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지원 - 다문화 가정 한국문화교실 운영 -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상담사 운영 - Rainbow선생님의 찾아가는 외국어 교육	1.30

시도	세부사업	총 예산
나주	- 한국어 및 아동양육 방문 서비스 -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 사랑의 합동 결혼식 - 국제결혼 이주여성 문화체험 - 외국인 여성 영농정착 지원	2.69
여수	- 여수시거주 외국인 전문교육 - 재외외국인 한마당 행사	0.40
구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 다문화가족 한마음 화합행사 - 다문화가족 현장체험 학습 -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운영 - 이주여성 생활요리 교실	1.10
해남	- 관광해설활동 지원 - 다문화 가정 문화체험 및 한마음축제 - 베트남의 날 축제 - 위안잔치 및 결연	1.56
영암	- 결혼이민자 및 가족상담 -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지도 - 거주외국인 관광 해설가 양성 - 다문화가족 한마당 동행, 요리경연대회 - 한글교육 및 우리문화적응 교육 - 다문화 가정자녀 정체성확립 교육 - 친정 보내주기·인터넷요금지원·출산용품지원	4.37
목포	- 이주여성 대상 테마 교육 - 결혼이민자 지원시설 건립 - 다문화 가정 부부공동체 교육	0.95
순천	- 결혼이민자 통·번역(중국어) 서비스 실시 -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사업 - 다문화 가정 한마음 체육대회 -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정보제공 - 시민외국어 명예통역관 운영 - 다문화 가정 지원 민·관 협의체 구성 운영 - 다문화 가정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주여성 사회 일자리 창출 토크 선생님 - 찾아가는 다문화 가정 자녀 학습도우미	4.14
보성	- 아동 방문교육사업지원 - 다문화 가정 한글교실 운영 - 행복충전 교육 - 이주여성 일자리사업 지원	2.21
곡성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 결혼이민자 한글문화교실 운영	1.96

시도	세부사업	총 예산	
	회순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어울림 한마당 축제 -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 지원	2.51
	완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추진 - 다문화 가정 아동적응 지원 서비스 -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축제 - 이주여성 적응 프로그램 운영	1.47
	고흥	- 한국어 및 아동양육 방문서비스 제공 - 다문화 가정 음식축제 및 한마음 축제 참여 - 다문화 가정 문화체험 캠프	1.74
	강진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 지원 - 다문화 가정 직업생활교육 및 한글문화 적응 교육 -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2.65
	장성	-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발달 지원	0.05
	진도	- 다문화 가정 사회적응 교육	0.24
	장흥	-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사업 추진	2.19
	영광	- 한글 및 한국문화 적응교육 - 아동양육 지원	2.28
경북	도 자체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방문교육사업 - 열린 다문화 정책포럼 - 우리말 공부방 운영 - 결혼이민여성 상담기능 강화 - 다문화가족 어울림 마당 - 결혼이민여성농업인 가족캠프 - 결혼이민자농가 소득 증진 지원 -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 다문화가족 행정인턴 채용 - 다문화연구학교 운영 -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자녀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대회 개최	64.17
	구미	- 다문화이해 강좌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가정 사랑의 합동결혼식 - 다문화 가정 출산용품 지원사업 - 결혼이주여성 대모결연 및 어울림한마당 행사 - 읍·면 취약지역 다문화교실 운영 - 다문화가족캠프 운영 -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말하기 대회 -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일자리 사업 참여	1.00

시도	세부사업	총 예산
경주	- 위기·갈등 다문화 가정 관리 및 보호 - 결혼이주여성 기술교육비 지원 - 다문화 가정 농촌 주거환경 개선	2.00
	-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 다문화 가정 도서 및 교재구입 지원 - 다문화 가정 전통문화체험 - 다문화 가정 간담회 및 가족 교육	0.21
	- 다문화가족 축제 한마당 - 결혼이민자여성 사회문화 및 직업교육 확대 - 다문화 가정자녀 지원 서비스	0.34
	- 결혼이주여성 전용 쉼터 관리 운영 - 다문화 가정 모국방문 지원	0.26
	- 농촌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결혼이민자 공공근로사업 참여	0.48
	- 다문화 가정 적응 지원사업 - 다문화 가정 상담센터 운영	0.56
	- 다문화 가정 출산용품 지원 - 결혼이민자가정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0.26
	- 결혼이민자가족 정착프로그램 운영	0.10
	- 결혼이주여성 서포터즈 교육	0.03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0.22
	- 결혼여성이주민 출산용품 지원	0.05
	- 결혼이민자여성 출산도우미 지원	0.20
	-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0.24
	경남	-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복지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사회 이해과정 개설 운영 - 다문화주간 기념 축제 - 이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범 운영 - 외국인주민 생활가이드 발간 - 결혼이민자 자녀방문 한국어 학습 지원 -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 다문화가족 행복한 가정 추진 - 국제결혼가정 친정방문·부모초청사업 -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양성 -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
- 여성결혼이민자 전통음식 만들기 - 보건교육프로그램 운영 - 여성결혼이민자 합동결혼식 - 여성결혼이민자 여성단체 결연		0.32

시도	세부사업	총 예산	
제주	진주	- 다문화 가정 이해·인식 홍보 - 제3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 다문화이해 교육 및 정착 지원	2.09
	의령	- 다문화주간 기념 축제 - 외국인주민 생활가이드북 발간 - 국제결혼가정 친정방문·부모초청 사업	0.23
	거제	- 한글교실 운영 - 결혼이민여성 정보화 교육 - 농어촌거주 여성이민자 고향방문 지원	0.25
	사천	-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 어울림 축제 - 귀화여성농업인 육성 사업	0.19
	고성	- 다문화주간 기념축제 -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교육 : 홈페이지반, 생활요리반 운영 - 다문화가족 정보화 교육 - 외국인주민 생활가이드북 제작 보급	0.18
	거창	- 다문화가족 행복한 가정 추진 - 초·중·고 원어민강사 양성 -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비 지원	10.15
	양산	- 결혼이민자가족 교육캠프 - 결혼이민자가족 친정나들이 지원	0.15
	남해	-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 행사	0.05
	진해	- 세계이주여성 이민자부부 합동결혼식	0.10
	창원	- 다문화 가정 지원 : 방문한글교육 및 건강가정교육	0.35
	통영	- 도서지역 한글교실 사업	0.10
	창녕	- 여성결혼이민자 새가족 사랑 사업	0.04
	마산	- 다문화한마당 축제	0.40
	산청	- 한글문화교실 운영	0.16
	제주	도 자체 사업	- 도내 거주외국인 기초실태 조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세계인주간 행사 개최 - 다문화가족 행복나들이 - 외국인주민 한가위 한마당 행사 - 지역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외국인 지역사회 참여 확대·Global Jeju 화보발간 - 언어발달서비스 및 통번역 서비스
제주		- 한국어교육 확대·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거주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 외국인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0.68
서귀포		- 외국인 주민 조기정착 프로그램	0.17

## 〈부록 8〉 연계와 협력 방식 및 다문화 지원사업 담당 기관

〈부표 V-2-1〉 지역 내 타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의 연계·협력 방식

단위: %(기관)

구분	서비스 직접 제공	서비스 간접 지원	행사, 사업 공동주최	클라이 언트 의뢰	정보 교환	기자재 교환	기타	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전체	53.6	33.3	31.4	10.5	32.7	3.9	0.7	100.0(153)
	센터	47.4	36.8	42.1	26.3	55.3	5.3	0.0	100.0( 38)
	교육청	32.1	41.5	32.1	1.9	30.2	0.0	1.9	100.0( 53)
	지자체	75.8	24.2	24.2	8.1	21.0	6.5	0.0	100.0( 62)
건강가정 지원센터	전체	33.6	42.0	35.9	20.6	38.2	17.6	2.3	100.0(131)
	센터	40.9	34.8	45.5	34.8	53.0	31.8	4.5	100.0( 66)
	교육청	22.7	45.5	13.6	0.0	22.7	0.0	0.0	100.0( 22)
	지자체	27.9	51.2	32.6	9.3	23.8	4.7	0.0	100.0( 43)
이주여성 지원센터	전체	15.6	35.6	14.4	34.4	38.9	2.2	-	100.0( 90)
	센터	17.0	28.3	11.3	54.7	43.4	3.8	-	100.0( 53)
	교육청	5.9	41.2	23.5	0.0	35.3	0.0	-	100.0( 17)
	지자체	20.0	50.0	15.0	10.0	30.0	0.0	-	100.0( 20)
행정기관	전체	30.3	53.1	37.1	21.1	41.7	6.9	0.6	100.0(175)
	센터	33.3	57.8	46.1	31.4	43.1	10.8	0.0	100.0(102)
	교육청	17.5	37.5	30.0	0.0	52.5	0.0	2.5	100.0( 40)
	지자체	36.4	57.6	18.2	15.2	24.2	3.0	0.0	100.0( 33)
복지기관	전체	24.8	48.4	22.9	18.5	40.8	6.4	1.9	100.0(157)
	센터	25.9	49.4	28.2	27.1	40.0	9.4	2.4	100.0( 85)
	교육청	25.9	40.7	11.1	0.0	51.9	0.0	3.7	100.0( 27)
	지자체	22.2	51.1	20.0	13.3	35.6	4.4	0.0	100.0( 45)
교육청	전체	22.0	35.8	23.6	8.9	46.3	1.6	3.3	100.0(123)
	센터	21.8	29.5	30.8	11.5	44.9	1.3	2.6	100.0( 78)
	교육청	36.4	45.5	18.2	0.0	54.5	0.0	9.1	100.0( 11)
	지자체	17.6	47.1	8.8	5.9	47.1	2.9	2.9	100.0( 34)
학교	전체	45.8	33.3	15.7	13.7	34.6	0.7	5.2	100.0(153)
	센터	43.4	30.1	10.8	19.3	37.3	1.2	7.2	100.0( 83)
	교육청	66.7	30.8	35.9	2.6	25.6	0.0	5.1	100.0( 39)
	지자체	25.8	45.2	3.2	12.9	38.7	0.0	0.0	100.0( 31)
병원, 보건(지)소	전체	40.2	37.8	15.9	29.3	29.3	1.8	1.2	100.0(164)
	센터	39.4	37.5	20.2	40.4	31.7	1.9	0.0	100.0( 104)
	교육청	27.8	33.3	11.1	0.0	27.8	0.0	5.6	100.0( 18)
	지자체	47.6	40.5	7.1	14.3	23.8	2.4	2.4	100.0( 42)

구분	서비스 직접 제공	서비스 간접 지원	행사, 사업 공동주최	클라이 언트 의뢰	정보 교환	기자재 교환	기타	계	
종교·여성· 기타민간 단체	전체	25.9	44.6	27.3	14.4	31.7	4.3	2.2	100.0(139)
	센터	30.9	45.7	30.9	22.2	34.6	6.2	1.2	100.0( 81)
	교육청	11.8	47.1	0.0	0.0	41.2	0.0	5.9	100.0( 17)
	지자체	22.0	41.5	31.7	4.9	22.0	2.4	2.4	100.0( 41)
상담소	전체	22.8	30.1	8.8	50.7	39.0	2.2	0.7	100.0(136)
	센터	26.1	20.5	9.1	64.8	39.8	2.3	1.1	100.0( 88)
	교육청	0.0	53.3	13.3	6.7	40.0	0.0	0.0	100.0( 15)
	지자체	24.2	45.5	6.1	33.3	36.4	3.0	0.0	100.0( 33)
농업기술 센터	전체	29.5	36.4	23.9	5.7	23.9	4.5	1.1	100.0( 88)
	센터	21.8	43.6	29.1	7.3	21.8	5.5	1.8	100.0( 56)
	교육청	0.0	44.4	0.0	11.1	44.4	0.0	0.0	100.0( 9)
	지자체	58.3	16.7	20.8	0.0	20.8	4.2	0.0	100.0( 24)
도서관	전체	32.8	42.2	21.1	4.7	28.1	6.3	1.6	100.0(128)
	센터	29.6	40.8	28.2	7.0	28.2	11.3	2.8	100.0( 71)
	교육청	24.0	44.0	16.0	4.0	28.0	0.0	0.0	100.0( 25)
	지자체	46.9	43.8	9.4	0.0	28.1	0.0	0.0	100.0( 32)
문화원	전체	12.3	46.9	14.8	7.4	40.7	3.7	2.5	100.0( 81)
	센터	15.0	47.5	17.5	10.0	40.0	5.0	5.0	100.0( 40)
	교육청	0.0	44.4	11.1	5.6	50.0	0.0	0.0	100.0( 18)
	지자체	17.4	47.8	13.0	4.3	34.8	4.3	0.0	100.0( 23)
민간기업	전체	21.1	44.2	27.4	5.3	22.1	7.4	6.3	100.0( 95)
	센터	24.1	48.1	33.3	5.6	20.4	11.1	7.4	100.0( 54)
	교육청	15.4	38.5	7.7	0.0	38.5	0.0	0.0	100.0( 13)
	지자체	17.9	39.3	25.0	7.1	17.9	3.6	7.1	100.0( 28)

## 〈부표 V-2-2〉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담당해야 할 기관

단위: %(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22.3	19.5	4.8	-	2.9	1.9	18.3	11.9	29.9	0.2	0.2	0.2	0.2	-	1.4	100.0(421)
24.0	18.6	8.5	-	1.6	0.8	14.0	17.1	34.1	0.0	0.8	0.0	0.0	-	1.6	100.0(129)
23.4	21.9	2.9	-	4.4	1.5	19.0	14.6	24.8	0.0	0.0	0.0	0.0	-	1.5	100.0(137)
20.0	18.1	3.2	-	2.6	3.2	21.3	5.2	31.0	0.6	0.0	0.6	0.6	-	1.3	100.0(15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영유아 한국어 교육															
4.7	40.1	2.1	0.2	4.0	4.5	15.6	30.0	4.5	-	-	-	-	0.9	0.9	100.0(424)
6.8	42.4	2.3	0.8	1.5	1.5	9.8	37.9	6.1	-	-	-	-	0.0	0.0	100.0(132)
3.7	52.2	2.9	0.0	2.9	2.9	14.0	24.3	4.4	-	-	-	-	0.0	0.0	100.0(136)
3.8	27.6	1.3	0.0	7.1	8.3	21.8	28.2	3.2	-	-	-	-	2.6	2.6	100.0(156)
영유아 신체발달 및 건강관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0.7	21.9	2.8	0.2	1.7	4.7	23.3	49.8	2.1	0.2	-	-	0.7	-	0.7	100.0(425)
2.3	7.6	3.8	-	1.5	0.8	0.8	15.2	0.0	72.7	-	-	0.0	0.8	0.8	100.0(132)
2.2	16.1	11.7	-	4.4	0.7	4.4	16.8	2.2	49.6	-	-	0.0	0.0	0.0	100.0(137)
0.6	8.3	41.7	-	2.6	3.8	3.8	7.1	0.0	41.0	-	-	0.6	0.6	0.6	100.0(156)
영유아 학습지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0.7	21.9	2.8	0.2	1.7	4.7	23.3	49.8	2.1	0.2	-	-	0.7	-	0.7	100.0(424)
0.0	25.2	3.1	0.0	1.5	3.8	21.4	56.5	3.1	0.0	-	-	0.0	-	1.5	100.0(131)
1.5	29.4	3.7	0.7	1.5	4.4	17.6	43.4	2.2	0.0	-	-	0.7	-	0.0	100.0(136)
0.6	12.7	1.9	0.0	1.9	5.7	29.9	49.7	1.3	0.6	-	-	1.3	-	0.6	100.0(157)
영유아 정서 지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0.9	40.8	8.7	1.7	2.4	9.4	5.2	25.5	1.2	0.7	8.5	3.5	1.4	0.7	0.5	100.0(424)
0.8	55.0	10.7	0.8	1.5	6.9	2.3	27.5	0.0	0.8	5.3	3.1	0.0	0.8	0.8	100.0(131)
1.5	44.1	6.6	1.5	1.5	6.6	5.1	30.9	2.9	1.5	3.7	0.7	2.2	0.7	0.0	100.0(136)
0.6	26.1	8.9	2.5	3.8	14.0	7.6	19.1	0.6	0.0	15.3	6.4	1.9	0.6	0.6	100.0(157)
문화체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0.9	45.4	4.5	-	11.1	9.5	6.6	20.1	0.5	0.2	0.2	0.9	4.3	11.6	0.9	100.0(423)
0.8	56.2	5.4	-	5.4	8.5	5.4	26.2	0.0	0.8	0.0	1.5	2.3	13.1	1.5	100.0(130)
0.7	48.9	5.1	-	8.0	8.8	5.1	21.2	1.5	0.0	0.7	0.7	4.4	7.3	0.0	100.0(137)
1.3	33.3	3.2	-	18.6	10.9	9.0	14.1	0.0	0.0	0.0	0.6	5.8	14.1	1.3	100.0(156)

영유아 사회성 발달 지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0.7	37.1	5.9	0.7	3.6	10.5	8.8	37.8	2.1	0.7	1.0	0.5	1.2	1.2	0.7	100.0(421)
0.8	36.6	6.9	0.0	2.3	6.1	6.1	51.1	0.8	1.5	1.5	0.8	0.0	0.0	1.5	100.0(131)
0.7	43.0	6.7	0.0	3.0	8.9	7.4	34.1	3.7	0.7	0.0	0.0	1.5	0.7	0.0	100.0(135)
0.6	32.3	4.5	1.9	5.2	15.5	12.3	29.7	1.9	0.0	1.3	0.6	1.9	2.6	0.6	100.0(155)
부모 대상 프로그램 개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23.9	40.4	5.4	2.3	4.9	2.1	7.7	1.4	25.1	0.5	0.5	0.2	0.7	0.2	0.9	100.0(426)
26.3	42.9	9.8	2.3	0.8	0.0	6.0	1.5	29.3	1.5	0.8	0.0	0.0	0.0	1.5	100.0(133)
25.0	45.6	5.9	0.7	5.9	3.7	3.7	0.7	19.1	0.0	0.0	0.0	0.0	0.7	0.7	100.0(136)
21.0	33.8	1.3	3.8	7.6	2.5	12.7	1.9	26.8	0.0	0.6	0.6	1.9	0.0	0.6	100.0(157)
부모 한국어 교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4.2	71.0	3.7	1.6	6.1	3.3	7.7	4.2	5.6	0.2	-	0.5	1.2	0.9	0.7	100.0(427)
5.3	86.5	3.8	0.0	2.3	1.5	3.0	1.5	6.8	0.0	-	0.0	0.0	0.0	1.5	100.0(133)
4.4	75.9	6.6	0.7	5.1	2.9	5.8	0.7	5.1	0.7	-	0.0	0.7	0.7	0.0	100.0(137)
3.2	53.5	1.3	3.8	10.2	5.1	13.4	9.6	5.1	0.0	-	1.3	2.5	1.9	0.6	100.0(157)
육아정보 제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5.4	50.8	14.5	2.8	6.6	2.3	6.6	15.0	1.6	13.1	1.4	1.9	0.7	0.2	0.2	100.0(427)
3.0	60.2	13.5	0.0	6.0	1.5	6.0	26.3	1.5	18.0	0.0	0.8	0.0	0.0	0.0	100.0(133)
8.8	48.9	14.6	0.0	6.6	2.9	3.6	13.9	0.7	15.3	2.2	0.7	1.5	0.7	0.0	100.0(137)
4.5	44.6	15.3	7.6	7.0	2.5	9.6	6.4	2.5	7.0	1.9	3.8	0.6	0.0	0.6	100.0(157)
육아 관련 상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1.6	54.3	15.9	3.7	2.6	4.0	3.3	15.5	0.7	10.8	8.2	1.6	0.5	0.2	0.5	100.0(427)
0.8	63.9	14.3	0.0	0.8	3.0	4.5	23.3	0.8	14.3	6.8	1.5	0.0	0.0	0.8	100.0(133)
2.2	56.9	15.3	2.2	2.9	4.4	2.9	10.9	0.7	14.6	4.4	0.0	0.7	0.7	0.0	100.0(137)
1.9	43.9	17.8	8.3	3.8	4.5	2.5	12.7	0.6	4.5	12.7	3.2	0.6	0.0	0.6	100.0(157)
부모 정서 지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1.6	66.5	11.7	6.8	2.8	6.1	1.4	4.4	0.5	1.2	8.2	3.3	3.5	2.1	0.5	100.0(427)
0.0	85.7	12.8	5.3	0.8	3.8	0.8	5.3	0.0	0.8	7.5	2.3	0.0	2.3	0.0	100.0(133)
3.6	67.9	13.9	5.8	2.9	2.9	0.0	2.9	0.7	2.9	5.1	1.5	5.1	2.2	0.0	100.0(137)
1.3	49.0	8.9	8.9	4.5	10.8	3.2	5.1	0.6	0.0	11.5	5.7	5.1	1.9	1.3	100.0(157)
부모 한국 생활문화 지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2.3	64.4	6.3	3.0	8.2	5.9	2.6	2.3	1.2	0.2	0.2	0.9	3.7	18.3	0.2	100.0(427)
0.8	79.7	9.0	1.5	6.0	4.5	1.5	0.0	1.5	0.0	0.0	0.8	0.0	16.5	0.0	100.0(133)
2.9	69.3	10.2	0.7	5.8	3.6	0.7	2.2	0.7	0.0	0.0	1.5	5.8	15.3	0.0	100.0(137)
3.2	47.1	0.6	6.4	12.1	8.9	5.1	4.5	1.3	0.6	0.6	0.6	5.1	22.3	0.6	100.0(157)

보육시설 유치원 대상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18.1	8.7	0.9	0.7	3.1	1.2	44.5	7.3	28.0	-	-	-	0.7	0.2	0.5	100.0(425)
16.0	12.2	1.5	2.3	3.1	2.3	42.7	8.4	34.4	-	-	-	0.8	0.0	0.0	100.0(131)
21.9	8.0	1.5	0.0	4.4	0.7	38.7	10.2	20.4	-	-	-	0.7	0.7	0.7	100.0(137)
16.6	6.4	0.0	0.0	1.9	0.6	51.0	3.8	29.3	-	-	-	0.6	0.0	0.6	100.0(157)
보육시설 유치원 대상 교사 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12.3	9.7	0.9	0.5	3.6	0.9	59.7	10.4	13.3	-	-	-	0.5	0.2	0.2	100.0(422)
14.8	14.1	1.6	1.6	3.9	0.8	53.9	10.2	14.8	-	-	-	0.8	0.0	0.0	100.0(128)
18.2	8.8	1.5	0.0	6.6	1.5	45.3	14.6	13.1	-	-	-	0.0	0.7	0.0	100.0(137)
5.1	7.0	0.0	0.0	0.6	0.6	77.1	7.0	12.1	-	-	-	0.6	0.0	0.6	100.0(157)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5.0	45.4	1.7	2.8	5.7	2.4	18.4	12.8	11.3	-	-	0.5	2.6	0.9	0.2	100.0(423)
1.5	72.5	1.5	1.5	1.5	0.0	9.9	9.9	7.6	-	-	0.8	0.8	0.0	0.0	100.0(131)
7.3	29.9	2.2	2.2	5.1	2.9	32.1	18.2	8.0	-	-	0.0	3.6	0.0	0.0	100.0(137)
5.8	36.1	1.3	4.5	9.7	3.9	13.5	10.3	17.4	-	-	0.6	3.2	2.6	0.6	100.0(155)
일반인 대상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개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29.2	42.4	4.0	0.7	7.5	1.4	4.9	0.7	22.6	-	0.5	0.2	2.6	0.7	0.9	100.0(425)
31.8	51.5	9.1	1.5	3.0	2.3	3.0	0.8	22.7	-	0.0	0.8	1.5	0.8	0.8	100.0(132)
27.9	46.3	3.7	0.0	11.0	0.7	2.2	0.7	14.0	-	0.7	0.0	3.7	1.5	0.7	100.0(136)
28.0	31.2	0.0	0.6	8.3	1.3	8.9	0.6	29.9	-	0.6	0.0	2.5	0.0	1.3	100.0(157)
일반인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12.5	60.1	4.2	1.2	14.2	3.8	8.5	4.5	8.0	0.2	0.2	0.7	4.0	0.9	0.2	100.0(424)
6.1	79.5	9.8	1.5	6.8	5.3	4.5	3.8	7.6	0.8	0.8	1.5	3.0	0.8	0.0	100.0(132)
16.3	62.2	3.7	0.7	17.8	2.2	3.0	2.2	3.7	0.0	0.0	0.7	3.7	0.7	0.0	100.0(135)
14.6	42.0	0.0	1.3	17.2	3.8	16.6	7.0	12.1	0.0	0.0	0.0	5.1	1.3	0.6	100.0(157)

주: 1. 중앙정부 부처,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건강가정지원센터, 4. 이주여성인권센터, 5. 행정 기관, 6. 복지기관, 7. 교육청, 8. 학교(유치원, 보육시설 포함), 9. 대학이나 연구소, 10. 병원/보건(지)소, 11. 상담소, 12. 종교/여성 단체, 13. 민간단체, 14. 문화원, 15. 기타

---

---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

**발행일** 2010년 12월

**발행인** 조복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양동문화사 02) 2266-0892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 978-89-92396-56-1 93330